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에너지자원정책관 ····· 1

Ⅰ. 세입(에특회계) ····· 3

1. 정부출자수입(에특회계) ····· 7
2. 기타재산수입(에특회계) ····· 9
3. 석유수입부과금(에특회계) ····· 10
4. 석유판매부과금(에특회계) ····· 12
5. 가스안전관리부과금(에특회계) ····· 14
6. 광해방지부담금(에특회계) ····· 16
7. 보조금정산환입 등(에특회계) ····· 18
8. 전년도 이월금(에특회계) ····· 20
9. 일반회계전입금(에특회계) ····· 21
10. 타계정전입금(에특회계) ····· 22
11. 기금예탁원금회수(에특회계) ····· 23
12. 기금예탁이자수입(에특회계) ····· 24
13. 기타민간이자수입(에특회계) ····· 25
1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에특회계) ····· 27
15. 전년도 이월금(에특회계) ····· 28

Ⅱ. 세출 ····· 31

<에특회계>

(1) 에너지국제협력 ····· 34
(2) 에너지정책홍보 ····· 40
(3)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 45
(4) 에너지정보통계센터 ····· 51
(5) 에너지자원정책연구 ····· 61
(6)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 66
(7) 회계위탁관리비 ····· 71
(8) 회계관리비 ····· 75
(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79
(10) 에너지바우처(신규) ····· 85

(11)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 90
(12)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95
(13)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 101
(14) 가스안전관리융자 ····· 111
(15) 유전개발사업출자 ····· 115
(16) 자원협력기반구축 ····· 122
(17) 해외자원개발(융자) ····· 126
(18) 자원개발기술개발(R&D) ····· 132
(19)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 141
(20) 일반광업육성지원 ····· 148
(21) 광산안전시설 ····· 164
(22) 광산물비축사업출자 ····· 171
(23)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 177
(24) 해외자원개발조사 ····· 182

2. 에너지산업정책관 ····· 189

〈에특회계〉

(1) 석유비축사업출자 ····· 192
(2) 석유유통구조개선 ····· 200
(3) LP가스품질검사 ····· 207
(4) 석유품질관리사업 ····· 214
(5) 탄가안정대책보조 ····· 228
(6) 석탄비축자산관리비 ····· 232
(7) 폐광대책비 ····· 236
(8) 광해방지비 ····· 240
(9)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 246
(10) 대한석탄공사출자 ····· 252
(11) LPG소형저장탱크보급 ····· 256
(12)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264
(13)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 271

3.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275

〈에특회계〉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278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283
(3) 에너지진단보조(계속) ····· 290
(4)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 295
(5)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 313
(6) 에너지관리공단지원 ····· 320
(7)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 327
(8) 기후변화협약대응 ····· 334
(9)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 ····· 343
(10) 지역에너지절약 ····· 350

에너지자원정책관

세 입

□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입원(관)	세입항(항)	목	2013예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합 계			6,149,250	5,478,576	5,919,538	440,962	8.0
<투자계정>			4,294,795	4,143,256	4,706,985	563,729	13.6
□총수입			2,529,846	2,550,183	2,719,082	168,899	6.6
재산수입			77,408	16,495	83,094	66,599	480.5
	정부출자수입		74,562	13,655	79,261	65,606	480.5
		·정부출자수입	74,562	13,655	79,261	65,606	480.5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46	2,840	3,833	993	35.0
		·기타재산수입	2,846	2,840	3,833	993	35.0
경상이전수입			2,452,438	2,533,688	2,635,988	102,300	4.0
	벌금 및 몰수금		-	-	-	-	-
		·벌금	-	-	-	-	-
	가산금		88	88	88	-	-
		·가산금	88	88	88	-	-
	법정부담금		2,414,532	2,488,174	2,581,565	93,391	3.8
		·석유수입부과금	2,028,809	2,047,640	2,139,391	91,751	4.5
		·석유판매부과금	253,295	280,858	279,998	△860	△0.3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18,101	143,945	150,611	6,666	4.6
		·비축탄매각수입	-	-	-	-	-
		·광해방지부담금	14,327	15,731	11,565	△4,166	△26.5
	기타경상이전수입		37,818	45,426	54,335	8,909	19.6
		·보조금정산환입	37,818	45,426	54,335	8,909	19.6
□전년도이월금			126,807	163,377	109,476	△53,901	△33.0
전년도이월금			126,807	163,377	109,476	△53,901	△33.0
	전년도이월금		126,807	163,377	109,476	△53,901	△33.0
		·전년도이월금	126,807	163,377	109,476	△53,901	△33.0

세입원(관)	세입항(항)	목	2013예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 감(B-A)	%
□정부내부수입			1,638,912	1,429,696	1,878,427	448,731	31.4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638,912	1,429,696	1,878,427	448,731	31.4
	전입금		1,580,342	1,034,428	466,564	△567,864	△54.9
		·일반회계전입금	365,391	253,685	-	△253,685	△100.0
		·타계정전입금	1,214,951	780,743	466,564	△314,179	△40.2
	예탁원금회수		-	330,000	1,280,000	950,000	287.9
		·기금예탁원금회수	-	330,000	1,280,000	950,000	287.9
	예탁이자수입		58,570	65,268	131,863	66,595	102.0
		·기금예탁이자수입	58,570	65,268	131,863	66,595	102.0
<융자계정>			1,854,685	1,335,320	1,212,553	△122,767	△9.2
□총수입			1,191,662	1,268,071	1,178,765	△89,306	△7.0
재산수입			138,618	154,349	156,223	1,874	1.2
	기타이전수입및재산수입		138,618	154,349	156,223	1,874	1.2
		·기타민간이자수입	138,618	154,349	156,223	1,874	1.2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053,044	1,113,722	1,022,542	△91,180	△8.2
	융자원금회수		1,053,044	1,113,722	1,022,542	△91,180	△8.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53,044	1,113,722	1,022,542	△91,180	△8.2
□전년도이월금			663,023	67,249	33,788	△33,461	△49.8
전년도이월금			663,023	67,249	33,788	△33,461	△49.8
	전년도이월금		663,023	67,249	33,788	△33,461	△49.8
		·전년도이월금	663,023	67,249	33,788	△33,461	△49.8
□정부내부수입			-	-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	-	-	-
	전입금		-	-	-	-	-
		·타계정전입금	-	-	-	-	-

1. 정부출자수입(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정부출자수입	74,562	13,655	79,261	65,606	480.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로부터 출자받은 기관의 경영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배분계획에 의거 이익의 일부를 출자배당으로 회수

* 징수대상 : 석유공사, 지역난방, 광물공사,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 법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제1항 8호

*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익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정부출자수입	30,084	26,288	31,960	70,882	42,841	41,556	81,059	4,070	74,562	26,027		
(전년대비증가율)	5.3	10.7	6.2	169.6	△34.0	△41.3	89.2	△92.6	△8.0	539.5	29.6	△0.2

▪ 출자기관의 경영실적 저조로 전체적으로 출자배당금(260억원)은 감소(석유공사 104억원, 지역난방공사 150억원, 대한송유관공사 6억원)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3,655	○’13년말 출자액 × 배당률 - 석유공사 : 10,008,193백만원 × 0.03% = 2,924백만원 - 지역난방 : 20,000백만원 × 37.63% = 7,527백만원 - 광물공사 : 1,310,970백만원 × 0.21% = 2,744백만원 -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 × 2.10% = 461백만원
‘15년	79,261	○’14년말 출자액 × 배당률 - 석유공사 : 10,239,620백만원 × 0.56% = 57,143백만원 - 지역난방 : 20,000백만원 × 53.80% = 10,760백만원 - 광물공사 : 1,645,970백만원 × 0.33% = 5,379백만원 -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 × 1.73% = 379백만원 - 가스공사 : 160,000백만원 × 3.50% = 5,600백만원
‘16년	45,844	○’15년말 출자액 × 배당률 - 석유공사 : 10,401,047백만원 × 0.25% = 25,514백만원 - 지역난방 : 20,000백만원 × 50.32% = 10,064백만원 - 광물공사 : 1,825,970백만원 × 0.23% = 4,117백만원 -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 × 2.50% = 549백만원 - 가스공사 : 160,000백만원 × 3.50% = 5,600백만원
‘17년	46,646	○’16년말 출자액 × 배당률 - 석유공사 : 10,562,474백만원 × 0.25% = 25,910백만원 - 지역난방 : 20,000백만원 × 50.32% = 10,064백만원 - 광물공사 : 2,005,970백만원 × 0.23% = 4,523백만원 -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 × 2.50% = 549백만원 - 가스공사 : 160,000백만원 × 3.50% = 5,600백만원
‘18년	47,448	○’17년말 출자액 × 배당률 - 석유공사 : 10,723,901백만원 × 0.25% = 26,306백만원 - 지역난방 : 20,000백만원 × 50.32% = 10,064백만원 - 광물공사 : 2,185,970백만원 × 0.23% = 4,929백만원 -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 × 2.50% = 549백만원 - 가스공사 : 160,000백만원 × 3.50% = 5,600백만원

* 출자규모는 중기재정계획(‘14~’17)에 반영된 출자금을 기준으로 전망
* 배당률은 ‘10~13년도 사업에 대한 배당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되, 최근 사업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2. 기타재산수입(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타재산수입	2,846	2,840	3,833	993	35.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한 보조금, 출연금의 집행잔액 환입에 따른 발생이자 수입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5조 제1항 제14호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1,246	832	697,776	697,397	1,397	6,968	1,531	1,874	2,846	4,669		
(전년대비증가율)	순증	△90.9	55901	83721.7	△99.8	△99	9.6	△73.1	85.9	149.1		92.2

▪ '13년 기타재산수입액 : 4,669백만원

* 에기평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34억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6억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 3억원 등 보조 및 출연금 정산 환입증가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2,840	○ 보조금 및 출연금의 집행잔액 관련 발생이자 : 2,840백만원
'15년	3,833	○ '10~'13년간 평균실적 반영
'16년	3,833	○ '10~'13년간 평균실적 반영
'17년	3,833	○ '10~'13년간 평균실적 반영
'18년	3,833	○ '10~'13년간 평균실적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3. 석유수입부과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석유수입부과금	2,028,809	2,047,640	2,139,391	91,751	4.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수입 석유(원유/석유제품, LNG)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 부과기준 : 원유/석유제품 16원/ℓ, LNG 24,242원/톤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5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19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석유수입부과금	1,621,141	1,509,438	1,575,950	1,664,631	1,667,302	1,705,714	1,940,548	1,729,581	2,028,809	1,802,818		
(전년대비증가율)	0.6	△5.6	△2.8	10.3	5.8	2.5	16.4	13.4	4.5	4.2	5.0	3.9

▪ 석유수입부과금 중 원유제품의 경우 석유수요 감소로 29.9% 감소, 청정에너지인 LNG수요는 13.4% 증가하여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음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2,047,640	○ 원유/석유제품 및 LNG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 868,262천B×45.88%×2,544=1,013,397백만원 - LNG : 42,663천톤×100.0%×24,242=1,034,243백만원
'15년	2,139,391	○ 원유/석유제품 및 LNG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 927,824천B×45.71%×2,544= 1,078,973백만원 - LNG : 43,743천톤×100.0%×24,242= 1,060,418백만원
'16년	1,782,210	○ 원유/석유제품 및 LNG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 852,755천B×40.59%×2,544=880,456백만원 - LNG : 37,198천톤×100.0%×24,242=901,754백만원
'17년	1,768,227	○ 원유/석유제품 및 LNG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 861,282천B×40.59%×2,544=889,261백만원 - LNG : 36,258천톤×100.0%×24,242=878,966백만원
'18년	1,798,065	○ 원유/석유제품 및 LNG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 869,895천B×40.59%×2,544=898,153백만원 - LNG : 37,122천톤×100.0%×24,242=899,912백만원

※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중기 석유류수급 전망, LNG수요는 장기 천연가스수요 전망기준

※ 징수율은 '10~'13년도 가중평균징수율을 적용하되 최근 사업환경 반영을 위해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4. 석유판매부과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석유판매부과금	253,295	280,858	279,998	△860	△0.3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 석유(고급휘발유, 부탄)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 고급휘발유 36원/ℓ, LPG(부탄) 62,283원/톤(≒36원/ℓ)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5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19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석유판매부과금	291,488	278,235	289,057	280,158	325,463	252,651	281,687	277,899	253,295	252,014		
(전년대비증가율)	4.3	△2.2	△0.8	0.7	12.6	△9.8	△13.4	10.0	△10.1	△9.3	△2.6	△1.9

▪ '13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고급휘발유 수요 감소 및 수송용 LPG(부탄)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음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280,858	○ LPG(부탄) : 수요×징수율×단가 - LPG(부탄) : 4,889천톤×90.73%×62,283=276,288백만원 ○ 고급휘발유 : 4,570백만원
‘15년	279,998	○ LPG(부탄) : 수요×징수율×단가 - LPG(부탄) : 5,320천톤×83.18%×62,283=275,613백만원 ○ 고급휘발유 : 4,385백만원
‘16년	245,077	○ LPG(부탄) : 수요×징수율×단가 - LPG(부탄) : 4,764천톤×81.26%×62,283=241,091백만원 ○ 고급휘발유 : 3,986백만원
‘17년	241,702	○ LPG(부탄) : 수요×징수율×단가 - LPG(부탄) : 4,697천톤×81.26%×62,283=237,716백만원 ○ 고급휘발유 : 3,986백만원
‘18년	238,374	○ LPG(부탄) : 수요×징수율×단가 - LPG(부탄) : 4,631천톤×81.26%×62,283=234,388백만원 ○ 고급휘발유 : 3,986백만원

※ LPG(부탄) 수요는 중기 석유류 수급전망기준, 고급휘발유는 별도 수요전망이 없어 ‘13년 징수실적 적용

※ 징수율은 ’10~’13년도 가중평균징수율을 적용하되 최근 사업환경 반영을 위해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5. 가스안전관리부과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가스안전관리부과금	118,101	143,945	150,611	6,666	4.6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석유정제업자 및 LPG 제조·판매자, LPG 또는 LNG 수입자에게 판매 LPG, LNG에 대해 일정액의 안전관리 부담금 징수

* LPG 4.5원/kg, LNG 3.9원/㎥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5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가스안전관리부과금	111,566	105,274	107,946	118,365	114,546	116,493	117,260	131,975	118,101	128,580		
(전년대비증가율)	2.4	△4.3	△3.2	12..4	6.1	1.5	2.4	13.3	0.7	△2..6	1.2	4.4

▪ 고유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 증가로 예산대비 8.9% 실적 증가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43,945	○ LPG, LNG : 수요×징수율×단가 - LPG : 8,365천톤×89.12%×4,500 = 33,547백만원 - LNG : 28,307백만㎥×100.0%×3.9 = 110,398백만원
'15년	150,611	○ LPG, LNG : 수요×징수율×단가 - LPG : 8,335천톤×82.51%×4,500 = 30,947백만원 - LNG : 30,683백만㎥×100.0%×3.9 = 119,664백만원
'16년	140,390	○ LPG, LNG : 수요×징수율×단가 - LPG : 7,463천톤×80.27%×4,500 = 26,957백만원 - LNG : 29,085백만㎥×100.0%×3.9 = 113,433백만원
'17년	144,231	○ LPG, LNG : 수요×징수율×단가 - LPG : 7,359천톤×80.27%×4,500 = 26,580백만원 - LNG : 30,167백만㎥×100.0%×3.9 = 117,651백만원
'18년	147,581	○ LPG, LNG : 수요×징수율×단가 - LPG : 7,256천톤×80.27%×4,500 = 26,208백만원 - LNG : 31,121백만㎥×100.0%×3.9 = 121,373백만원

※ LPG 수요는 중기 석유류 수급전망기준, LNG수요는 장기 천연가스수급 전망기준

※ 징수율은 '10~'13년도 가중평균징수율을 적용하되 최근 사업환경 반영을 위해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6. 광해방지부담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광해방지부담금	14,327	15,731	11,565	△4,166	△26.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광산개발로 인한 광산피해(광해)의 방지 및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

* 부과기준

·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 북구비 예치 통지액×부담율(30~60%)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부담율(30%)

○ 법적 근거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2조, 에특회계법 제5조 제1항 6호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광해방지부담금	8,603	5,953	8,693	9,262	13,027	11,825	12,511	7,956	14,327	10,274		
(전년대비증가율)	△51.6	△41.8	1.0	55.6	49.8	27.7	△4.0	△32.7	14.5	29.1	13.3	14.5

▪ 광해방지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증가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요 구	산 출 근 거
‘14년	15,731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7,793 - 17,374(사업비)×30%(부담금율)×99.95%(누계 징수율) +2,583(정부의 수입예산 목표 보정금액)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7,938 - 501,849(보증액)×1.2%(연 부과율)×92.39%(누계 징수율) +2,269(정부의 수입예산 목표 보정금액)
‘15년	11,565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5,554 - 18,523(사업비)×30%(부담금율)×99.95%(누계 징수율)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6,011 - 542,164(보증액)×1.2%(연 부과율)×92.39%(누계 징수율)
‘16년	12,048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5,554 - 18,523(사업비)×30%(부담금율)×99.95%(누계 징수율)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6,494 - 585,718(보증액)×1.2%(연 부과율)×92.39%(누계 징수율)
‘17년	12,570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5,554 - 18,523(사업비)×30%(부담금율)×99.95%(누계 징수율)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7,016 - 632,771(보증액)×1.2%(연 부과율)×92.39%(누계 징수율)
‘18년	13,133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5,554 - 18,523(사업비)×30%(부담금율)×99.95%(누계 징수율)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7,579 - 683,603(보증액)×1.2%(연 부과율)×92.39%(누계 징수율)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 사업비: 최근 3개년 전체 광해방지사업비의 평균(84,000백만원)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비율(22.1%)을 곱하여 산출
- 부담금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율
- 누계 징수율: ’07년~’13년 부담금 수입 누계 징수율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 보증액: 전년 보증액에 최근 3개년 산지복구비 단가 상승율 평균 비율(8%)을 곱하여 산출
- 연 부과율: 총 보증액 대비 연간 부담금 부과율
- 누계 징수율: ’07년~’13년 부담금 수입 누계 징수율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7. 보조금정산환입 등(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보조금정산환입등	37,818	45,426	54,335	8,909	19.6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차액 반납액, 국내 동해-1 가스전 생산에 따른 조광료 징수액 등의 에특회계 세입액

○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에특회계법 제5조 제1항 등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보조금정산환입 등	10,583	31,114	11,266	27,345	14,872	61,622	19,436	46,078	37,818	66,515		
(전년대비증가율)	3.19	△62.2	6.5	△12.1	32.0	125.4	30.6	△25.2	94.6	44.4	51.5	22.7

▪ '13년 국고보조금 정산환입액이 예산보다 실적 증가

* 지자체의 보조금 환입액 120억원,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311억원 등 보조 및 출연금 정산 환입 증가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45,426	○ 보조금 × 환입비율 = 환입금 - 805,917 × 4.29% = 44,433백만원 ○ 조광료 수입 : 993백만원
‘15년	54,335	○ 보조금 × 환입비율 = 환입금 - 836,370 × 6.49% = 54,335백만원
‘16년	44,878	○ 보조금 × 환입비율 = 환입금 - 736,911 × 6.09% = 44,878백만원
‘17년	40,404	○ 보조금 × 환입비율 = 환입금 - 663,441 × 6.09% = 40,404백만원
‘18년	45,405	○ 보조금 × 환입비율 = 환입금 - 745,574 × 6.09% = 45,405백만원

※ 보조금은 중기재정계획기준, 환입율은 ‘10~’13년도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되 최근 사업환경 반영을 위해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

※ 조광료는 동해가스전 생산량 저하로 납부금액 없음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8. 전년도 이월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전년도이월금	126,807	163,377	109,476	△53,901	△33.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년도이월금	25,323	170,560	7,099	118,564	7,235	388,055	380,820	509,259	126,807	290,411		
(전년대비증가율)	19.4	554.8	△71.9	△30.5	1.9	227.3	5,153.6	31.2	△66.7	△43.0	80.2	14.1

▪ '13년에는 '12년 투자계정에서 부과금 등 초과징수로 290,41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발생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63,377	○'13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 투자계정 163,377 - 투자계정 : 163,377백만원
'15년	109,476	○'14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 투자계정 : 109,476백만원
'16년		
'17년		
'18년		

▪ '14년 세계잉여금을 추정하여 반영한 금액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9. 일반회계전입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일반회계전입금	365,391	253,685	-	△253,685	-△100.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일반회계전입금	538,495	538,495	435,084	438,191	371,004	371,004	410,589	160,589	365,391	-		
(전년대비증가율)	△76.8	△76.8	△19.2	△18.6	△14.7	△14.7	10.7	△56.7	△11.0	-	△6.4	-

▪ '13년 일반회계 자금 부족으로 전입액 없음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253,685	○ 에특회계 지출소요 - 세입 = 일반회계전입금
'15년	-	
'16년		
'17년		
'18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10. 타계정전입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융자계정전입금	1,214,951	780,743	466,564	△314,179	△40.2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 융자계정의 세입소요 대비 융자사업 세출소요 차액을 투자계정 사업재원으로 전입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5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융자계정전입금	161,703	161,703	179,591	182,698	204,888	204,888	258,588	258,588	1,214,951	1,214,951		
(전년대비증가율)	△25.3	△25.3	11.1	13.0	14.1	14.1	26.2	26.2	369.8	369.8	130.3	130.3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780,743	○ 융자계정 세입-융자계정 세출
'15년	466,564	○ 융자계정 세입-융자계정 세출
'16년		
'17년		
'18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11. 기금예탁원금회수(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금예탁원금회수	-	330,000	1,280,000	950,000	287.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예탁에 대한 원금회수

○ 법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9호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330,000	○'12년 공자기금 600억원 + '13년 2,700억원
'15년	1,280,000	○'13년 공자기금 7,000억원 +'14년 공자기금 580,000
'16년		
'17년		
'18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12. 기금예탁이자수입(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금예탁이자수입	58,570	65,268	131,863	66,595	102.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예탁에 대한 이자수입

○ 법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9호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	10,205	-	58,570	1,316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473.9	-	-	-

※ 공자기금 예탁금 축소(예치금 600억원, 2.79%)로 기금예탁이자수입 감소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65,268	○ 공자기금예탁금('12년 600억원, 2.79%+'13년 17,938억원, 2,87%+'14년 23,657억원,3.271%)/2 이자수입
'15년	131,863	○ 공자기금예탁금('13년 6,000억원, 2.87% + '13년 5,500억원, 3.039% + '14년 19,580억원, 5.0%)
'16년		
'17년		
'18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13. 기타민간이자수입(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융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타민간이자수입	138,618	154,349	156,223	1,874	1.2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융자대상기관에 지원한 융자금의 이자 회수 (납기일정 : 3·6·9·12월의 15일, 기한전 상환일)

* 융자대상기관 :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에관공, 광물자원공사, 광해방지사업단

○ 법적 근거 : 에특회계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민간이자수입	222,206	188,487	197,147	193,582	175,158	683,651	154,276	142,827	138,618	124,245		
(전년대비증가율)	10.1	△25.1	△11.3	2.7	11.2	253.1	△11.9	△79.1	△10.1	△13.0	△7.5	△6.8

▪ '13년 융자금 평잔액 감소(81,063억원→ 73,832억원) 및 이자율 하락(예산 1.71% → 실적 1.53%) 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감소추세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54,349	○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수입이자 = 7,642,723백만원 × 2.02% = 154,349백만원
‘15년	156,223	○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수입이자 = 6,941,998백만원 × 2.25% = 156,223백만원
‘16년	91,080	○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수입이자 = 6,505,701백만원 × 1.4% = 91,080백만원
‘17년	88,478	○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수입이자 = 6,319,847백만원 × 1.4% = 88,478백만원
‘18년	87,365	○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수입이자 = 6,240,333백만원 × 1.4% = 87,365백만원

※ 이자율(2.25%)은 직전 4개년 국고채 평균수익율(3.32%) - 우대금리 등(1.07%) 적용하여 이자수입 산출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1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융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53,044	1,113,722	1,022,542	△91,180	△8.2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에 지원한 융자금의 원금 회수
○ 법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민간융자원금	752,614	879,952	912,903	995,483	946,153	1,083,296	995,500	1,062,190	1,053,044	1,075,066		
(전년대비증가율)	0.4	12.3	21.3	13.1	3.6	8.8	5.2	△1.9	5.8	1.2	8.0	4.4

▪ 융자원금회수는 조기상환 증가 등으로 '13년에는 예산보다 초과 징수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113,722	○ 각 기관별 상환계획 × 조기회수율 = 융자 회수금 = 763,031백만원 × 145.9% = 1,113,722백만원
'15년	1,022,542	○ 각 기관별 상환계획 × 조기회수율 = 융자 회수금 = 763,340백만원 × 133.9% = 1,022,542백만원
'16년	1,023,289	○ 각 기관별 상환계획 × 조기회수율 = 융자 회수금 = 771,711백만원 × 132.6% = 1,023,289백만원
'17년	909,359	○ 각 기관별 상환계획 × 조기회수율 = 융자 회수금 = 685,791백만원 × 132.6% = 909,359백만원
'18년	741,176	○ 각 기관별 상환계획 × 조기회수율 = 융자 회수금 = 558,956백만원 × 132.6% = 741,176백만원

※ 상환비율은 '10~'13년 조기상환 가중평균비율을 적용하되, 최근 사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15. 전년도 이월금(에특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전년도이월금	663,023	67,249	33,788	△33,461	△49.8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년도이월금	4,667	68,328	52,816	200,662	200,662	231,074	30,412	693,436	663,023	730,272		
(전년대비증가율)	△75.8	221.8	103.2	193.7	279.9	15.1	△84.8	200.1	208.0	5.3	282.2	193.8

▪ '13년에는 융자원금 조기상환 증가로 세계잉여금 730,272백만원 징수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액	산 출 근 거
'14년	67,249	○ '13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 융자계정 : 67,249백만원
'15년	33,788	○ '14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 융자계정 : 33,788백만원
'16년		
'17년		
'18년		

▪ ‘15년 세계잉여금(33,788백만원)은 ‘13년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101,037백만원) 중 ’14년 세입예산 편성시 반영된 세계잉여금(67,249백만원)을 차감하여 반영한 금액
* ‘13년 결산상 융자계정 세계잉여금(101,037백만원) = 세입(1,955,722백만원)-세출(1,854,685백만원)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세 출

에너지자원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B-A)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61,420	894,615	713,836	△180,779	△20.2
에너지국제협력	4,289	3,360	3,250	△110	△3.3
에너지정책홍보	1,027	1,000	950	△50	△5.0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28	122	116	△6	△4.9
에너지정보통계센터	2,657	2,657	2,657	0	0.0
에너지센서스	0	1,938	0	△1,938	△100.0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	931	1,325	1,785	460	34.7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681	1,887	1,792	△95	△5.0
회계위탁관리비	1,153	1,153	1,153	0	0.0
회계관리비	67	74	74	0	0.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41,080	67,110	61,271	△5,839	△8.7
에너지바우처	0	0	105,800	105,800	순증
예비비	0	1,027	0	△1,027	△100.0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35,115	43,789	48,128	4,339	9.9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3,187	13,187	13,990	803	6.1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4,000	6,832	6,080	△752	△11.0
가스안전관리(융자)	19,800	20,900	20,900	0	0.0
유전개발사업출자	220,000	170,000	57,000	△113,000	△66.5
자원협력기반구축	573	700	665	△35	△5.0
해외자원개발(융자)	130,000	200,600	143,750	△56,850	△28.3
자원개발기술개발(R&D)	29,961	28,215	28,062	△153	△0.5
한국광물자원개발공사출자	180,000	260,000	151,200	△108,800	△41.8
일반광업육성지원	16,754	15,967	15,727	△240	△1.5
광산안전시설	3,487	3,487	3,388	△99	△2.8
광산물비축사업출자	45,000	40,000	38,000	△2,000	△5.0
광산물비축자산관리	1,460	1,457	1,311	△146	△10.0
해외자원개발조사	9,070	7,828	6,787	△1,041	△13.3

에너지국제협력(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국제협력	4,289	3,360	3,250	△110	△3.3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노정림, 51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계속 ('13년부터 정책연구개발에서 분리 편성)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협회

2. 사업목적

□ 에너지·자원분야 학술연구와 에너지 다자회의 및 협상 지원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3. '15년 예산 내용

○ 동북아에너지 정부간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백만원

- 동북아에너지 정부간협의체(SOC)와 에너지정책·석탄실무그룹(WG)의 운영 지원
-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연구 지원

○ 다자협력 지원 600백만원

- IEA, APEC, ASEAN+3, EAS, IEF, G20 등 에너지다자회의 참석 및 논의의제 분석·대응

- 에너지 다자협력체의 국제회의 개최, 전문가실무그룹 활동 및 workshop 지원

- 다자협력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및 국익 증대를 위한 에너지 다자협력 전략 수립

○ 세계 에너지정책 분석 450백만원

- 해외 에너지시장, 주요국 에너지 정책, 권역별(동북아, 유럽, 북미,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400백만원

- 지역다자협력체, IEA, UN산하기관, 국제금융기구 등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증대를 위해, '한-중 간 에너지효율 고위급 회담 개최' 및 '남-북-러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

- 북미국가(미국, 캐나다)의 에너지관련 연구기관들과 석유, 가스, 세일가스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 구축

○ 한-산유국 간 국제협력 200백만원

- 자원부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에너지공급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지역 산유국의 매니저급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고도화 공정, 유지보수 등 정유 부문 관련 국내 기술 연수 실시

□ 지원 필요성

○ 에너지부문의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현안논의 및 정책공조에 적극 참여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orld Bank), UNIDO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협력	**4,289**	**3,360**	**3,250**	**△110**	**△3.3**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00	200	300	100	50
○다자협력 지원	300	600	600		
○에너지국제협력연구	2,000	1,400	1,400		
○세계에너지 정책 분석	200	450	450		
○아시아에너지 장관회의	700	-	-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지원	889	-	-		
○신흥시장진출확대 사업지원	-	-	300	300	신규
○한-산유국 국제협력	-	200			
□ 세출예산비목(합계)	**4,289**	**3,360**	**3,250**	**△110**	**△3.5**
○ 출연금(350-01)	3,400	3,160	3,050	△110	△3.5
○ 민간경상보조(320-01)	889	200	2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북아에너지협의체 구성 및 에너지 다자기구 참석을 통해 전세계적 에너지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상역량을 강화

○ 대규모 에너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도	금액	산출근거
‘14	33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3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2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5	32.50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6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4.5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6	30.88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5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3.8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7	30.88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5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3.8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8	26.25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4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2.25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9개 = 18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에너지법 제17조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0년, '동북아에너지연구'에서 '에너지국제협력연구'로 사업명 변경
- '10년, 국회 의결에 따라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정책연구개발'을 '에너지자원 정책연구'로 신규 편성
- '13년,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정책연구개발'을 분리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국제협력	27	27	43	33.6	3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7**	-	-	27	**27**	-	-
'12년	**27**	-	-	27	**27**	-	-
'13년	**43**	-	-	43	**4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0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에너지국제협력연구비의 집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부당한 출연금 정산 및 회계처리 방식을 시정할 것
- (평가결과) 2010년 에너지국제협력연구사업 중 부당집행금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에경연 회계처리방식 시정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사업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에너지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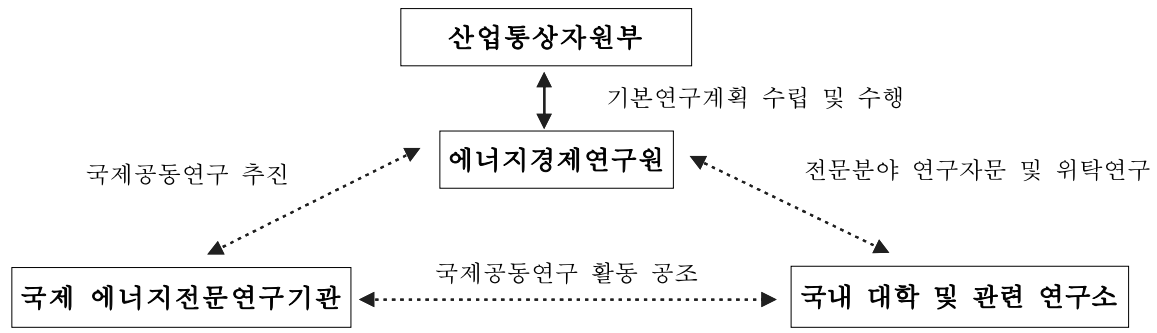

○ 한-산유국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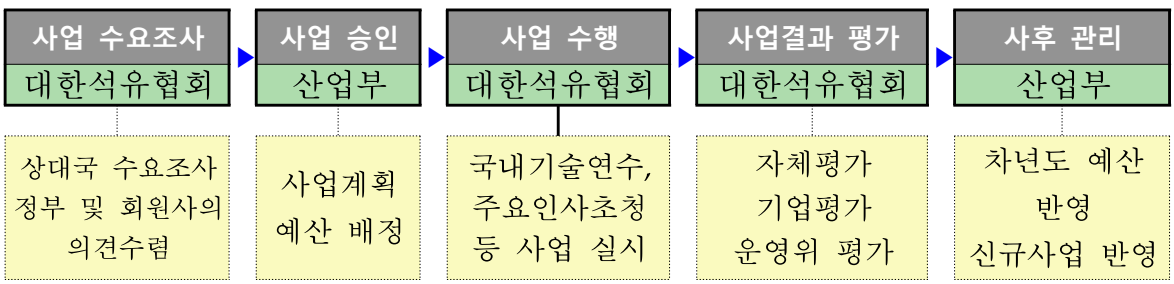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에너지정책홍보(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정책홍보	1,027	1,000	950	△50	△5.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2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노정림, 51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

○ 이에,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제공하여 고유가 및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녹색에너지체험전** (250백만원) : 3개 지역 체험전 구성

- 3개 지역 순회에 필요한 체험기구, 설치물 등 추가설치에 따른 재원 소요를 감안하여 ‘12년 대비 7.1% 증액
- 산출내역 : 50백만원(1개 지역) × 3개 지역 + 사무국 운영비 100백만원

  *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등학생의 참가 비율이 높아 어린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
  * (‘12년) 17만 → (’13년) 14.5천 → (‘14년) 14.5만

○ **온라인 홍보** (200백만원) : SNS를 활용 원정단 구성(150백만원)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 등(150백만원)

- SNS 원정단 : 인원 증가를 위한 재원소요를 감안, 활동지원비 80백만원, SNS운영비 50백만원, 인건비 20백만원

  * ‘11년 : 90여명의 대학생 원정단 활동으로 SNS 노출수 30만건 이상,
    ’12년 : 주부(30여명)·초등학생(30여명)·대학생(40여명) 100명 활동

- 해외자원개발 게임 : 해외자원개발 스마트폰 게임 개발(50백만원)

○ **오프라인 홍보** (300백만원) :TV 프로그램, 설문조사, 정책소개 리플렛 등

- TV프로그램 :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TV프로그램에 에너지 복지 사업, 에너지절약 등 주요정책 방영을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산출내역 : (50백만원) × 4개 프로그램

- 국민인식 설문조사 : 국민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정책의 방향 설정에 활용

  * 산출내역 : (25백만원) × 2번

- 리플릿, PPT 제작 : 국·영문 리플릿 및 PPT 제작을 위한 사업비 50백만원

○ **아이디어 공모전** (200백만원) : 에너지 안전, 해외자원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정책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정책홍보	1,027	1,000	950	▵50	▵5.0
▪ 녹색에너지체험전	200	300	250	△50	△16.7
▪ 온라인 홍보	477	200	200		
▪ 오프라인 홍보	150	300	300		
▪ 아이디어 공모전	200	200	200		
□ 세출예산비목(1,197)	1,027	1,000	950	▵50	▵5.0
○ 일반수용비(210-01)	604	674	624	▵50	▵7.4
○ 위탁사업비(210-15)	400	300	300		
○ 국내여비(220-01)	8	11	11		
○ 업무추진비(240-01)	15	15	1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SNS등 온라인 매체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전·공모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사업 비중을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0	· '14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5	9.5	· '15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6	9.03	· '16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6	9.03	· ’16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7	7.68	· ’17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2항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추진경위

- ‘04년 방폐장 건설에 따른 갈등을 계기로 에너지시설 건설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정책홍보	15	11.97	11.00	10.00	9.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하절기 전력수급 특별기간 동안 대중매체 홍보와 시민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12년 4,364백만원 전용

○ (이월) 11년도 홍보용역 1건 미지급금 47백만원 이월

○ (불용) 집행잔액 및 홍보용역 계약 차액 불용
(10년) 2천만원, (11년) 2천2백만원, (12년) 6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5 (15)	- ( )	- ( )	15 (15)	14.8 (14.8)	- ( )	0.2 ( )
'11년	15 (15)	- ( )	- ( )	15 (15)	14.3 (14.3)	- (0.47)	0.23 ( )
'12년	11.97 (11.97)	0.47 (0.47)	43.64 (43.64)	56.08 (56.08)	56.02 (56.02)	- ( )	0.0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 결산 예정처 검토보고**

○ **(지적사항)** 에특회계, 전력기금, 방폐기금 등 에너지정책홍보에 사용되는 예산 통폐합·구조조정 필요

○ **(후속조치)**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은 모두 각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된 특성을 가진 바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별로 재원을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향후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가에너지위원회	128	122	116	△6	△4.9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3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김홍민, 512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국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에너지 분야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소속 5개 전문위원회 포함) 운영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구 분	'14예산	'15예산
□ 국가에너지 위원회 운영	122	116
▪ 일반수용비	• 위원회 운영 활성화 : 99 - 위원회 반기 1회 / 소속 전문위원회 분기 1회 개최)	• 위원회 운영 활성화 : 94 - 위원회 반기 1회 / 소속 전문위원회 분기 1회 개최) - 운영비 감액(5백만원)
▪ 국내여비	• 5	• 5
▪ 사업추진비	• 18	• 17 - 예산규모 축소(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등 운영

- 주요 국가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

-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9	149	128		21	122	122	122	41	116
·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149	149	128		21	122	122	122	41	116
○ 비목별 분류(합계)	149	149	128		21	122	122	122	41	116
· 일반수용비(210-01)	119	119	98		17	99	99	99	26	94
· 국내여비(220-01)	5	5	5		2	5	5	5	4	5
· 사업추진비(240-01)	25	25	25		2	18	18	18	11	17
· 연구개발비(260-01)	0	0	0		0	0	0	0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수립의 투명성, 적정성 등 확보

- 에너지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T/F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함

-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

-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범 국가적 에너지 정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22	· 일반수용비 1.24(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5	1.16	· 일반수용비 0.86(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5(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6	1.10	· 일반수용비 0.88(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17(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7	1.10	· 일반수용비 0.88(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17(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8	0.94	· 일반수용비 0.64(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5(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지법 제9조

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6.11)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07. 1) 국가에너지전문위원회(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구성
- ('07. 8) 국가에너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08. 8) 국가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0. 4)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위원회로 명칭변경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법 개정)
- ('10. 8) 에너지위원회 및 소속 5개 전문위원회(에너지정책, 에너지기술기반, 자원개발, 원자력발전, 에너지산업)를 구성
- ('10.10) 에너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1. 2) 에너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11.11) 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2. 7) 에너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국가에너지위원회	1.49	1.49	122	1.22	1.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2009	ㅇ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전용예산(△100백만원)은 "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전용 ㅇ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차년도 이월액(33백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미도래로 이월 ㅇ 불용액(110백만원)은 집행잔액(73백만원) 및 '08년도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금액(37백만원)임(운영비 73백만원, 여비 6백만원, 업무추진비 31백만원)
2010	ㅇ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차년도 이월액(19백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미도래로 이월
2011	ㅇ 집행 부진(이월) 사유 - 차년도 이월액(14백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미도래로 이월 ㅇ 주요 이·전용 및 불용 사유 - 연구개발비 20백만원을 운영비로 전용하고,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운영비 21백만원을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3 (-)	0.29 (-)	△1 (-)	2.29 (-)	8.6 (-)	0.33 (-)	1.1 (-)
'11년	2 (-)	0.33 (-)	- (-)	2.33 (-)	2.11 (-)	0.19 (-)	0.03 (-)
'12년	1.49 (-)	0.14 (-)	- (-)	2.19 (-)	1.84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예결위 '11년 결산 지적 >

○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실적 부진

- 위원회 서면 개최 2회, 전문위원회 개최 총 5회에 불과하고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등 활동실적이 저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문제점과 자원개발전문위원회 법적근거

- '광물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정책연구용역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대상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

- 일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에너지자원개발업무로 한정할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에너지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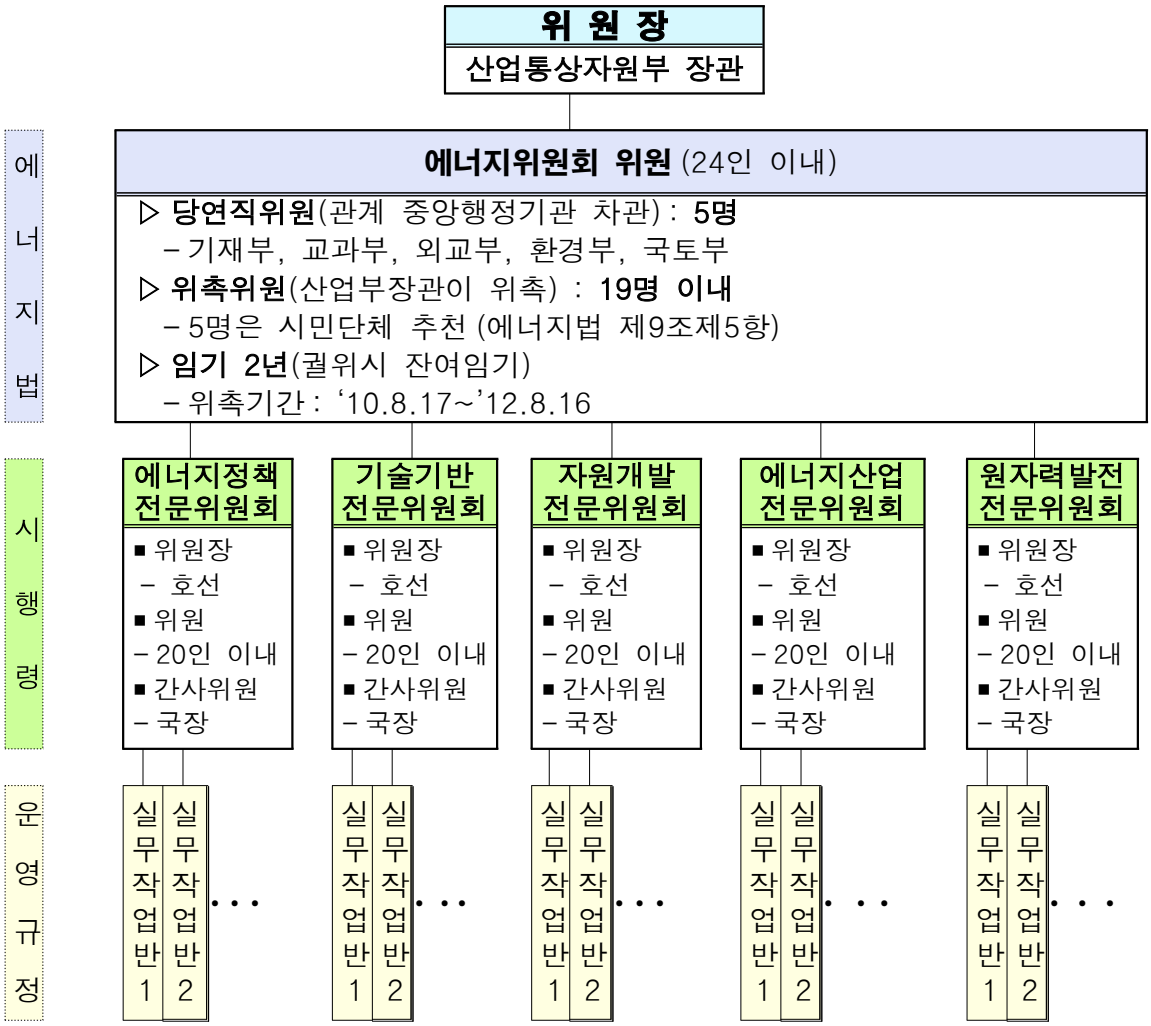

※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심의사항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에너지정보통계센터(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2,657	2,657	2,657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4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김홍민, 512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사업목적

□ 국내외 에너지 정보·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및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제공

○ 국내외 에너지 정보 및 국가에너지수급 동향을 작성·제공함으로써 정부·기업·국민 등 경제주체의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석유전략 개발 및 국제 에너지가격 분석 : 국제 석유시황 분석 및 전망, 유가변동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7백만원

- 산출내역 : 국제 석유시황 및 유가분석(157백만원), 유가변동의 국내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100백만원)

* 국제 석유시장 및 유가 동향 분석(주간), 국제 원유시황 및 가격 전망 보고서 작성(반기별), 세계 석유시장 및 산유국·소비국의 주요 이슈 분석
* 국제유가 전망모형 개선 및 운용, 유가변동의 국민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운영, 에너지가격 DB 운용 및 대외서비스 확충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에너지 수급동향 분석·전망 모형 및 변화요인 분석을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

- 산출내역 : 국가 에너지 수급 분석(280백만원), 해외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전망(140백만원), 중·단기 에너지수요 전망(200백만원),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KEEI-EGMS 운영)(180백만원)

* 간행물·웹문서 제공 : 단기 수급분석 및 전망 보고서(분기별, 국영문각4회), 월별 에너지 수급동향 분석(연12회), 중기 전망 보고서(연1회), 장기 전망 보고서(연1회), 세계 주요기관의 에너지 수요전망 분석(연3회), 주요국의 에너지 수급 및 정책 분석(연1회), 국내외 에너지 수급현안 분석(수시) 등 발간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 국가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국제에너지기구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비 850백만원

- 산출내역 : 국가 에너지 통계시스템 운영(360백만원), 에너지통계 국제협력(120백만원), 지역에너지통계 시·군·구 세분화 방안(200백만원), 에너지총조사 DB 구축: 가구부문(170백만원)

* 에너지통계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APEC, IEA 등) 통계작성·제출의무 이행, 국제기준(IEA 등)에 근거한 에너지통계 작성 표준화·선

진화, 에너지통계관련 간행물 및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의 Contents 개발 및 정보제공 매체 고도화, 에너지부문 정책현안에 대한 수시조사·분석, 現열량제도 개선 및 에너지 지표·가격지수 개발

* 간행물·웹문서 제공 : 에너지통계월보(월간), KERM(월간), Energy Info. Korea(반기), 에너지통계연보(연간),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연간), 자주 찾는 에너지통계(연간), 에너지밸런스(월간, 연간), 자원에너지주요통계(연간), 산업자원통계(반기), 정부·국회·유관기관의 통계수요 자문서비스(상시) 등

○ 기반강화 사업 : 에너지수요전망 모형 개선, IEA 요청수준의 에너지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및 시스템구축 사업비 750백만원

- 산출내역 : 국가 석유·가스 수요전망 모형 개선-산업모듈 개발(110백만원),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전망 모형 개발(110백만원), 2014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통계작성승인)(300백만원), 에너지 지표 및 가격지수 개발(130백만원), 국가 에너지통계 열량제도 개선 방안(100백만원)

* 에너지수급환경 및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수요전망 모형 개발 : ① 국가 석유·가스 수요전망 모형개선-산업모듈 개발, ②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전망 모형 개발
* 2014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국가승인통계) : 공급통계에서 파악될 수 없는 가구부문의 지역별, 에너지원별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 에너지 지표 및 가격지수 개발 : 기간별, 용도별, 유통단계별 가격지수, 에너지가격 총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에너지가격지수 시범 작성
* 국가에너지통계 열량제도 개선 방안 : 해외 에너지열량제도 형태별 변동성 비교 분석을 통한 최소변동 열량제도 방안 제시

□ 지원 필요성

○ 고유가 지속, 자원개발 경쟁심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제 에너지 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에너지공급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 및 수급 현황의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 확보 및 우리나라의 국제 에너지협력 활동 전개에 필요한 세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 관련 동향 파악에 대한 지원 필요

○ 2007년 「에너지정보통계센터」를 설립하여 ‘에너지정보·통계의 국가 지식 기반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국격에 부응하는 품격있는 통계정보를 제공,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 ‘국제기준의 선진형 에너지통계 조사·작성체계 및 에너지밸런스 체제’ 구축사업은 국가정책수립과 국가위상확립에 매우 중요한 기반 사업으로 지속적 지원 필요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통계·정보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

○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중장기 국가에너지 수요전망 사업은‘중기재정계획’,‘에너지기본계획’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에너지수요전망의 적시성·정확성 등을 제고하여 정책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망모형의 개발·개선 및 전망작업이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2,657**	**2,657**	**2,657**	**-**	**-**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 가격 분석	257	257	257	-	-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800	800	800	-	-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850	850	850	-	-
▪ 기반강화사업	750	750	750	-	-
□ **비목**(합계)	**2,657**	**2,657**	**2,657**	**-**	**-**
○출연금(350-01)	2,657	2,657	2,657	-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국제 에너지가격 조사·분석, 국제 석유시장 긴급이슈 분석 등

○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

-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분석·전망,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 및 주요 에너지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 국가에너지수급통계 조사·작성·관리 및 국제기구 통계제공의 국가의무 이행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관리·운영 및 고도화

○ 에너지통계 기반 강화

- 소비통계 분류체계의 IEA 표준화 및 업종세분화에 필요한 산업별, 용도별, 기기 및 설비별 소비조사 수행

- 에너지 수급환경 및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모형 개선 및 개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26.6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8.5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15	26.6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8.5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16	25.2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7.1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17	25.2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7.1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18	21.4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3.3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4-18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제3호 및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에너지법 제19조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 2008.4.14) 제4조 및 제16조

- 기후변화협약(UNFCCC) 제4조 1항 및 OECD/IEA 국제에너지프로그램협정(IEP) 제5장에 의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가짐

○ 추진경위

- 고유가 지속, 자원확보 경쟁심화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자원 정보 획득 능력이 에너지안보와 국가경제를 좌우할 중요 요소이나,

- 에너지정보·통계 수집기능을 가동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정보는 소관 업무 중심의 제한적, 단편적 내용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에너지정보·통계의 국가 지식기반화' 비전을 이행코자 2007년 '에너지정보·통계센터'를 최초 설립, 종합적·체계적 정보 수집·분석 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 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3예산	'15예산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3.3	26.6	26.6	26.6	2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회의비(워크숍 개최일정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등 집행잔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3**	-	-	33	**33**	-	-
	(33)	(-)	(-)	(33)	**(30)**	(-)	(3)
'12년	**33**	-	-	33	**33**	-	-
	(33)	(-)	(-)	(33)	**(33)**	(-)	(-)
'13년	**26.57**	-	-	26.57	**26.57**	-	-
	(26.57)	(-)	(-)	(26.57)	**(26.5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US DOE/EIA)

- 설립 연혁 및 목적 : 1977년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정보분석실(Office of Energy Information and Analysis)이 개편되어 독립청으로 발족

· 에너지 전반에 걸친 통계 D/B관리, 수급분석 및 전망을 수행하고 신뢰도 높은 고급 에너지 관련정보 제공

- 주요 기능 : (1) 에너지 D/B 구축, (2) 분석 및 전망, (3) 에너지 검색 서비스 구축 등 에너지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관리·제공

· 주요 간행물 : Petroleum Supply Monthly, Monthly Energy Review, Annual Energy Review, Short-Term Energy Outlook, Annual Energy Outlook

· 산하에 국가에너지정보센터(NEIC: National Energy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하여 독립된 통계분석 업무, 에너지원별 전망 및 분석 등 수행

- 예산 : 2010년 110.6 백만달러 규모. 석유·가스·석탄·원자력·전력·대체연료 등 에너지원별 자료구축·관리에 중점. 에너지수급 분석·전망에 약 15%의 예산 배정

< EIA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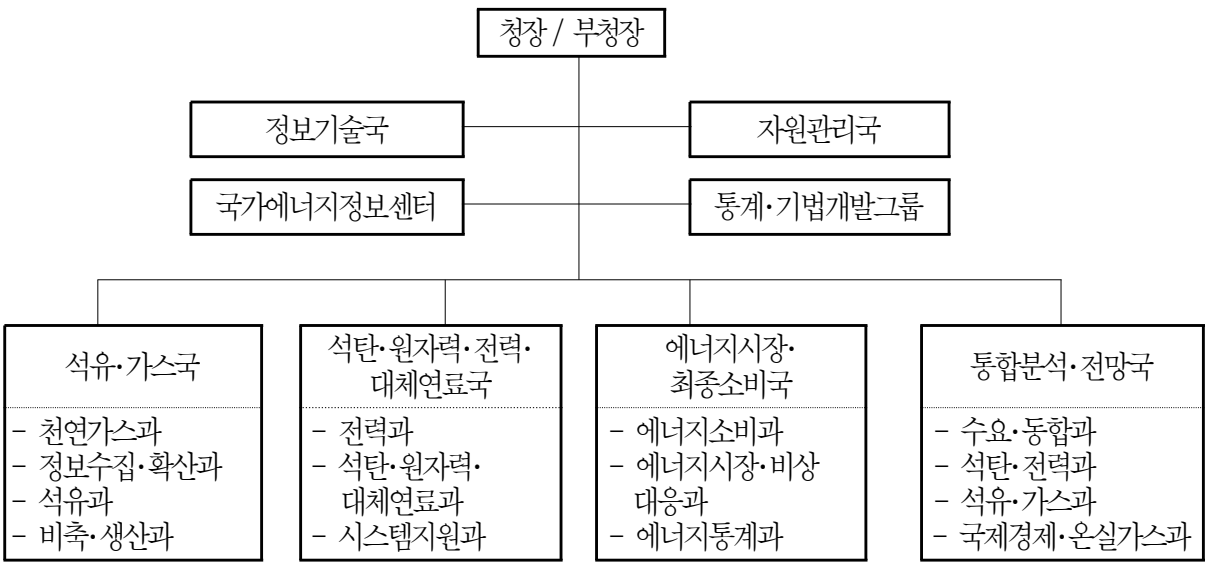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부설 에너지모델링센터(IEEJ/EDMC)

- 설립 연혁 : 1984년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산하의 센터로 발족

- 주요 기능

· 에너지데이터뱅크 운영, 에너지데이터개발 및 출판

· 주요 간행물 : 월간 “에너지동향”, 연간 “일본 에너지-경제통계 핸드북”,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 관련 모형 구축 및 수급 분석 : 단·장기 일본 에너지수급 모형, 세계 에너지수급 모형, 세계 에너지수급-환경 장기분석모형, 세계 석유제품 생산·교역 모형, I-O 모형, 단·장기 거시경제 모형 등

· 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사용실태조사, 석유대체에너지원 및 석유제품 수급 관련 계량분석 연구, APEC 에너지데이터분석그룹과의 국제협력 추진, APEC 에너지 DB 구축 추진

- 조직 : 하위부서로 계량분석·수요전망연구그룹 및 통계정보그룹을 둠

(5) 사업추진절차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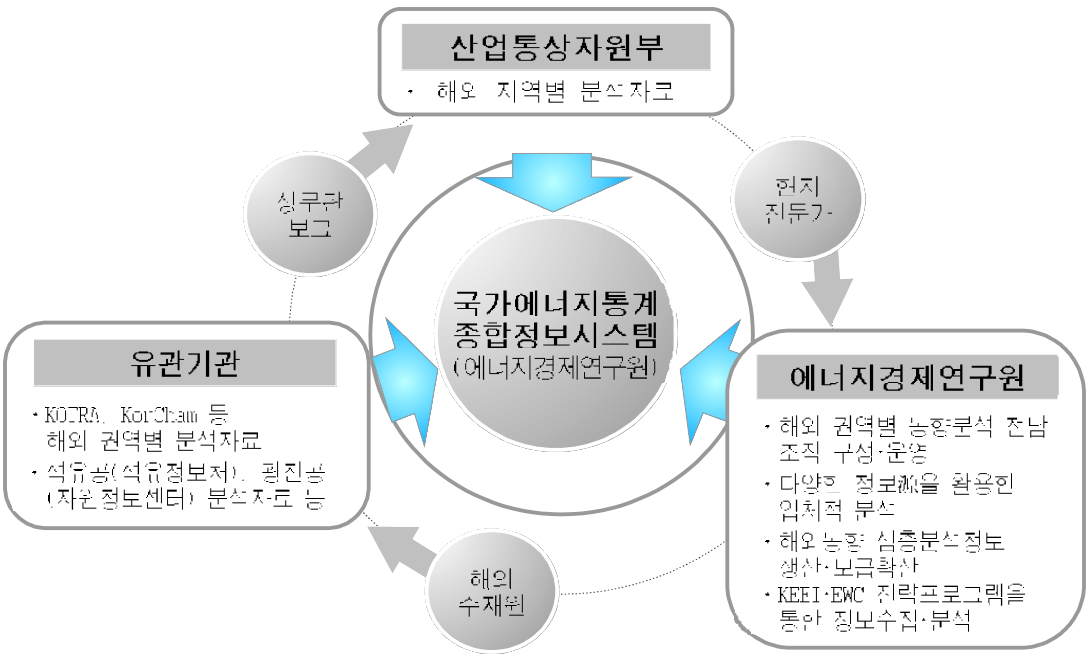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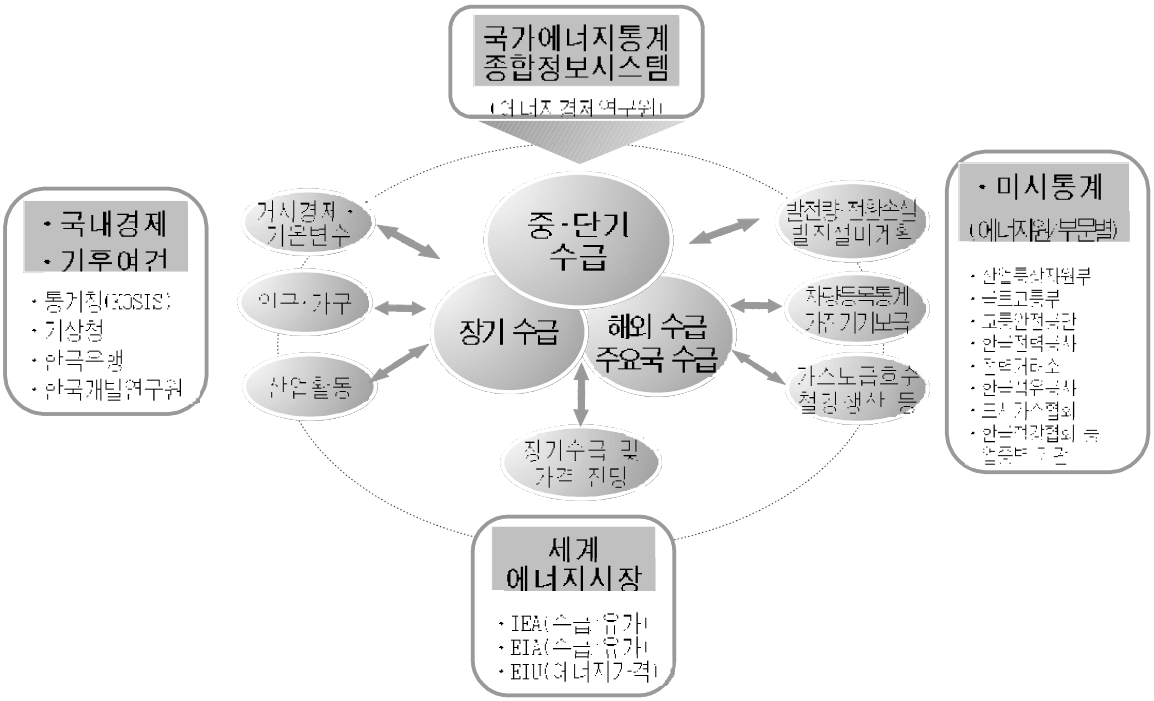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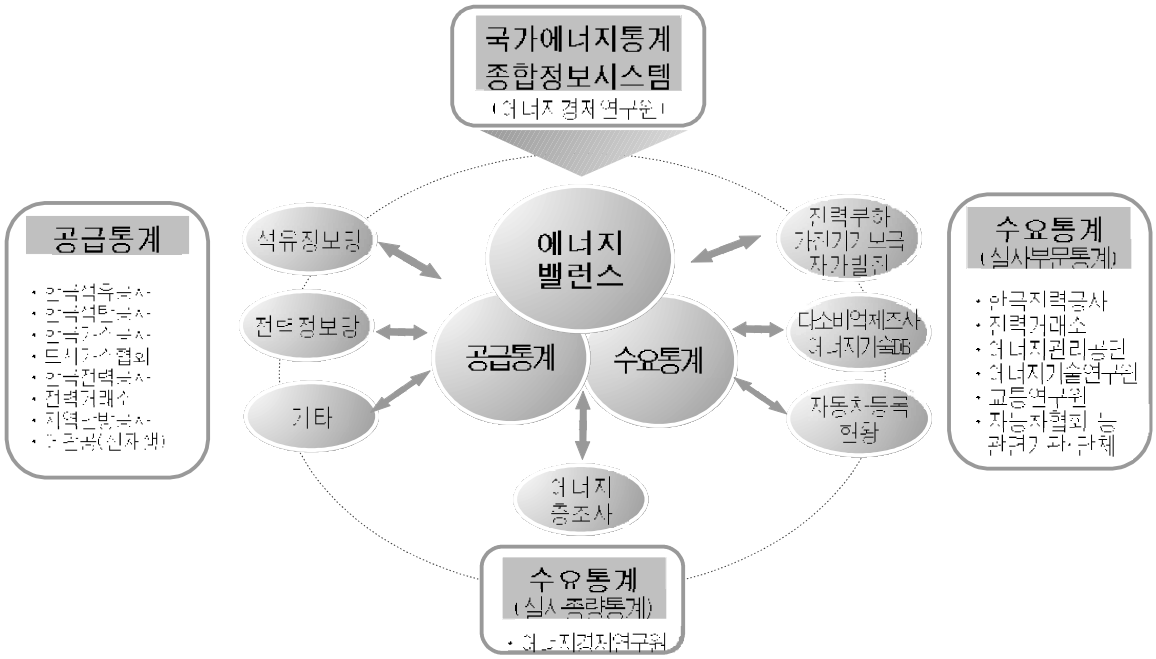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에너지자원정책연구(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자원정책연구	994.3	1,325	1,785	460	34.7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6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주무관(박이용, 51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에너지·자원 이슈와 시장 및 각국의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이행 등을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정책연구용역비 :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향상, 기후변화 대비 국가 에너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정책 발굴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785백만원 편성

▪ 산출내역 : (115백만원 × 4개 과제) + (60백만원 × 21개 과제)

구 분	’14예산	’15예산
□ 에너지자원 정책연구	1,325	1,785
▪ 연구개발비	국정과제 이행 및 2차에너지기본계획 관련 하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55백만원×24개 과제)	- 에너지 안전분야 관리체계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부문별 평가분석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에너지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형 정책 연구 지원 (115백만원×4개 과제) - 에너지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VIP께서 제시한 전략구체화를 위한 추진체계 기초연구 지원 (60백만원×21개 과제)

□ 지원 필요성

○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국제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내 대응 역량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 이슈 주도를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자원정책연구	**994**	**1,325**	**1,785**	**460**	**34.7**
▪ 정책연구개발	994	1,325 (50~60백만×24~28개)	1,785 (115백만원 × 4개 과제) + (60백만원 × 21개 과제)		
□ 세출예산비목(합계)	**994**	**1,325**	**1,325**	**460**	**34.7**
○ 연구개발비(260-00)	994	1,325	1,32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자원분야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가 대응, 기후변화, 자원개발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 및 정책용역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4.4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36개 과제 수행
'15	17.85	0.5~0.6억원(용역과제 평균액) ×24~28개 과제 수행
'16	12.21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40개 과제 수행
'17	11.97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40개 과제 수행
'18	15.92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40개 과제 수행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7조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0년, '동북아에너지연구'에서 '에너지국제협력연구'로 사업명 변경
- '10년, 국회 의결에 따라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정책연구개발'을 통합하여 '에너지자원정책연구'로 신규 편성
- '13년,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에너지자원정책연구'을 분리하여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에너지자원정책연구	10	10	14.40	13.25	17.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09년 : 연구용역 과제 추진 예산부족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비에서 예산 전용(1억원),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0.67억원)

○ '10년 :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2.99억원)

○ '11년 :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2.86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8** ( )	0.67 ( )	- ( )	18.67 ( )	**15.60** ( )	2.99 ( )	0.08 ( )
'12년	**18** ( )	2.99 ( )	- ( )	20.99 ( )	**18.06** ( )	2.86 ( )	0.07 ( )
'13년	**14** ( )	7.2 ( )	- ( )	15.1 ( )	**994** ( )	362 ( )	14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에너지 정책연구 지원

○ EU는 IEE(Intelligent Energy-Europe Programme)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및 수송분야의 정책개발 연구, 산업내 기술·노하우 공유, 에너지 캠페인 등을 시행

* IEE '08년 예산 : 7.3억 유로

(5)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과제공모 및 연구과제 선정(용역심의위원회)→과제수행자 선정→계약체결→연구수행→연구결과 검토 및 정산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681	1,887	1,792	△95	△5.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3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노정림, 51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IEA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1,152백만원

- 산출내역 : 568,200유로(2015년 IEA 예산 중 한국 분담액) × 1,500원/유로 + 200백만원 ≒ 1,051백만원

○ IEF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110백만원

- 산출내역 : 91,900불(3년 평균)×1,130원/달러 ≒ 104백만원

○ CCOP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70백만원

- 산출내역 : 60,000불(3년 평균)×1,130원/달러 ≒ 70백만원

○ IRENA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460백만원

- 산출내역 : 2,100만달러(2014년 IRENA 예상 총예산 규모) × 2.8%(한국 분담율) × 1,130원/달러 ≒ 66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대외협상 역량강화 및 국제논의 참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협력	1,687	1,887	1,792	△95	△5.0
▪ IEA	1,087	1,047	1,152	105	10.0
▪ IEF	92	104	110	6	5.7
▪ CCOP	64	72	70	△2	△2.7
▪ IRENA	438	664	460	△204	△30.0
□ 세출예산비목(합계)	1,687	1,887	1,792	△95	△5.0
▪ 국제부담금(340-02)	1,687	1,887	1,792	△9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8.87	IEA 분담금 1,100 백만원 IEF 분담금 120 백만원 CCOP 분담금 70 백만원 IRENA 분담금 580 백만원
‘15	17.92	IEA 분담금 1152 백만원 IEF 분담금 110 백만원 CCOP 분담금 70 백만원 IRENA 분담금 460 백만원
‘16	17.02	IEA 분담금 1102 백만원 IEF 분담금 110 백만원 CCOP 분담금 70 백만원 IRENA 분담금 420 백만원
‘16	17.02	IEA 분담금 1102 백만원 IEF 분담금 110 백만원 CCOP 분담금 70 백만원 IRENA 분담금 420 백만원
‘18	14.47	IEA 분담금 902 백만원 IEF 분담금 90 백만원 CCOP 분담금 65 백만원 IRENA 분담금 390 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해 국제 에너지 이슈에 대한 공동 논의와 협력 추진

○ 추진경위

- IEA : 국제에너지협정(IEP) 제64조 : OECD/IEA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02.3)함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 발생

* IEA가 OECD 분과인 만큼, OECD 회원국 1인당 GDP 등 경제성장 지표를 감안하여 확정

- IEF : 국제에너지포럼 헌장(IEF Charter) 제3장(Membership) : ’06년부터 분담금 납부, ‘11.2월 IEF 헌장 승인에 따라 분담금 의무화

* 분담금 산정기준 : IEF 사무국이 포럼 참석 대상국(86개국)의 세계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석유 생산·소비 비중을 기준으로 매년 분담금을 산정하여 배정

- CCOP :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규정집 제 9.1조에 따라 '65년부터 분담금 납부

* 분담금 산정기준 : CCOP 분담금은 CCOP 운영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단이 고지하여 약정(Agreement)된 액수이며 각국의 국력, CCOP에 관한 관심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산출

- IRENA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설립규정('09.1.26, 독일 본 창립총회시 서명), '10.7 25개국 비준서 기탁으로 공식출범함에 따라 '11년부터 분담금 납부 의무 발생

* 분담금 산정기준 : IRENA 연간 총예산 × 각국 분담금 비율(UN 분담금 배정비율 × 조정계수) + 자발적 기여금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9.0	18.96	18.53	18.87	17.9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9.00**			**19.00**	**19.00**	-	-
'12년	**18.96**			**18.96**	1,301	-	5.95
'13년	**18.53**			**18.53**	16.81		1.7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전년도 불용액을 활용한 차기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선납
- (조치사항) '12년부터 환율변동 등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잔액은 차기년도 선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분담금 납부 요청(IEA, IEF, CCOP, IRENA 사무국) → 요청공문 접수 및 분담금 지급 의뢰(산업통상자원부) → 분담급 납부(한국석유공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회계위탁관리비(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회계위탁관리비	1,153	1,153	1,153	0	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4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주무관(황의준, 51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140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위탁수행(회계업무 수탁운영비)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2. 사업목적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계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인건비) 에특회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880백만원

- 산출내역 : 80백만원 × 11명(정원) * '14년 대비 동결

② (경비) 에특회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73백만원

- 산출내역 : 25백만원 × 11명 * '14년 대비 동결

구 분	'14예산	'15예산
□ 회계위탁관리비	1,153백만원	1,153백만원
▪ 인건비	880백만원 에특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적정 인원(정원 11명)의 실제 소요 인건비 확보	'14년 대비 동결
▪ 경비	273백만원 에특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위탁기관의 운영경비	'14년 대비 동결

□ 지원 필요성

○ 안정적인 에특회계의 세입 및 세출, 국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회계위탁관리 업무 소요경비 보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회계위탁관리비	1,153	1,153	1,153	-	-
▪ 인건비	880	880	880	-	-
▪ 경비	273	273	273	-	-
□ 비목	1,153	1,153	1,153	-	-
▪ 위탁사업비(210-15)	1,153	1,153	1,15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특회계관련 세입(부담금·부과금의 수입 및 환급)·세출업무(보조, 출자, 융자금의 지출)의 신속한 처리와 에특회계 소관자산(채권, 국유재산,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53	▪ 인건비 : 880 백만원 ▪ 경비 : 273 백만원
‘15	1,153	▪ 인건비 : 880 백만원 ▪ 경비 : 273 백만원
‘16	1,095	▪ 인건비 : 862 백만원 ▪ 경비 : 233 백만원
‘17	1,095	▪ 인건비 : 862 백만원 ▪ 경비 : 233 백만원
‘18	931	▪ 인건비 : 720 백만원 ▪ 경비 : 211 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 3항(회계사무의 위탁)

>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5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위탁관리비 지원 (사무의 법정 위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회계위탁관리비	8.6	8.77	11.5	11.5	1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6			8.6	8.6		
	( )	( )	( )	( )	( )	( )	( )
'12년	8.77			8.77	8.77		
	( )	( )	( )	( )	( )	( )	( )
'13년	11.5			11.5	11.5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에특회계 위탁관리 수행	한국석유공사
⬇	
위탁사업비 지급요청	한국석유공사
⬇	
위탁사업비 교부결정 및 통지	지식경제부
⬇	
자금수령 집행	한국석유공사
⬇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한국석유공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회계관리비(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회계관리비	67	74	74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4 - 302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주무관(황의준, 51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11.2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계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운영비) 예결산 자료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42백만원

- 산출내역 : 에특회계 예결산서 인쇄비용 30백만원, A4 용지 구입 6백만원,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 6백만원

* ('14년) 42백만원 → ('15년) 42백만원, 동결

② (여비) 예결산 업무 등 국회활동, 예산사업 추진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13백만원

- 산출내역 : (국내여비 4백만원) 근무지내 20만원/월×12개월=240만원, 근무지외 20만원/분기×2회/분기×4분기=160만원, (국외여비 9백만원) 유럽·북남미권 1회 7백만원, 아시아권 1회 2백만원

* (14년) 13백만원 → ('15년) 13백만원, 동결

③ (업무추진비) 예결산 업무,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에특회계 관리·운용 업무 지원을 위한 경비 16백만원

- 산출내역 : (부내 예결산 회의비 1,000만원) 3만원/명×10명/회×3회/월×12개월, (기재부 예결산 회의비 300만원)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국회 예결산 회의비 300만원)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 (14년) 16백만원 → ('15년) 16백만원, 동결

④ (유형자산) 회계관리를 위한 사무용 전산기기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만원

* (14년) 3백만원 → ('15년) 3백만원, 동결

□ 지원 필요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회계관리비	67	74	74	-	-
▪ 에특회계관리운용	67	74	74	-	-
□ 비목	67	74	74	-	-
▪ 운영비(210-10)	39	42	42	-	-
▪ 국내여비(220-01)	5	4	4	-	-
▪ 국외여비(220-02)	5	9	9	-	-
▪ 업무추진비(240-01)	15	16	16	-	-
▪ 자산취득비(430-01)	3	3	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특회계관련 세입(부담금·부과금의 수입 및 환급)·세출업무(보조, 출자, 융자금의 지출)의 신속한 처리와 에특회계 소관자산(채권, 국유재산,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0.74	○ 운영비(42백만원), 여비(13백만원), 업무추진비(16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5	0.74	○ 운영비(42백만원), 여비(13백만원), 업무추진비(16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6	0.7	○ 운영비(40백만원), 여비(11백만원), 업무추진비(16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7	0.7	○ 운영비(40백만원), 여비(11백만원), 업무추진비(16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8	0.6	○ 운영비(36백만원), 여비(8백만원), 업무추진비(15백만원), 자산취득비(1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투자계정,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②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5.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위

- '95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비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회계관리비	0.68	0.74	0.74	0.74	0.7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10백만원 전용, 예산 절감을 통해 4백만원 불용

○ ('12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5백만원 전용

○ ('13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7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0.68		0.1	0.68	0.68		0.04
	( )	( )	( )	( )	( )	( )	( )
'12년	0.74		0.05	0.74	0.74		
	( )	( )	( )	( )	( )	( )	( )
'13년	0.74		0.03	0.74	0.67		0.07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직접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41,080	67,110	61,271	△5,839	△8.7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9 - 315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나한균, 512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및 보일러(가스, 기름, 연탄) 지원
총사업비	'07~계속
사업규모	계속사업('14년까지 2,549억원)
지원조건	저소득층 3.5만 가구 지원
사업시행주체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2.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단열, 창호시공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비용 절감 지원

○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을 통한 난방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 단열·창호공사 등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비용지출 절감

3. '15년 예산 내용

○ 시공·물품지원 : 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등을 위해 59,350백만원 요구

- 가구지원 : 1.5백만원(가구당 지원한도 150만원) × 3.53만 가구 = 52,950백만원
  - 대상 가구별 주택상황에 맞추어 1.5백만원 한도에서 단열·창호·보일러, 등을 지원 *(14년: 1.5백만원 × 4만가구=60,000백만원)*
- 시설지원 : 10백만원(시설당 지원한도 10백만원) × 640개소 = 6,400백만원

○ 시공교육, 에너지진단 : 시공업체 대상 시공 전문 교육과 주택에너지 진단 시행 등을 위해 721백만원 요구 *(14년과 동일)*

· 시공업체 교육 : 7.5백만원 × 20회 = 150백만원

· 에너지진단컨설팅 및 사후진단 : 4,000가구 X 0.14백만원 571백만원

○ 기타 사업설명회 및 조달청 수수료 등을 위해 535백만원 요구

▪ 사업설명회: 12회x3백만원 = 36백만원

* 대관료, 설명회책자 등

▪ 조달수수료: 45백만원

- 단열재(50억) x 0.54%(조달수수료)≒27백만원
- 보일러(30억) x 0.54%(조달수수료)≒18백만원

▪ 조사비: 35,300가구x1만원=353백만원

▪ 감리비: 100백만원

- 감리비: 50인x5일x0.3백만원=75백만원
- 감리원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50인x0.5백만원=25백만원

○ 간접비 지원 : 인건비, 출장 및 현장점검비 등 총 665백만원 요구

▪ 인건비: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 537백만원

※ 사업규모 확대('13년 41,080백만원→'15년 69,890백만원, 70%증가)에 따라 '13년 9명(본부장(1)과 사업부 전담인력(6), 회계 지원 인력(2))에서 '14년부터 3명(사업전담2, 회계직원1) 신규 인력을 추가 반영하여 총 12명 인건비 반영

▪ 출장 및 현장점검비:10인x2백만원=20백만원 (1인 현장점검 20회 기준)

▪ 회의비: 10회x 1.2백만원 =12백만원

▪ 평가비: 평가회 5회x1백만원/만족도 조사 1회x 7백만원(사업 완료후 시행,시공, 대상가구 대상) 총 12백만원

▪ 시스템개발 관리: 60백만원

- 서버운영 및 업그레이드: 10백만원
- 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 20백만원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30백만원

▪ 통신비 및 소모품비: 2백만원 x 12개월= 2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가격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증가 둔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로 인해 에너지 빈곤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41,080	67,110	61,271	△1,938	△8.7
▪ 시공·물품지원 (산출근거)	39,825 (시공 :1,200천원 x 3.05만가구 물품: 430천원 x 0.75만가구)	62,550 (1,390천원x 4.5만가구)	59,350 가구지원52,950 (1,500천원x 3.53만가구) 시설지원:6,400 (10x640개소)	△3,200	△5.1
▪ 에너지컨설팅 (산출근거)	-	2,700 (60천원x 4.5만가구)	571 (60천원x 4.5만가구)	△2,129	△78.8
▪ 에너지 진단, 교육 등 (산출근거)	739	1,195	685	△510	△42.7
▪ 간접비 (산출근거)	516	665	665	-	-
□ 비목(합계)	41,080	67,110	61,271	△1,938	△8.7
○ 민간경상보조(320-01)	41,080	67,110	61,271	△1,938	△8.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단위: 가구)

구 분	'13	'14	'15	'16	'17
시공·물품 지원 가구	38,000	45,000	38,000	38,000	38,000

* '13년도는 동일 가구에 시공, 물품 중복 지원을 한 경우에도 개별 실적으로 집계, '14년 이후는 중복 실적 배제

○ 추진방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 저감
  ·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총체적 접근
  · 내·외부의 사업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만족도조사, 설문평가 등을 통한 사업검토, 추가 개선과제 발굴
- 에너지전문위원, 유관기관 등 내·외부와 전문성 연계 강화
  ·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등 전문 위원들과의 자문 연계
  · 사회복지기관 및 전문시공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연계
  · 전담직원 임명·조직운영으로 책임과 권한 명확화

○ 제도개선사항 :

- 지원 전(全)가구에 대해 사전 진단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분석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컨설팅 제도 도입
- 사후 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효과성 및 에너지비용 저감량 산출
- 우수한 시행기관 및 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및 인증제도 도입
- 대상가구별 배정액 상향으로 주택효율개선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671.1	· 시공 및 물품: 4.5만가구×1.39백만원 · 에너지컨설팅: 4.5만가구×0.06백만원 · 교육, 진단 등: 1,195백만원 · 간접비 : 665백만원
'15	613	· 시공 및 물품: 3.8만가구×1.47백만원=55,860 · 에너지컨설팅: 3.8만가구×0.06백만원=2,280 · 교육, 진단 등: 2,500백만원 · 간접비 : 660백만원
'16	582	· 시공 및 물품: 3.8만가구×1.47백만원=55,860 · 에너지컨설팅: 3.8만가구×0.06백만원=2,280 · 간접비 : 60백만원
'17	582	· 시공 및 물품: 3.8만가구×1.47백만원=55,860 · 에너지컨설팅: 3.8만가구×0.06백만원=2,280 · 간접비 : 60백만원
'17	495	· 시공 및 물품: 3.3만가구×1.47백만원=49,440 · 간접비 : 6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4조 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추진경위

- '06.11월 : 대통령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사업 등 '에너지복지사업 추진계획 확정'
- 17대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08년 8.15 경축사)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3)

> ▸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방향" 및 "50대 실천계획"
> ▸ **7-7-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 ▸ 7-7-3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원대상 확대
> ▸ 7-7-8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현물 지원

- '06. 12월 : 한국에너지재단 발족 및 시범사업 시행
- '07년 5월 : 산업자원부・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원년 선포
- '07년 1차년도 사업 시작(에특회계 보조 100억원으로 17천 가구 지원)
- '08년 : 에특회계 285억원, 80천여 가구 지원
- '08년 : 제17대 대통령당선자 선거공약 포함(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충)
- '09년 : 복권기금 285억원, 64천여 가구 지원
- '10년 : 복권기금 292억원, 43천여 가구 지원
- '11년 : 복권기금 194.5억원, 21천여 가구 지원
- '12년 : 에특회계 295억원, 29천여 가구 지원
- '13년 : 에특회계 411억원으로 38천여 가구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회계위탁관리비	194.5	310.8	410.8	671.1	6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1976년부터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에너지부 주관 하에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총 주거비용을 줄이고 복지를 개선하는 주택단열지원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시행중

□ 영국

○ "Warm Front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 대상 난방기기 교체, 이중벽 및 다락방 단열 공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5) 사업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1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2월
2 사업 참여자 결정	• 시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	2월
	• 시공업체 공모 및 선정 * 에너지재단, 선정평가위원회	2월
	• 예비명부 발굴(지자체 → 에너지재단) * 시군구별 예산배정 및 지원가구 목표치 할당	3~5월
	• 물품, 자재(창호, 단열재 등) 입찰	3~5월
3 지원가구 선정	• 현장조사(시행기관 및 시공업체) * 지원가구 최종 선정 및 지원내역 결정	5~8월
	• 계약체결 및 자금배정	6~10월
4 시공 및 물품 설치	• 시공, 물품설치	6~10월
	• 에너지진단	8~10월
	• 감리 및 평가(현장점검)	10월
	• 변경 및 하자보수	9~10월
	• 정산보고(시행기관 → 에너지재단)	10~11월
수 사업결과 보고	• 결과보고(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12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에너지바우처(신규)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바우처	-	-	105,800	105,800	10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442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과(주영준, 044-203-5120), 사무관(박주현, 512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058억원
지원조건	민간 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舊 한국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빈곤을 완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가구당 지원금 : 1,044억원 * '15.12월부터 지원

- 98.4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10.6만원*을 3개월간 지급(1개월에 3.5만원) : 98.4만 가구 × 10.6만원(3개월분) = 1,044억원

* 가구원수, 사용에너지원(도시가스 여부), 주택형태(아파트여부)에 따라 차등화

② 시스템구축 및 민원대응,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 14억원

- 에너지바우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 100만에 가까운 저소득층의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 구축·운영
- 신규로 도입되는 대형 복지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자에게 제도를 알리고 지원을 신청토록 하는 사업안내 비용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가격 변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특히 동절기에 에너지 비용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의 필요성이 큼

○ 사업규모와 지원대상 가구수를 감안할 때 철저한 대상자 관리와 관련기관 간의 정보연계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바우처	-	-	105,800	105,800	100
▪ 가구당 지원금	-	-	104,400	104,400	100
▪ 사업운영비	-	-	1,400	1,400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당없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지원

* 「에너지법」 제16조의2 : 정부는 에너지소외계층에게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음
* 「에너지법」 제16조의3 :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음
* 「에너지특별회계법」 제2조 : 에너지특별회계로 에너지복지 지원가능

○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가 국정과제로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13.12)

  *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참여

- 에너지바우처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의결('14.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바우처	-	-	-	-	1,05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LIHEAP 사업(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영국)** 60세 이상자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Winter Fuel Payment, 자녀가 있는 가구·장애인·만성질환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Cold Weather Payment 등이 있음

(5) 사업추진절차

○ **(신청단계)** 바우처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가 주민센터 등에 신청

○ **(선정단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소득·재산 수준, 가구원 특성(노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 판정

○ **(지급단계)** 가구원수·사용에너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전담기관)하여, 바우처카드 발급·배송(금융사, 지자체)

○ **(사후관리)** 바우처의 매매 등 부정행위 단속·벌칙 부과* 등

* 개정「에너지법」에 따라 바우처 회수·금액 환수·벌금부과 등 제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실시 타당 결론

6. 참고자료

참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수준

□ **(지원기준 및 방법)** 가구원수·주거형태·사용연료 등 감안, 지급액을 차등화하여 **동절기 3개월**(12-2월)간 지원 **(月 1.8 ~ 5.5만원 범위)**

* 연탄·등유 등 **기존 복지사업** 지원은 지급수준 유지
  - (연탄) 현재 가구당 16.9만원 지급, (등유) 현재 가구당 200L 지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안) (단위: 원) >

가구원수	지원형태	月지원금액	총지원금액(3개월)
1	LNG	18,000	54,000
	비LNG-아파트	23,000	69,000
	비LNG-비아파트	27,000	81,000
2	LNG	26,000	78,000
	비LNG-아파트	27,000	81,000
	비LNG-비아파트	33,000	99,000
3	LNG	30,000	90,000
	비LNG-아파트	31,000	93,000
	비LNG-비아파트	39,000	117,000
4	LNG	33,000	99,000
	비LNG-아파트	35,000	105,000
	비LNG-비아파트	46,000	138,000
5명이상	LNG	35,000	105,000
	비LNG-아파트	40,000	120,000
	비LNG-비아파트	55,000	165,000

* 동절기 필요 에너지비용을 가구원수, 지원형태(LNG그룹, 비LNG그룹, 아파트/非아파트)로 구분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35,115	43,789	48,128	4,339	9.9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5500 - 5531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국(박일준), 에너지안전과(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김기동, 51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14년까지 기 투자액 : 5,589억원)
사업규모	가스안전관리 검사, 점검, 시험, 인증, 교육 등 1,650만건
지원조건	출연 (수지차 보전)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가스안전 검사·점검 및 교육·홍보 등 가스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으로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검사, 점검, 진단, 교육, 홍보 및 연구개발 등 가스 안전관리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39,620백만원 중 자체수입(91,132백만원)을 제외한 48,128백만원 (수지차 보전)

총사업비(139,620백만원)
(-) 자체수입(91,132백만원)
= 출 연 금(**48,128백만원**)

○ **자체수입** (91,132백만원)

▪ 2014년 예상수입(930억원)에 고시 제·개정 및 15년 수입 증감요인을 반영, 부족한 금액은 수수료 인상을 추진

14년 예상 수입 (A)	수입 증감 요인		수입증대 노력(D) (수수료인상 3%)	'15년 수입목표 (A+B-C+D)
	증가(B)	감소(C)		
930.7억원	5.1억원	42.4억원	17.9억원	911.3억원

* 증가요인 (5.1억원) : 독성가스 교육, 바이오 가스 등 품질검사

* 감소요인(42.4억원) : 도시가스 도매사업배관 시공감리 감소, LPG 250kg이하 정기검사 면제 및 세월호 사고로 14년에 한시적으로 증가된 진단물량의 15년 감소 예상

○ 총 사업비 (139,260백만원)

▪ 인건비, 경상비 및 예비비 92,945백만원 ('14년 87,128백만원)

- 정원 공통 인상률 3.8%(28.3억), 15년 증원인력 40명(16.1억), 14년 증원인력 35명 미반영분(10.2억) 증액
- 경상비 안전장비 수선 유지비(2.9억) 증액

▪ 공사 사업비는 46,315백만원('14년 43,760백만원)

- 교육원 노후 실습장 리모델링 및 노후 실습장비 교체(15.2억)
- 이전청사 시설관리 증가분(10.4억), 이전수당(8.9억)
- 지방이전 공동직장 어린이집(3.9억), 재난관리자 교육훈련비(4.3억)
- 안전보건관리 위탁수수료(1.6억)
- 지방이전 한시적 지원 종료(△17.5억), 홍보사업비 구조조정(△1.2억)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A-B)	35,115	43,789	48,128	4,339	9.9
○ 지출금액(A)	129,277	130,888	139,260	8,372	6.4
▪ 인건비	68,533	75,088	80,617	5,529	7.4
▪ 경상운영비	6,398	9,780	10,068	288	2.9
▪ 사업비	41,476	43,760	46,315	2,555	5.8
▪ 예비비	2,358	2,260	2,260	0	0
○ 자체수입(B)	89,640	87,099	91,132	4,033	4.6
▪ 검사수입	58,298	58,373	61,291	2,918	5.0
▪ 기술컨설팅 수입	18,401	17,596	18,792	1,196	6.8
▪ 연구개발수입	4,200	2,590	2,722	132	5.1
▪ 교육수입	7.391	7,220	7,391	171	2.4
▪ 사업외수입	1,349	1,320	936	△384	△29.1

□ 지원 필요성

○ 가스는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안전 확보가 필수적임

▪ 가스안전관리 분야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공익사업 영역이며,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

* 가스안전관리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약 3조원(한국조세연구원 연구결과)

- '94.12 아현동 사고(사망 12명, 부상 101명, 재산피해 199억원)
- '95. 4 대구지하철공사장 사고(사망 101명, 부상 201명, 재산피해 540억원)
- '98. 9 부천 LPG충전소 사고(사망 1명, 부상 84명, 재산피해 137억원)
- '10. 8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중상 6명, 경상 12명)

▪ 첨단산업의 발달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다양한 가스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시설의 노후화·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형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최근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출사고로 국민의 불안 가중
- 1960~1980년에 집중 설치된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 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대형사고 위험 상존
- 전국 도시가스배관망 확대 설치에 따른 타공사 사고위험 상존

▪ 최근, 대형 해양참사로 인하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노후시설 개선 미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미흡 등이 진행

- 이에, 가스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 강화 혁신방안」을 마련
- 동 혁신방안의 실체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도움이 절실

○ 또한, 가스소비량 및 안전관리 업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최근 5년간 가스안전관리 대상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감(%)
가스소비량	35,249	41,812	43,674	46,316	48,206	6.2
안전관리 대상 업소수(개)	640,933	713,682	753,607	770,185	781,013	8.3

▪ 안전관리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체수입으로는 안전관리 투자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비 등을 수지차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14	438	▪ 국회 확정(수자치 보전 : 총 공사 운영 1,309억, 자체수입 871억제외 지원)
'15	481	▪ 정부 중기재정계획 운영비 인상율 3%(34,225) + 장비 현대화(1,108)
'16	457	▪ 정부 중기재정계획 운영비 인상율 3%(35,252) + 장비 현대화(81)
'17	457	▪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수지차 지원액 감액
'18	388	▪ 수지차 지원액 전년수준 동결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추진경위

- 1973. 2.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 1974. 1. 7 고압가스보안협회설립(공사 전신)
- 1979. 2. 1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발족
- 1984. 7. 1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 개시(공사 운영비 지원)
- 1997. 1 .1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에특회계 편입으로 보조금 지원
- 2007. 4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출연기관 전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251	286	351	438	4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51	-	-	251	251	-	-
	( )	( )	( )	( )	( )	( )	( )
'12년	286	-	-	286	286	-	-
	( )	( )	( )	( )	( )	( )	( )
'13년	351	-	-	351	351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2년도 평가결과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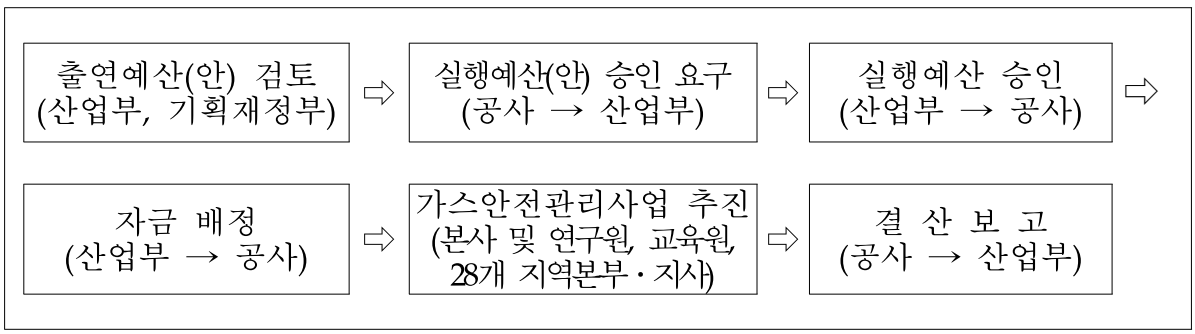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서민층가스시설개선(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3,187	13,187	13,990	803	6.1

* 사업코드 : 21- 24 - 4 - 110 - 115 - 5500 - 5531 - 304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안전과장(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임택, 51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1~2015년
총사업비	711억원 ('14년까지 기투자액 : 571억원)
사업규모	서민층 401,875가구, 사회복지시설 2,000개소
지원조건	지자체 경상보조('11년 : 전액 국비보조, '12년부터 지자체 매칭) 민간경상보조(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안전기기 시범 보급을 통해 가스안전 확보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비 13,990백만원

▪ LPG호스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 13,663백만원(74,320가구)

* '15년 지원 대상 74,320가구에 대해 지자체 매칭(서울50%, 지방20%)으로 사업 추진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시범보급 지원 327백만원(1,000개소)

<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비 고
합 계		13,990	서민층 74,320가구, 가스안전기기 1,000개소
금속배관 교체	▪ 시설개선	11,689	▪ 74,320가구×80%×19.7만원/가구= 11,689백만원 * 단, 서울지역 보조율은 50%임
	▪ 부대비용	312	▪ 홍보 및 인쇄비 170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15백만원 ▪ 지자체회의 및 일반비용 127백만원
	▪ 점검비용	1,662	▪ 74,320가구×80%×28천원/가구= 1,662백만원 * 단, 서울지역 보조율은 50%임
	소 계	13,663	74,320가구
다기능 가스안전 기기 시범보급	▪ 시설 설치	250	▪ 1,000개소×25만원/개소 = 250백만원
	▪ 부대비용	49	▪ 홍보 및 인쇄비 20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2백만원 ▪ 회의비 및 일반비용 27백만원
	▪ 점검비용	28	▪ 1,000개소×28천원/개소 = 28백만원
	소 계	327	1,000개소

* 부대비용 : 지역별 평가위원회 및 지역별 협의회 회의비용, 홍보비, 인지세 등
** 점검비용 : 시설개선 후 가스누출여부 등 안전성 확인 제반비용

□ 지원 필요성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호스를 2015. 12.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의무화*

* 금속배관 교체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개정 2010. 12. 23)

○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LP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안전기능이 부가된 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지원

- 자비(自費)로 가스안전설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안전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가스안전과 생활안정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13,187	13,187	13,990	803	6.1
▪ 금속배관 교체	13,187	12,860	13,663	803	6.1
▪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보급 시범사업	-	327	327	-	
□ 비목	13,187	13,187	13,990	803	6.1
▪ 자체단체경상보조	12,884	12,548	13,351	803	6.1
▪ 민간경상보조	303	639	639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LP가스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12년에 차상위계층, '13년부터는 소외계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 '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20%)으로 사업 추진

* 지자체에 공동사업 주체로서의 자격 부여와 예산 매칭을 통해 지원 대상가구 명단 확보 등 원활한 업무협조와 책임 의식 제고

○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다기능(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 '14 ~ '15년 시범사업 실시 후 '16년부터 본격 보급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31.9	▪ 가스시설개선 지원 : 78,900가구
'15	139.9	▪ 가스시설개선 지원 : 13,663백만원(74,320가구) ▪ 가스안전기기 설치사업 : 327백만원(1,000가구)
'16	-	-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LPG 고무호스 사용주택 2015. 12. 31일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개정 2010. 12. 23)

○ 추진경위

▪ 1995년 ~ 2010년(가스안전공사 자체예산과 지자체 합동 사업 추진)

- LPG호스 사용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2,764가구 중 '10년까지 267,695가구 가스시설개선 지원

▪ 2011년 (신규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85,069가구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 2012년 (계속사업)

- 차상위계층 91,343가구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 2013년 (계속사업)

· 소외계층 등 서민층 79,523가구에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 2014년 (계속사업)

· 소외계층 등 서민층 71,620가구에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59	148	132	132	1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지적

▪ 서민층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관련, 차상위 계층까지 예산지원 확대 필요(김성회의원, 정태근의원)

▪ 국민기초 시설개선 실적 지역별 편차 지적 및 조기 개선 필요 (이종혁의원, 이상권의원, 강창일의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은 1986년부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보급하여 LP가스 사고 사망자수가 약 1/10 수준으로 감소

《일본의 안전기구 보급에 따른 LP가스사고 사망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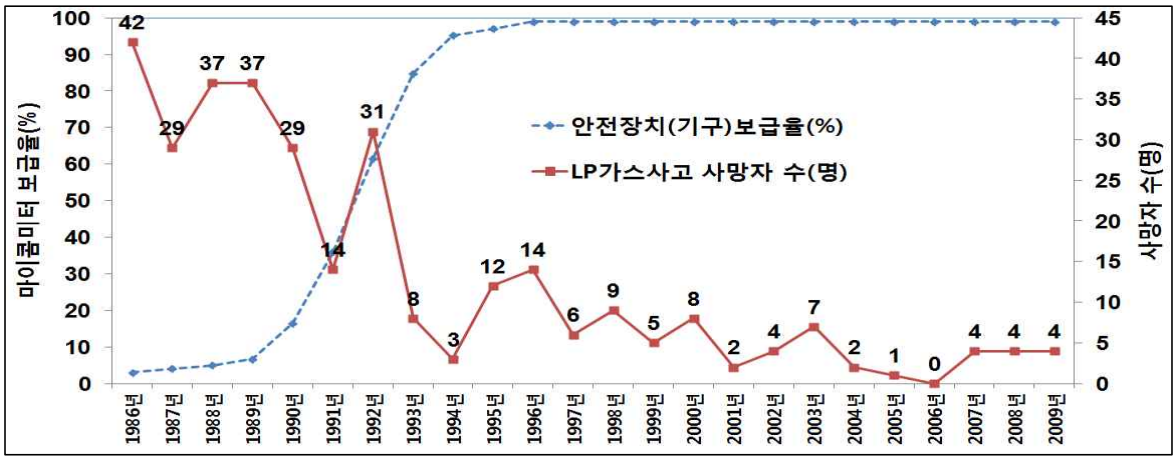

* 일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보급률 : 99.7%이상

(5) 사업추진절차

개선대상 선정 · 시설점검/대상추천 → 검토 → 대상 확정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공고 → 심사 → 사업자 선정

↓

시설개선 및 설치 · 설계(사업자) → 시공 → 자체검사

↓

검수 및 평가 · 검수(한국가스안전공사) → 비용 지불 → 사업 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가스시설 개선 사례

참고 가스시설 개선사례

개 선 전	개 선 후
호스시설(내부)	배관시설 교체 및 퓨즈콕 설치
호스시설(외부)	배관시설 교체 및 용기차양설치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4,000	6,832	6,080	△752	△11.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500 - 5531 - 306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에너지안전과장(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김기동, 51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12～2016년 (5개년)
총사업비	▪ 278억원('14년까지 126억원 지급)
사업규모	▪ 대지면적 : 66,684㎡, 건축연면적 : 4,236㎡ ▪ 건축규모: 연소시험동 등 총 9개동 - 연소가스 화재·폭발실증 실험동 1동 - 초고압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1동 - 초저온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1동 - 공용 및 시편 보관동 1동 ▪ 구조 및 외장재료 : 철근 콘크리트(내진설계) 및 외장판넬
지원조건	▪ 출연
사업시행주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가스화재·폭발 사고의 재현·실증을 통한 원인규명, 고압장치의 부품개발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센터 건립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법정경비, 감리비 등 '15년 건축비 6,080백만원 요구

▪ 순공사비 5,373백만원

: [순공사비(24,080백만원) -기집행액(10,714백만원]× 공정율(40%)

▪ 법정경비 369백만원

: [법정경비(926백만원) -기집행액(0백만원]× 공정율(40%)

▪ 감리비 325백만원
: [감리비 909백만원) -기집행액(96)] × 공정율(40%)
▪ 부대비 13백만원
: [부대비 (55백만원)-기집행액(22)] × 공정율(40%)

□ 지원 필요성

○ 가스사고 예방은 사고의 재현실험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가스사고 화재·폭발 실증설비를 갖추지 못함
*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10. 8월)를 계기로 국감시 전문시험센터 필요성 제기

○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시험·인증 제도를 기술무역장벽(TBT : 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활용
- 현재, 세계 시험·인증 시장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성장

○ 산업의 발달로 수요가 증가되는 초고압·초저온·대용량 가스 부품산업은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성장 가능
- 선진국의 화재·폭발시험 등 안전성 인증이 국내기업 진입장벽 역할
- 가스 제품·시설의 시험·인증을 지원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
* 외국인증 의뢰함에 따라 제품개발 지연, 기업의 핵심 설계기술 유출과 고가의 시험비용 지출하는 문제점 대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4,000	6,832	6,080	-752	-11.0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4,000	6,832	6,080	-752	-11.0
□ 비목	4,000	6,832	6,080	-752	-11.0
▪ 공사비	3,938	6,459	5,742	-717	-11.1
▪ 감리비	52	96	325	229	238.5
▪ 부대비	10	22	13	-9	-40.9
▪ 도로건설비		55	0	-55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부지매입, 기본설계, 건축, 주요설비 설치 순으로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8	▪ 공사비 6,459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공정율(50%) ▪ 감리비 96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요율(1.131%)] × 공정율(70%) ▪ 부대비 22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요율(0.244%)] × 공정율(70%) ▪ 도로건설비 255백만원 : 도로건설비(255백만원) × 공정율(100%)
'15	61	▪ 순공사비 5,373백만원 : [순공사비(24,080백만원) -기집행액(10,714백만원]× 공정율(40%) ▪ 법정경비 369백만원 : [법정경비(926백만원) -기집행액(0백만원]× 공정율(40%) ▪ 감리비 325백만원 : [감리비 909백만원) -기집행액(96)] × 공정율(40%) ▪ 부대비 13백만원 : [부대비 (55백만원)-기집행액(22)] × 공정율(40%)
'16	92	▪ 순공사비 7,993백만원 :[순공사비(24,080백만원) -기집행액(16,807백만원]× 공정율(100%) ▪ 법정경비 557백만원 :[법정경비(926백만원) -기집행액(369백만원]× 공정율(100%) ▪ 감리비 488백만원 :[감리비 909백만원) -기집행액(421)] × 공정율(100%) ▪ 부대비 20백만원 :[부대비 (55백만원)-기집행액(35)] × 공정율(100%)
'17		▪ 해당없음
'18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최근 들어 CNG버스에서 10차례의 가스누출 및 폭발 사고 발생
-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발생('10. 8월, 중상 6명, 경상 12명)
- '10. 10월 국정감사시 CNG버스 용기폭발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시험센터 구축 필요성 지적
- '11. 8월 사업예산 편성시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반영
  * 총사업비 222억원, 사업기간 4년('12~'15년), 초고압시험동 등 5개 시험·연구동 건축
- '13. 10 총사업비 변경(22,164 → 30,673백만원) 및 사업기간 연장 (2012~2015년(4년) → 2012~2015년(5년))
- '14. 04 낙찰차액 자율조정 총사업비 변경(30,673 → 27,760백만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	18	40	68	6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건축설계비용 중 계약비용 지급 후 잔액 이월을 제외한 특이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A)	(B)	(C)	(A+B+C)	( )	( )	( )
'12년	18	-	-	18	13	5	-
	(A)	(B)	(C)	(A+B+C)	( )	( )	( )
'13년	40	5	-	45	45	-	-
	(A)	(B)	(C)	(A+B+C)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10. 국정감사 시 김종훈의원(한)과 조경태의원(민)이 CNG버스 용기 폭발원인규명을 위한 전문시험센터 구축할 것을 요구

* 당시 지경부장관이 화재·폭발 실증시험센터 구축 의사 피력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캐나다 Powertech Lab

- CNG 및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 시험기반 구축
- 시험 및 인증, 파괴해석, 설비 및 시스템 시험, 시뮬레이션 등 실시

○ 일본 자동차연구소

- 초고압 복합재료용기 연료공급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설비 구축하여 700bar이상 연소·폭발 실험 실시

○ 독일 BAM

- 독일연방 물질연구 및 실험기관으로서 재료, 화학, 안전, 기초소재 등에 대한 연구
- 가스폭발, 화재폭발 분야 선도 기술 개발, 국제인증 제·개정 및 성능인증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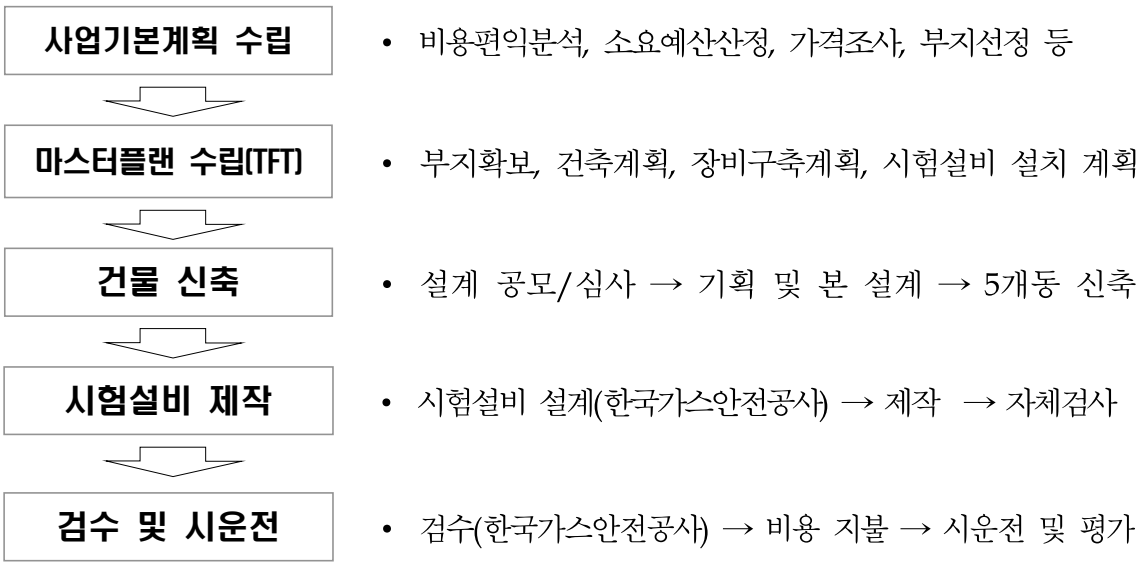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설명자료

참 고 가스 화재 · 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가스 화재·폭발** 사고의 **재현·실증**을 통한 **원인규명**을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내 최고, 세계 4위 수준의 **성능평가센터의 건립**

* 예시) 서울 행당동 CNG 시내버스 폭발사고('10.8월 중상6, 경상12)

○ 자동차용 내압용기(자동차), 고압가스 충전용기(충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LNG 인수기지) 등 고압 장치·부품 제조 시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 초고압 분야는 자동차관리법상 4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12종이 인증 대상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가스부품 시험·인증분야 기술무역장벽(TBT) 대응

* 세계 시험·인증 시장은 약 153조원('12년)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약 8.4조원('12)으로, 세계시장의 5.5%를 차지

나.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16(5개년)
총사업비	278억원('14년까지 126억)
사업규모	• 대지면적 : 66,684㎡, 건축연면적 : 4,236㎡ • 건축규모 - 연소가스 화재·폭발실증 실험동 1동 - 초고압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1동 - 초저온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1동 - 공용 및 시편 보관동 1동 • 구조 및 외장재료 : 철근 콘크리트(내진설계) 및 외장판넬

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개요

연료가스에 의한 화재·폭발 성능 평가와 초고압, 초저온 용기·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Test Bed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를 갖춘 연구시설

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	초고압 부품 성능평가	초저온 부품 성능평가	미래에너지 융·복합기술개발

◎ 핵심기능

◇ 초고압/ 초저온 및 대용량 가스 공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스 누출 화재·폭발 실증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가스안전관리 수준 향상

◇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초고압, 초저온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인증 수행으로 기업의 시험·인증 수요 충족

◇ 기반시설을 활용한 미래에너지 융·복합 연구 수행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국내 최고, 세계 4위 수준의 가스 화재 · 폭발성능평가 기반시설 구축

✓ 초고압 · 초저압 제품 성능평가기반 구축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보호 · 육성

✓ 국내 가스안전관리 수준의 획기적 향상이 가능한 실증연구 기반 구축

2. 세부내용

가. 추진경과

○ ‘11. 9 사업예산 확정 (22,164백만원, 2012～2015년(4년))
- 행당동 등 최근 10년간 10차례의 CNG버스 폭발사고 발생

○ ’12.12 부지매입

○ ‘13. 12 시공회사 선정(토목공사 진행 중)

○ ’16. 12 준공

나. 총사업비 관리

□ 조정경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최초 (2012.01)	계획	22,164							
1차 조정 (2013.10)	실시 설계	30,673	F-02 실시설계 반영	12,782	8,509				
2차 조정 (2014.03)	공사중	27,760	D-01 낙찰차액 감액	△2,913	△2,913				

□ 조정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총사업비 조정(1차)	낙찰차액 자율조정	비고
<총사업비>	22,164	30,673	27,760	
○ 공사비	20,153	26,814	25,006	
- 순공사비	20,153	26,814	24,080	
- 법정경비	-	-	926	
○ 보상비	1,121	1,124	1,124	
○시설부대경비	890	2,735	1,630	
- 설계비	710	666	666	
- 감리비	148	1,081	909	
- 시설부대비	32	62	55	
- 기타부대비	-	926	-	

다.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현행기준)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		
<총사업비>	27,760	1,831	1,787	4,000	4,000	6,832	6,832	6,080	9,061
1. 공사비	25,006	-	-	3,938	3,938	6,711	6,832	5,742	8,615
2. 보상비	1,124	1,121	1,121	-	-	3	3	-	-
3. 시설부대경비	1,630	710	666	62	62	118	118	338	446
○ 설계비	666	710	666			-	-	-	-
○ 감리비	909			52	52	96	96	325	436
○ 시설부대비	55			10	10	22	22	13	10
○ 기타부대비	-			-	-	-	-	-	-

[조감도]

가스안전관리융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가스안전관리 (융자)	19,800	20,900	20,900	-	-

* 사업코드 : 21 - 24 - 5 - 110 - 115 - 5500 - 5532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국(박일준), 에너지안전과(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이우일, 51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연평균 약 150개 가스취급 업소에 자금 융자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변동금리) * LPG사용시설 공급설비확충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가스유통구조 개선과 노후 가스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 10,880백만원('14년 동결)
- 충전시설 설치 및 개선 (3,430백만원)
- LPG저장탱크 구입 및 설치 (600백만원)
- 용기구입, 재검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 집단공급시설설치 및 개선 (300백만원)
- 판매사업자 공급설비 확충 및 유지·관리 (4,050백만원)
-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안전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충 (2,000백만원)

② LPG공급방식 개선사업 : 3,800백만원('14년 동결)
- 용기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 (2,250백만원)
- 소형저장탱크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용 (1,150백만원)
- 벌크로리 및 운반차량 (400백만원)

③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 : 5,500백만원('14년 동결)
- 노출장기사용배관 (2,300백만원)
- 전기방식시설 개선 (355백만원)
- 배관망도전산화 (700백만원)
- 위해시설 정압기 이설 (1,445백만원)
- 원격감시장치 등 개선 (300백만원)
- 기타안전성 향상, 안전검사 장비구입 (400백만원)

④ 검사기관시설 개선사업 : 720백만원('14년 동결)
- 안전검사시설, 장비 (7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 필요

- 안전관리투자의 비수익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는 여전히 안전관리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자금의 지원이 필요

○ 가스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 사고예방 중심의 선진국형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분야의 적극적 예산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가스안전관리융자	19,800	20,900	20,900	-	-
▪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10,500	10,880	10,880	-	-
▪ LPG공급방식개선사업	3,100	3,800	3,800	-	-
▪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	5,500	5,500	5,500	-	-
▪ 검사기관시설개선사업	700	720	720	-	-
□ 비목	19,800	20,900	20,900	-	-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19,800	20,900	20,9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가스안전관리 강화 및 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투자 비용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09	▪ 가스유통구조개선 10,880백만원 ▪ LPG공급방식개선 3,8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15	209	▪ 가스유통구조개선 10,880백만원 ▪ LPG공급방식개선 3,8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16	209	▪ 가스유통구조개선 10,880백만원 ▪ LPG공급방식개선 3,8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17	209	▪ 가스유통구조개선 10,880백만원 ▪ LPG공급방식개선 3,8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18	209	▪ 가스유통구조개선 10,880백만원 ▪ LPG공급방식개선 3,8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추진경위

- 1992 ~ 1996년 :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융자
- 1997 ~ 계속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가스안전관리(융자)	384	220	198	209	20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84	-	-	384	384	-	-
	( )	( )	( )	( )	( )	( )	( )
'12년	220	-	-	220	220	-	-
	( )	( )	( )	( )	( )	( )	( )
'13년	198	-	-	198	198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2년도 평가결과 67.5점(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융 자 에특회계 → 한국가스안전공사

↓

추 천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 → 자금수요자

↓

대 여 한국가스안전공사 → 대출취급기관(전국 16개 시중은행)

↓

대 출 대출취급기관 → 자금수요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유전개발사업출자(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유전개발사업출자	220,000	170,000	57,000	△113,000	△66.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300 - 5331 - 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이민철, 044-203-5140), 사무관(고세호, 51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5조 2,497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2. 사업목적

○ 석유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 및 생산광구 매입, 유망기업 인수를 지원

-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통하여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 경제 기반 구축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내역사업명

- UAE 10억배럴 사업 생산량 증산 투자

* UAE 10억배럴 생산사업의 증산(현재 1.5백만배럴/일 → '18년 1.8백만배럴/일)을 위해 사업초기 3년간 대규모 투자비 소요

② 산출근거

- 증산 관련 투자비 2,904억원 × 출자지원율 약 20% ≒ 57,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석유개발 규모뿐만 아니라 탐사기술, 운영역량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

○ 석유공사가 세계 70위권에 진입하였으나,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열위

* (중국) CNPC(세계 4위, 461만b/d), SINOPEC(세계 21위, 115만b/d), CNOOC(세계 33위, 93만b/d) (일본) INPEX(세계 64위, 45만b/d)

○ 기술력을 높이는 초기 단계이며, 50~100년 역사의 선진기업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기술력 부족

② 대규모 투자,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약화로 추가 투자 여력 축소

○ 정부 연계·지원에 기반한 석유공사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 등급(Moody's Aa3)이나, 공사 독자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Ba2) (Moody's 신용등급 체계상 Ba2는 Aa3과 8구간 차이)

○ 자본 확충 없이 추가로 차입시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우려

③ 추가출자를 통해 석유공사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원 지원 필요

○ 자원개발 기업의 자생력은 「탐사성공 → 수익증가·자산규모 확대 → 추가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가능

○ 최근 2~3년 내 추진된 M&A 등 기술력 강화의 성과는 추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투자가 진행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전망

○ 추가 출자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여 일정기간 이후에는 정부출자 없이 독자 성장하는 기업으로 성장토록 유도

④ 국익을 증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지원

○ **(UAE 사업)** 한-UAE 양국 정부간 에너지·산업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향후 안정적 석유공급에 크게 기여 예상

- 10억 배럴의 획기적 매장량 확보, 생산물량(약 8만배럴/일) 전부 국내 직접 도입가능 등 향후 40년간 안정적 원유 공급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을 통한 빠른 사업성과 거양 기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유전개발사업출자	220,000	170,000	57,000	△113,000	△66.5%
□ 비목					
▪ 일반출자금(460-01)	220,000	170,000	57,000	△113,000	△66.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공사의 유망 광구 매입과 탐사·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 출자 지원을 통해, 석유·가스 자원 확보량 증대 및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700	▪ 16,500억원 × 10.3%
'15	570	▪ 2,904억원 × 20%
'16	1,000	▪ 1.2조원 × 8.3%
'17	1,000	▪ 1.2조원 × 8.3%
'18	800	▪ 1.2조원 × 4.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투자계정의 세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5조 :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제2항 :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 제3조 : 사업의 범위 등
- 제3항 :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 추진경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석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00년부터 동해-1 가스전 개발사업에 출자를 시작하였고 '03년부터는 해외개발 및 생산(베트남 11-2 등) 광구에도 출자 시작

-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유전개발 지원을 위한 출자 등의 지원 확대

- 치열한 국제 자원확보 경쟁 하에서 안정적인 석유공급원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대형 석유기업, 특히 NOC(국영석유회사)의 대형화가 필수요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08.6월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한-UAE 양국간 정부 협력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대해 선별적 정부 예산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유전개발사업출자	7,100	6,903	2,200	1,700	57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7,100	-	-	7,100	7,100	-	-
	(7,100)	( )	( )	(7,100)	(7,100)	( )	( )
'12년	6,903	-	-	6,903	6,903	-	-
	(6,903)	( )	( )	(6,903)	(6,903)	( )	( )
'13년	2,200	-	-	2,200	2,200	-	-
	(2,200)	( )	( )	(2,200)	(2,2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 시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방안 강구 등(국정감사)
-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탐사성공률 제고를 통한 해외석유개발 투자회수율 증대 및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등(국정감사)
- '13년 예정처 지적사항 : 해외유전 자산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필요 (예결위·예산정책처)

○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12년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결과보고서(감사원)
  · 국내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자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업무 부당처리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기술평가 등 부적정 등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삼성물산, GS 등 민간사와 공동 참여하였으며 미국 Ankor사 지분 29%를 민간사 컨소시엄에 매각
-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탐사성공률제고방안 수립 시행 및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4개 비유망자산 선정, 매각 추진 등
- '12년 감사원 지적사항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국내 도입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캐나다 HOC 관련하여 해외석유투자기준 보완
  · SOC 사업에 한국업체 참여보장 노력 지속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 '13년 예결위·예정처 지적사항
  · 재무구조개선 TF 권고사항 준수,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 재무적 투자자 유치,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 개선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비산유국임에도 자국 석유가스 기업의 대형화에 성공한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경우, 대형화 토대 마련에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 프랑스 정부의 국내석유개발 보호육성으로 Total사는 자생력을 확보하여 일산 300만b/d의 슈퍼 메이저로 성장
- 스페인은 '86년 EU가입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석유회사를 확립하고자 Repsol을 육성
- 이탈리아는 국가 경제 재건에 있어 중요한 자원개발 사업의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ENI를 육성

○ 중국은 급증하는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해외 석유개발 투자 지속, 세계적 수준의 3개 대형 국영석유사(CNPC, CNOOC, Sinopec) 보유

<외국의 석유개발 기업 육성 성공 사례>

구분	추진배경	육성 방식	결과
프랑스	• 석유를 전략적 물자로 인식, 정부의 자주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 지속적인 M&A로 대형화 • 탄화수소 보조금 및 성공불 융자 지원 • 90개 은행과 기업들 지원	• 세계 9위 슈퍼메이저로 성장 • 자주개발률 93% 달성
스페인	• '86년 EU 가입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석유 기업 확보	• Repsol 출자 등 재정지원 • YFP(아르헨 석유기업) 인수시 정부 보증지원	• Repsol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 국가 자주개발률 62% 달성
이탈리아	• 전후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자원 확보	• 초기에 M&A통해 정부 지분 100%의 ENI 설립 • 탐사비용 40% 정부보조 • 단계적 민영화 추진	• ENI는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성장 • 자주개발률 50% 이상 달성
중 국	• 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 확보 시급성 대두	• 초기 국내 유전개발을 통해 안정적 수익 제공 • 규모경제 달성을 위한 구조조정 • 기업간 사업경계 명확화	• CNPC, CNOOC, Sinopec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액센추어(에너지 전문 글로벌 컨설팅사) 분석 자료

(5)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계획수립(석유공사)
② 출자금 배정요청(석유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③ 출자금 심사 및 배정요청(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④ 심사(기획재정부)
⑤ 출자금 계좌입금(기획재정부 ⇨ 석유공사)
⑥ 자금집행(석유공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2013년 신설된 수시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서, 광구/사업 낙찰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 기재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선정기준('13.8월)」에 따라, 기관 내부 사업추진 결정 이후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수시 예타" 형태로 진행

자원협력기반구축(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자원협력기반구축	572	700	665	△35	△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300 - 5333 - 303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이민철, 044-203-5140), 주무관(정석, 514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에너지·자원분야(석유·가스, 광물, 원자력 등) 세일즈 외교 지원을 통해 정상순방 등 고위급 인사의 자원부국 방문효과 극대화

-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분야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에너지·자원기업의 자원부국 진출 지원

  * 정상 자원외교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로 연결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 수용비 : 164.5백만원

- 자료인쇄비, 안내홍보물, 전산용품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4.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협력위 1회당 평균 4백만원 × 40회

○ 국외 여비 : 315백만원

- 자원협력위원회, 원전수출협력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31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협력위 1회당 평균 7.8백만원(3명 기준) × 40회

○ 사업추진비 : 185.5백만원

- 회의장임차료, 통역, 차량임차 등을 위한 사업비 185.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국내 협력위원회 10백만원 × 14회 + 해외 협력위원회 5백만원 × 10회

□ 지원 필요성

○ 에너지 수요 폭증, 자원부국들의 자원무기화 등으로 세계적 자원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자원외교를 대폭 강화 중

○ 정상 자원외교 성과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협력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자원외교 확대 추세에 따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와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을 위한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한국형 원전 홍보 및 원전 수출 추진국과의 정부간 협력 채널 구축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자원협력기반구축	572	700	665	△35	△5%
□ 비목					
▪ 일반수용비(210-01)	122	194	164.5	△29.5	△15.2%
▪ 국외여비(220-02)	341	315	315	-	
▪ 사업추진비(240-01)	109	191	185.5	△5.5	△2.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협력을 지속 추진

-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 중앙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상 순방 등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 및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UAE 원전수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유망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00	▪ 일반수용비 : 1.94억(5백만×40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91억(국내 10백×14회, 해외 5.1백×10회)
‘15	665	▪ 일반수용비 : 1.65억(5백만×35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85억(국내 10백×14회, 해외 5.1백×10회)
‘16	632	▪ 일반수용비 : 1.32억(5백만×30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85억(국내 10백×10회, 해외 5.1백×10회)
‘17	632	▪ 일반수용비 : 1.32억(5백만×30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85억(국내 10백×10회, 해외 5.1백×10회)
‘18	537	▪ 일반수용비 : 0.72억(5백만×20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5억(국내 10백×5회, 해외 5.1백×8회)

5. 고려사항

(1)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	730	0	140	730	730	0	0
’12	730	0	160	730	699	0	31
’13	730	0	140	730	572	0	158

- (전용)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개발 협력강화 및 원전 수출관련 고위급 회담, 실무급 협상 증가로 여비 증가(‘11, ‘12, 13년)

- (불용) 대선 정국 등으로 고위급 자원외교 및 실무급 사전 조사단 파견이 연기되어 국외여비 등의 일부 집행 잔액 발생(‘12년)

- (불용) 상반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자원협력위 등 고위급 자원외교 및 실무급 조사단 파견 지연, 하반기 인도네시아측의 가스개발·신재생 WG 일정 연기(‘14년 상)에 따른 국외여비 등 일부 집행 잔액 발생(‘13년)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중국은 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에 따라 공격적인 자원외교 활동을 통한 자원확보에 노력
- 일본은 석유·가스,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
-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투자위험이 큰 주변 개도국에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

해외자원개발(융자)(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해외자원개발융자	130,000	200,600	143,750	△56,850	△28.3%

* 사업코드 : 21-24-5-110-115-5300-5334-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이민철, 044-203-5140), 사무관(고세호, 51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2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4조 8,085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융자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석유, 가스,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내외 유전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3,750백만원 요구

-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 생산시험 등 국내대륙붕 석유부존여부 확인, 민간기업 등의 탐사사업비 지원

  * 해외유전개발 : 27개 사업 9,943억원 소요

  * 국내대륙붕 : 4개 사업 1,428억원 소요

- 민간기업과 연기금 등 금융 투자자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

○ 해외광물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0백만원 요구

- 우라늄, 철광석 등 해외광물 광구 신규지분 취득과 기존 광구의 탐사·개발 등 소요자금 지원

* 해외광물개발 : 12개 사업 3,215억원 소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해외자원개발융자	130,000	200,600	143,750	△56,850	△28.3%
▪ 국내외유전개발	100,000	170,600	113,750	△56,850	△28.3%
▪ 해외광물개발	30,000	30,000	30,000	-	-
□ 비목	130,000	200,600	143,750	△56,850	△28.3%
▪ 융자금	130,000	200,600	143,750	△56,8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융자 지속적인 지원필요

- 융자심의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민간 자원개발사업 선별 지원

- 자원개발 펀드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위험보증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006	▪ 국내외유전개발 (1,706) ▪ 해외광물개발 (300)
'15	1,438	▪ 국내외유전개발 (1,138) ▪ 해외광물개발 (300)
'16	1,000	▪ 국내외유전개발 (800) ▪ 해외광물개발 (200)
'17	1,000	▪ 국내외유전개발 (800) ▪ 해외광물개발 (200)
'18	1,000	▪ 국내외유전개발 (800) ▪ 해외광물개발 (2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융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 추진경위

- 제 1, 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개발사업 필요성 대두
- '82년 호주 마운트소리 유연탄광을 시작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
- '84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석유개발사업 융자 실시
- '95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석유・광물개발융자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해외자원개발융자	2,901	2,000	1,300	2,006	1,43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자원개발융자 심의제도 개선('08년 지경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 성공불융자의 저조한 회수율과 특정 대기업에 집중을 완화 등 제도개선('09년 지경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 성공불융자 대상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 및 협회의 업무 위탁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12년 지경부 국정감사 및 기재부 시정 요구사항)

- 성공불융자 심사 및 심의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결과 요구사항)

○ 감사원 지적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현행 수시접수·결정방식 개선 필요('07년 감사원 감사시)

○ 기타 언론 및 민원

-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방안 마련('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외자원개발융자 심의제도 개선

- 융자심의회 운영주체 및 대출심사업무 위탁기관 변경(융자대행기관→해외자원 개발협회), 위원 중 융자대행기관 소속 임원 제외, 기술성평가는 민간사업은 석유공사, 석유공사사업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08.9.11)

- 석유개발사업 단계별 평가기준 신설('09.7.1)

▸ 성공불융자의 저조한 회수율과 특정 대기업에 집중을 완화 등 제도개선

- 석유자원량을 사업단계, 시추에 의한 발견, 사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 정의하여 오·남용 방지,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 심의기준을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구분 평가, 융자심의회 운영기관 등이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신청기업에게 요청하는 근거 마련으로 융자심의 내실화 등 성공불융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융자심의 강화('09.12.28)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현행 수시접수·결정방식 개선 필요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업체에 대한 융자원리금 조기회수 외에 2년간 융자지원 대상 제외 제재조치 마련

- '08년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 융자시행계획 수립시 일괄접수하여 지원순위 결정

▸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성공불융자방식의 출자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출자를 위한 관련법령 근거 우선 마련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출자여부를 결정하고 출자사업을 관리(one project one company)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 필요

- 기존 융자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등 사전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의 관리감독체계 강화(지원계획 수립-지경부, 융자대상 평가·심의-융자심의회(해자협), 사후관리·정산-석유공사)

▸ 성공불융자 대상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 및 협회의 업무 위탁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특별부담금 요율(15% → 20%) 및 이자율(1%↑ : 국채수익률- 2.25% → 국채수익률-1.25%) 상향 조정 등 융자 제도개선, 융자심의회 운영 관련하여 협회에 위탁한 업무가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화 등(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24호, '12.12.28)

▸ 성공불 융자 심의 및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협회회원사 심사기관 참여배제, 융심위원 제척·기피·회피 자발적 통지 의무화, 융자심의 현장실사 확대(2회→4회 이상), 심의의결 기준강화(과반수→2/3이상 찬성), 위법부당 의결에 대한 산업무장관의 재심의 요구권 신설 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84호, '13.12.16 개정 및 협회운영규정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해외자원 융자지원 제도

- 해외석탄개발자금(NEDO)
  - 석탄개발전문업체(일본 국내탄광업체)에 무이자 융자
  - 석탄개발전문업체에 대한 출자
  - 채무보증(보증수수료 0.4%)

-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 기구(JOGMEC)
  - 금융기관의 일반광 개발업체 융자채무보증(보증수수료 0.4%)
  - 금융기관의 융자금리 1% 인하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자원개발기술개발(계속, R&D)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자원개발기술개발	29,961	28,215	28,062	△153	△0.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700 - 5702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장(이민철, 044-203-5140), 사무관(김종현, 514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5년도 281억원
지원조건	출연(Matching-Fund, 연구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총괄관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자원의 개발성공률 제고와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개발(25,162백만원)

- 국내기업이 해외 유가스 및 광물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현장연계 R&D 추진

② 미래선도형 기술개발(1,550백만원)

- 미래 유/가스 및 광물 자원개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개발 R&D 추진

③ 서비스 기술개발(500백만원)

- 국내 유/가스 및 광물자원 서비스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서비스 핵심기술 R&D 추진

④ 기획평가관리비(8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자원개발 분야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일정수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술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우리나라 자원개발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 이하 수준이며, 셰일가스 등 新석유가스 생산기술은 초기수준으로 기술격차 심각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과제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전통자원 및 비전통자원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 전통자원 감소에 따른 전통자원 탐사성공률과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기술과 셰일·치밀 가스 등 비전통자원 개발기술

○ 광물의 품위저하, 첨단산업 분야 희토류 수요급증 등에 대응하여 선광·제련기술 및 현장실증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 필요

- 첨단산업의 보호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희유금속, 전략광물 등에 대한 독창적인 고도선광 및 제련기술 확보 필요

○ 단기간 내에 독자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 사업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자원개발기술개발	29,961	28,215	28,062	△153	△0.5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개발	25,730	24,666	25,162	496	2.0
▪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1,958	1,350	1,550	200	14.8
▪ 서비스 기술개발	1,430	1,430	500	△930	△65.0
▪ 기획평가관리비	843	769	850	81	10.5
□ 비목					
▪ 출연금	29,961	28,215	28,062	△153	△0.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 및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등을 토대로 국가자원안보 달성, 새로운 자원환경에 대응하여 중장기 개발성공률 제고 및 자원개발사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추진

- 기업 중심의 대규모, 현장적용기술 연구를 위하여 현장연계형 R&D예산을 확대하고, 실증현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유도

○ (석유가스 분야) E&P사업의 수익성제고 및 상업화 가능 기술개발

- 장기적으로 E&P 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자산평가능력 증대 및 서비스영역에서 상업화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지향

- 제조업분야 기술을 비전통자원 개발 생산과 연관된 자재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및 석유가스 연관 산업 진입

- 북극권 등 미래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선제적인 R&D 추진

○ (일반광물 분야) 국내자원의 효율적 개발 유도 및 수입광물 대체

- R&D를 통한 원천소재의 국산화 및 신산업 창출
- 국내 중소·중견 광산기업에 대한 R&D지원
-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에너지광물자원 조사 및 탐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82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247억원) ▪ 미래선도기술(13억원) ▪ 서비스기술(14억원) ▪ 기획평가관리비(8억원)
'15	300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256억원) ▪ 미래선도기술(17억원) ▪ 서비스기술(19억원) ▪ 기획평가관리비(8억원)
'16	300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262억원) ▪ 미래선도기술(15억원) ▪ 서비스기술(1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8억원)
'17	300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272억원) ▪ 미래선도기술(10억원) ▪ 서비스기술(1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8억원)
'18	279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261억원) ▪ 미래선도기술(5억원) ▪ 서비스기술(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8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광업법 제86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광업법시행령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추진경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
- ‘02.12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
- ‘06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10개년)계획
- ‘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 ‘08.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9.11월 희유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10.10월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 확정
- ‘10.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0~‘19)
- ‘11.11월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 ‘11.11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11~‘2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자원개발기술개발	-	-	300	282	2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 )
’13년	300	-	-	300	300	-	-
	(300)	(-)	(-)	(300)	(3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희토류금속 등 자국 內 생산·비축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10.9월)
- 비전통 에너지자원 중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 생산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Shell, BP 등 메이저회사까지 투자 확대

○ EU

- Gas Shales in Europe(GAS) 연구단을 설립, 연구개발 강화('09년)
- EU집행위원회는 희유금속 관련 '원자재 계획'을 '08.11월에 발표
  * 원자재 교역 및 투자 촉진, 유럽지역 채광분야 개선, 대체 및 재활용 활성화

○ 일본

-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30년 석유자주개발률 40%, 석탄 60%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 수립('10.6월)
- 정책적 대응을 통해 희유금속 고갈과 수급 불안정에 대비

○ 중국

- '15년까지 셰일가스 매장량 평가 및 자국 內 셰일구조에 특화한 개발·생산기술 개발 및 주요 설비 개발 추진
- 주요 희유금속을 국가보호 광종으로 지정, 수출관세부과 및 수출제한 조치 등을 통해 자국 內 희유금속 보호정책 강화

(5) 사업추진절차

○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② 중장기과제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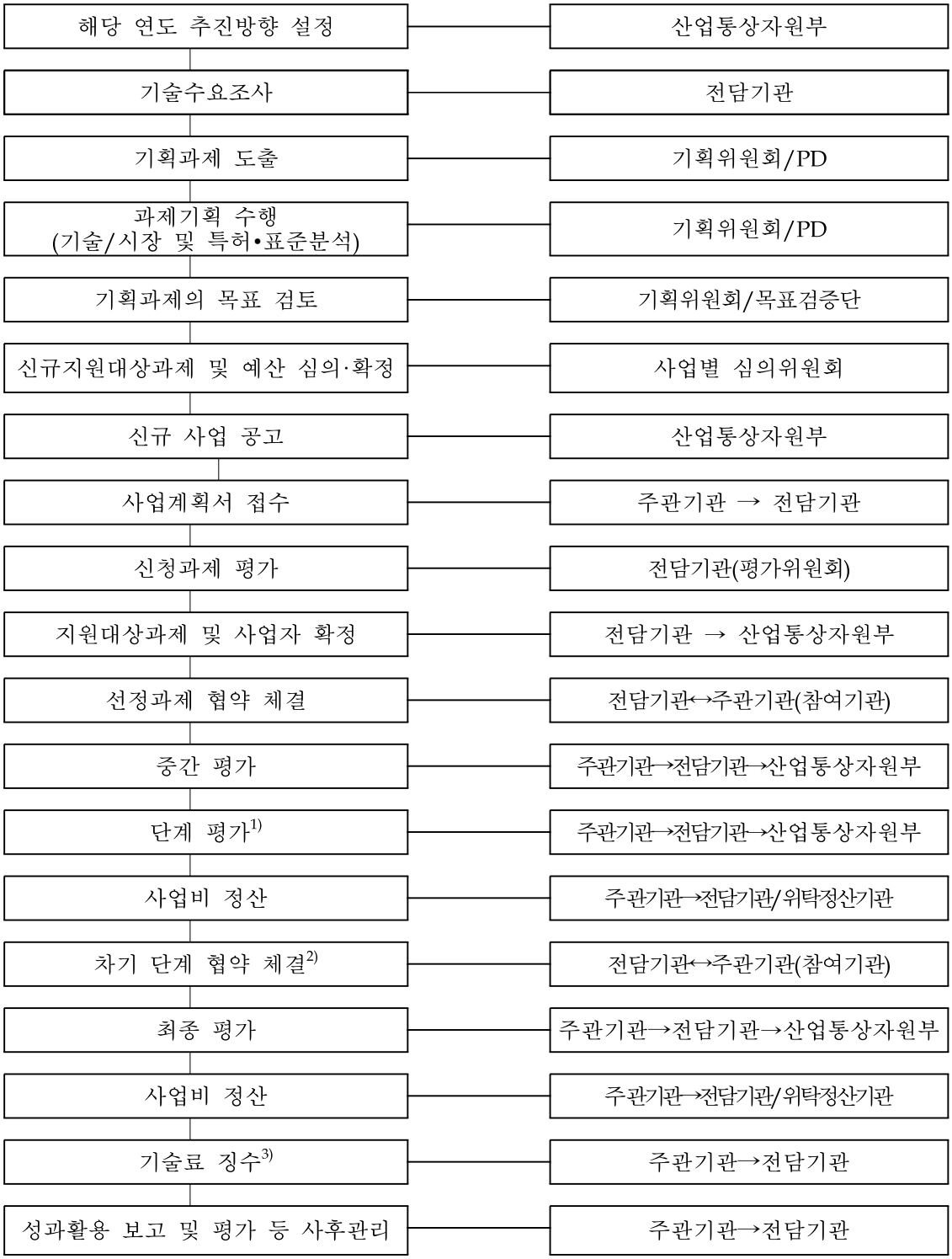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80,000	260,000	151,200	△108,800	△41.8

* 사업코드 : 21-24-04-110-115-5330-5335-301

* 담당자 : 에너지원정책국(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박훈, 044-203-5150), 사무관(박재탁, 515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7~계속
총사업비	법정자본금 2조원('14년까지 누적 납입액 17,853) * 기관출자 15,937억원(변동가능), 비축출자 1,916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산업 핵심원료인 6대 전략광물, 新전략광물* 등 주요광물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형태로 자원개발 투자재원 지원

○ 정부 출자금은 광물공사 자체수익, 자산매각, 회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된 재원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사용(출자금의 2~5배** 규모)

* 6대 전략광물 :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신전략광물 : 리튬·희토류

** 광물공사 투자/출자액 비율 : (10) 2.8 → (11) 4.3 → (12) 3.8 → (13) 4.3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예산내용 : ’15년 광물공사의 해외광물개발 기존사업 투자계획(3,962억원)의 38%에 해당하는 1,512억원 출자지원

- 최근 진행중인 旣투자 탐사·개발사업들이 점차 차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투자비 급증하고 있어 투자재원 확보 절실
-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계획을 시행 중이나, 출자지원 없이는 한계

○ 산출근거 :3,962억원*(’15년 해외광물개발 투자 총액) × 출자지원 38%

* 광물공사가 진행중인 6개 해외광물개발 사업의 설비, 인프라 구축비 등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260,000	151,200
▪ 해외자원개발투자계획	260,000	151,200
- 旣 투자사업	260,000 볼레오 동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	151,200 물라벤 유연탄 사업 등 6개 사업
- 신규 투자사업	-	-

□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광물소비국으로 원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

- 광물가격의 경우 ’03년 대비 지난 10년간 큰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광물의 수입 증가세 또한 석유·가스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

○ 국제적으로 금속자원 고갈 가속화 및 新 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따라 정부 주도의 광물 메이저 공기업 육성

- 아연, 니켈 등 주요 금속자원의 고갈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자원부국들은 자원개발을 대가로 자국의 산업화 기여 요구

▪ 브라질 Vale(세계 1위), 칠레 Codelco(세계12위) 등 이미 정부주도로 육성된 메이저 공기업뿐 아니라 중국도 21개 공기업을 육성 중

○ 최근 광물공사가 진행중인 旣투자 탐사·개발사업들이 점차 개발·생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투자비 증가 추세

▪ 공사는 최근 투자비를 상당부분 CP 등 외부조달로 충당하고 있어 이자비용 부담 가중

* 이자비용(억원, 추정) : ('10) 311 → ('11) 417 → ('12) 579 → ('13) 865 → ('14) 1,084

○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수입의존도 및 자원산업의 높은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원료광물 안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공사는 국내 유일의 광물자원개발 전문공기업으로서 해외직접투자 및 민간 역량확충 지원 등으로 자원개발 전문역량 및 노하우 기 확보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80,000	260,000	151,200	△108,800	△41.8
▪ 광물자원개발투자	180,000	260,000	151,200	△108,800	△41.8
□ 비목	180,000	260,000	151,200	△108,800	△41.8
▪ 출자금(460-01)	180,000	260,000	151,200	△108,800	△41.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 투자사업 내실화

▪ 탐사 및 생산사업 중심의 자원전문 기업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재편하여 수익창출 및 성장기반 강화

▪ 성과 부진사업 즉시 정비 및 高지분 우량사업의 지분 매각 추진

○ 小지분·분산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인 운영사업 확보

▪ 운영사업자로서 실질적 공급물량 확보 및 부가가치 재창출 체계 구축

▪ 볼레오사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기반으로 제2, 제3의 운영사업 추진

○ 인적역량 및 기술역량 강화 등 자원개발 핵심역량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600	▪ 해외자원개발투자 3,800억원 (출자금 2,600억원, 차입금 등 1,200억원)
‘15	1,512	▪ 해외자원개발투자 3,962억원 (출자금 1,512억원, 차입금 등 2,450억원)
‘16	1,200	▪ 해외자원개발투자 4,000억원 (출자금 1,200억원, 차입금 등 2,800억원)
‘17	1,200	▪ 해외자원개발투자 4,000억원 (출자금 1,200억원, 차입금 등 2,800억원)
‘18	1,200	▪ 해외자원개발투자 4,600억원 (출자금 1,200억원, 차입금 등 3,40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제10조(사업)

* 공사법 제4조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
* 공사법 제10조 : 광물자원 등의 탐사·개발과 이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제2항 제3호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추진경위

- ’67. 6. 광물공사창립 : 출자금 지원 개시
- ’97. 8. 광물공사법 개정 : 법정자본금 증액(1,500억원→3,000억원)
- ’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출자
- ’04. 12. 광물공사법 개정 : 법정자본금 증액(3,000억원→6,000억원)
- ’67. 6. 광물공사법 개정 : 명칭변경 및 기능변경(직접투자강화)
  법정자본금 증액6,000억원→20,000억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800	2,200	1,800	2,600	1,5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800			1,800	1,800		
	(1,800)	( )	( )	(1,800)	(1,800)	( )	( )
'12년	2,200			2,200	2,200		
	(2,200)	( )	( )	(2,200)	(2,200)	( )	( )
'13년	1,800			1,800	1,800		
	(1,800)	( )	( )	(1,800)	(1,8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57.0점, '14.5월)

○ '13년 예결위 예산 검토시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사업성과평가 후 사업확대 필요

▪ 조치결과

-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13.12월)

  * 기존 심의기구 기능강화 및 투자자문기구 신설

- '13년말 현재 광물공사는 36개 사업 중, 총 25개 사업이 국내 도입 가능하며, 향후 도입가능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국내 반입률 제고 지속

- 현재 광물자원의 경우, 확보물량의 국내 도입 확대로 실질적인 광물 가격 안정 도모 중

○ '14년 예결위 예산 검토시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재정여건과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 필요

▪ 조치결과

-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부실 사업 구조조정

  * '13년 3개 사업 종료, '14년 2개 사업 종료, 1개 사업 종료 추진 중

- 핵심기술 및 운영역량 확보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14.1월)
- 정부 가이드라인이상의 부채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 중
-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역량 강화 등 핵심역량 강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중국, 칠레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기업에 의한 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추세

* JOGMEG(일), BRGM(프), NFO(중) 등 과거 민간 지원위주에서 직접투자로 전환

○ 세계 100대 광업 메이저 중 18개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설립·성장

< 주요국 광물자원개발 메이저 비교 >

구 분	1위	…	12위	…	14위	…	77위
회사명	Vale(브)	…	Codelco(칠)	…	Chinalco(중)	…	KORES
총자산(백만불)	131,478	…	31,645	…	28,090	…	3,472
투자액(백만불)	17,729	…	3,687	…	6,577	…	749
인력(명)	85,305	…	18,247	…	97,990	…	470

① Vale(브라질) 자산 1,315억불 규모의 세계 1위 광업 메이저로 현재 브라질 정부가 12.2% 지분 보유

▪ 브라질 국영 철 공사(舊 CVRD)로 BHP, Rio-tinto와 함께 세계 철광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브라질 고속성장의 主 동력원

② Codelco(칠레) 자산 316억불 규모의 세계 12위 광업 메이저로 현재 칠레 정부가 100%의 지분 보유

▪ 동광 개발 전문 기업으로 칠레 경제의 주축인 동 광산의 탐사-개발-가공-제련-판매 등 전 분야 Value Chain 보유

② Chinalco(중국) 자산 280억불 규모의 세계 14위 광업 메이저로 현재 중국 정부가 100% 지분 보유

▪ 국영기업 중심 M&A, 생산광산 인수 등으로 세계 메이저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근 급성장한 광업메이저

(5) 사업추진절차

① 정부출자(산업통상자원부) ➛ ② 자금수령(광물공사) ➛ ③출자증권 발행 및 제출(공사➛기획재정부) ➛ ④ 광물공사 자금수지와 연계하여 해외 직접투자사업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일반광업육성지원(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일반광업육성지원	16,754	15,967	15,727	△240	△1.5

* 사업코드 : 21 - 24 - 04 - 110 -115 -5300 -5336 -301

* 담당자 : 에너지원정책국(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박훈, 044-203-5150), 사무관(최재영, 515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7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2,524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자본) 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국내부존 원료광물의 "광량확보"와 효율적 개발을 위한 "광업선진화"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광량확보 :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시추, GIS구축 예산 6,818백만원 요구

- 정밀조사 : 광량확보 목표 180억톤 달성을 위해 '14년과 동일한 1,730백만원
  · 사 업 량 : '14년 55광구 → '15년 55광구
  · 사업단가 : '14년 31,455천원/광구 → '15년 31,455천원/광구
- 탐광시추 : 광량확보 목표 180억톤 달성 및 예산효율성 증대를 위해 '14년 4,680백만원 대비 72백만원 감액한 4,608백만원 요구
  · 사 업 량 : '14년 55,000m → '15년 54,000m
  · 사업단가 : '14년 85.1천원/광구 → '15년 85.3천원/광구
- GIS 구축 : 탐사사업 성과물의 공간정보화 및 민간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추주상도 GIS DB 물량 감소로 '14년 800백만원 대비 320백만원 감액한 480백만원 요구
  · 사 업 량 : '14년 500㎞ → '15년 300㎞
  · 사업단가 : '14년 1,600천원/㎞ → '15년 1,600천원/㎞

② 광업선진화 :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광업생산성 목표 달성과 원료소재의 산업화, 친환경개발을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예산 5,809백만원 요구
- 현대화장비 : 친환경 광산개발 및 광물자원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갱내광산 개발장비 지원을 위해 '14년 3,353백만원 대비 209백만원 감액한 3,144백만원 요구
  · 사 업 량 : '14년 6.8SET → '15년 6.3SET
  · 사업단가 : '14년 493,200천원/SET → '15년 499,000천원/SET
- 설비갱내전환(부가가치설비) : 자원산업의 친환경 지속개발 및 광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해 '14년 1,750백만원에서 115백만원 증액한 1,865백만원 요구
  · 사 업 량 : '14년 14점 → '15년 15점
  · 사업단가 : '14년 125백만원/점 → '15년 124백만원/점
- 갱도현대화굴진 : 광업선진화 목표를 위한 국내 금속광 굴진 지원을 위해 '14년과 동일한 물량에 근거한 동일 금액(800백만원) 요구
  · 사 업 량 : '14년 3,000m → '15년 3,000m
  · 사업단가 : '14년 266.5천원/m → '15년 266.5천원/m

③ 국가암추센터 구축 : 광물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탐광시추로 발생되는 암추 및 광물자원 탐사자료 보관, 관리를 위한 국가암추센터 구축비 지원예산 3,000백만원 요구

・산출내역 :

① 공사비(리모델링+신축) : 2,654백만원

② 감리비 : 62백만원

③ 내부설비비(이동식랙) : 284백만원

④ 광업분쟁해소사업 : 광업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광업분쟁 사례분석을 위해 '14년과 동일 금액(100백만원) 요구

・사 업 량 : '14년 광업분쟁 20건 → '15년 광업분쟁 20건, 사례분석 2회

・사업단가 : '14년 5백만원/건 → '15년 4백만원/건, 10백만원/회

□ 지원 필요성

○ 광량확보

- 정밀조사, 시추, GIS구축 등의 탐사지원을 패키지화로 집중 지원하여 광량확보 목표(180억톤) '18년 달성
  - ・ 개발유망광구의 신규매장량 확보, 부존광물의 품위별, 용도별 분포상태를 파악, 민간투자자에 제공하여 광산개발로 연계 추진
  - ・ 축적된 전국토대상 탐사자료의 공간정보화 조기구축으로 부존자원의 입체적관리, 광물자원지리정보망(www.kmrgis.net)을 통한 민간업체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 ・ 광산개발 리스크로 인해 민간 초기 투자 기피로 국가자원 확보 측면에서 정부지원 필요

○ 광업선진화

- 광업은 생산유발(계수 : 광업 2.076, 산업 1.986)과 부가가치유발(계수 : 광업 0.9, 산업 0.86) 효과가 높아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 원료광물의 효율적 개발과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대화 장비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설비갱내전환, 갱도굴진, 광업분쟁해소 등 개발에서 제련(가공)까지 패키지화 집중 지원으로 광업선진화 목표 달성(2018년 생산성목표 43톤/인)
  · 현대화 장비지원으로 친환경 갱내개발 생산량을 확대하여 환경훼손 최소화와 산업원료광물의 공급목적 달성
  · 산업클러스터 구축, 원료소재산업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연계산업의 공동 활성화와 광업의 자립형 산업화 지원 필요
  · 녹색광산개발을 위한 갱외시설의 갱내설치 전환 집중지원
  · 시추 등으로 확인된 광체의 정확한 광체 규모 및 품위 파악하고 신규광량 확보

○ 국가암추센터
- 산재된 양질의 광물자원 탐사자료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향후 발생되는 신규물량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관 전문 공기업에서 암추 및 광물 표본시료 관리 운영이 필요

* 현재까지 국내 광물 시추('67～'11)로 시추된 암추 3,547km(약 1천억원)와 석유시추('79～'11)로 시공된 68공(3조 4천억원 추산)의 암추가 대부분 사장

- 자원시장변화와 기술발달에 따른 자원 재평가를 통해 신규 광산 개발과 재개발 등 국내 광업 활성화 도모

* 최근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광산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 간의 암추시료 폐기로 재시공을 위한 자본 투입 불가피

☞ 광산 신규 또는 재개발시 수억~수백억의 시추탐사 비용 발생

- 산림훼손 방지, 암추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사전차단, 지질자료 재활용을 통한 탐사비용 절감, 자원개발 인력양성 기여 등

* (호주)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정부 주도 하에 최소 18개의 암추센터 운영 중

* (캐나다) 주정부 산하 최소 17개소 이상의 암추센터 운영 중

○ 광업분쟁해소사업

- 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관계 증대로 광업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문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점 확인을 통한 공익과 개발 이익간 균형점 모색,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 도움으로 대국민의 신뢰도 증가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조정위원회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 수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일반광업육성지원	16,754	15,967	15,727	△240	△1.5
▪ 광량확보	7,210	7,210	6,818	△392	△5.4
- 정밀조사	1,730	1,730	1,730	-	-
- 탐광시추	4,680	4,680	4,608	△72	△1.5
- GIS 구축	800	800	480	△320	△40.0
▪ 광업선진화	6,144	6,143	5,809	△334	△5.4
- 현대화개발	5,014	5,103	5,009	△94	△1.8
- 갱도현대화굴진	800	800	800	-	-
- 광업전문인력양성	240	240	-	△240	△100.0
▪ 광업분쟁해소사업	-	100	100	-	-
▪ 국가암추센터 구축	400	2,514	3,000	486	19.3
▪ 가은석탄박물관	3,000	-	-	-	
□ 비목	16,754	15,967	15,727	△240	△1.5
▪ 민간경상보조	8,250	8,350	7,718	△632	△7.6
▪ 민간자본보조	5,504	7,617	8,009	392	5.1
▪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 추진방안

- 민관(民官) 역할 분담
  · (정부) 인프라 및 생산환경 지원, (민간) 생산투자 활동 및 인프라 구축
- 탐사, 개발, 안전, 제련(가공)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연계
  · 광량 확보(180억톤) 및 현대화 목표(갱내생산 2,200만톤) 달성(2018년)
  · 장기 가행광산을 선정(2년 주기)하여 중·대형광산 육성 및 원료소재 10종 산업화 유도
- 채광, 파·분쇄, 운반, 선광(제련)시설의 갱내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 광산 및 연계산업의 공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지원
- 탐사자료 GIS DB구축으로 민간업체 공유
-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암추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최적의 시설 구축
-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탐사자료 보관/관리시스템 정착으로 국가 지하지질 정보 구축

○ 기대효과

- 광산의 중·대형화를 통한 수직계열화 및 관련산업 선진화
  · 원료광물 180억톤 확보 및 주요 광종 갱내채광으로 80% 공급(2018년)
  · 금속광산 22개 재개발과 연계하여 내수액 1%를 4%까지 공급(2020년)
-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산림훼손 방지 : 2,500억원/년)
  · 비금속 원료소재의 수입대체 및 시장창출 효과 : 15,750억원
- 환경문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점 확인을 통해 공익과 개발 이익간 균형점 모색
- '20년까지 278km의 암추, 1,000여개의 산업광물 표준시료, 500여개의 암석 표본 보관을 통한 기반구축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59.6	▪ 광량확보 : 72.1 ▪ 광업선진화 : 61.4 ▪ 국가암추센터 : 25.1 ▪ 광업분쟁해소사업 : 1
'15	157.3	▪ 광량확보 : 68.2 ▪ 광업선진화 : 58.1 ▪ 국가암추센터 : 30 ▪ 광업분쟁해소사업 : 1
'16	149.4	▪ 광량확보 : 64.8 ▪ 광업선진화 : 55.2 ▪ 국가암추센터 : 28.5 ▪ 광업분쟁해소사업 : 0.95
'17	149.4	▪ 광량확보 : 64.8 ▪ 광업선진화 : 55.2 ▪ 국가암추센터 : 28.5 ▪ 광업분쟁해소사업 : 0.95
'18	127.0	▪ 광량확보 : 55.1 ▪ 광업선진화 : 46.7 ▪ 국가암추센터 : 24.2 ▪ 광업분쟁해소사업 : 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광업법 제86조(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방지 사업의 지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 추진경위

- 정밀조사 : '00년부터 일반광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
- 탐광시추 : '67년부터 민영광산의 개발촉진을 위해 사업시행
- GIS구축 : '10년부터 탐사자료의 DB 구축 사업시행
- 현대화개발 : '91년부터 국내광업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향상을 위해 사업시행
- 갱도현대화굴진 : '67년부터 친환경 광산개발 유도 및 매장량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 국가암추센터 : '13년부터 산재된 양질의 광물자원 탐사자료(암추)의 사장화 방지 및 지질정보 구축·제공을 위해 사업시행
- 광업분쟁해소사업 : '14년부터 광업권자와 민원인과의 광업관련 분쟁 증가로 이에 따른 환경 및 주민생활 관련 문제점 확인을 통한 공익과 개발 이익간 균형점 모색하기 위해 사업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일반광업육성지원	110.0	133.5	167.5	159.6	157.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10	-	-	110	110	-	-
	(110)	(-)	(-)	(110)	(110)	(-)	(-)
'12년	133.5	-	-	133.5	133.5	-	-
	(133.5)	(-)	(-)	(133.5)	(133.5)	(-)	(-)
'13년	167.5	-	-	167.5	167.5	-	-
	(167.5)	(-)	(-)	(167.5)	(167.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별첨참고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사업추진 근거법령**

□ 광업법

제86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자원의 조사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참고2 **정밀조사**

□ 사업 개요

○ 국내 전 국토 부존자원 현황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산업원료 광물의 장기 안정적 공급, 국내광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자원 개발을 유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탐사를 실시, 용도별·품위별 매장량을 산출하여 광산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80%)

□ 사업지원절차

선정기준 심의 (국고보조선정위원회) → 사업공고·설명회 (광물공사) → 지원신청 (광업권자·조광권자)

신청서 검토 (광물공사) → 대상지 선정 (국고보조선정위원회) → 연간시행 계획수립 (광물공사)

시행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 조사용역업체 선정 (광물공사 입찰) → 조사시행 및 보고 (용역업체)

보고서 심의 (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결과보고 (광물공사) → 보고서 발간 (광물공사)

보고서 수정·보완 (용역업체, 광물공사)

□ 지원실적 및 계획

구분	지원실적								지원계획	
	'0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2015	'16~'17
광구수(광구)	395	35	50	50	55	55	55	695	55	110
금액(백만원)	8,802	870	1,530	1,530	1,730	1,730	1730	17,922	1,730	3,574

□ 사업추진계획

○ 정밀조사 : '00년~'18년까지 총 915광구를 조사할 계획

구 분	'00~'12	'13	'14	'15	'16	'17	'18	합계
광구	585	55	55	55	55	55	55	915
예산(백만원)	14,462	1,730	1,730	1,730	1,768	1,768	1,768	24,956

○ 재개발조사 : 50개 유망광산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합계
예비조사	-	3	3	4	4	5	5	4	5	4	14	50
재개발조사 (신규)	2	2 (2)	4 (2)	5 (1)	5 (2)	5 (1)	6 (2)	6 (2)	5 (1)	5 (2)	5 (3)	50 (20)

참고3 **탐광시추**

□ 사업 개요

○ 지질광상조사 결과 확인된 광물자원의 부존예상지점에 대한 시추를 통해 자원의 지하발달상태(맥폭, 품위)를 정확히 파악

○ 국가 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계획생산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광체의 심부 또는 주변부에서 지속적인 시추탐사 필요(시추확보광량 증가를 통한 연간 생산물량 조달)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 민간시추업체(보조율 70%)

□ 사업지원절차

선정기준 심의 (국고보조선정위원회) → 사업공고 (광물공사) → 지원신청 (광업권자·조광권자)

신청서 검토 (광물공사) → 지원대상 선정 (국고보조선정위원회) → 계획수립 및 보조금신청 (광물공사)

교부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 (광업권자·조광권자) → 사업관리 감독 (산업통상자원부, 광물공사)

종합결과보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광물공사)

□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지원실적						지원계획	
	'67~'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2015	2016 ~ 2017
사업량(m)	2,284,805	52,092	56,782	55,000	60,216	2,508,895	5,4000	111,000
금액(백만원)	90,584	4,000	4,680	4,680	4,680	108,624	4,608	9,741

□ 사업추진계획

(단위 : m,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 청 량(A)	102,500	110,000	117,215	156,480	139,445	172,060	129,615
지 원 량(B)	46,219	44,587	35,098	52,666	52,092	56,782	57,455
지원율(B/A(%))	45.1%	40.5%	29.9%	33.6%	37.4%	33.0%	44.3%

참고4 **GIS 구축**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어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하여 입력·저장·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과정

□ 사업 개요

○ 광물공사가 수행중인 시추 및 정밀조사의 성과물에 GIS 최신기술을 적용시켜 민간업체의 자원개발 및 관련분야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시스템 구축

○ 시추지질자료는 광물자원개발은 물론 삼차원 지하공간정보로서 국가 SOC사업의 계획수립,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100%)

□ 사업지원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광물공사) → 사업 입찰공고 (광물공사) → 수행업체 선정 (DB구축 용역업체)

사업수행 (DB구축 용역업체) → 사업관리 감독 (산업통상자원부, 광물공사)

□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지원실적					
	'10	'11	'12	'13	'14	소계
구축량(km)	300	316	505	506	500	2,127
금 액	420	420	800	800	800	3,240

※ 중기소요재정 및 시추사업계획에 의거, 계획 수립됨.

□ 사업추진계획

2014 예산	2015 예산
○ GIS구축(500km)	○ GIS구축(300km)
800백만원	480백만원

참고5 **현대화개발**

□ 사업 개요

○ 갱외 채굴광산의 갱내 현대화채굴 방식으로 전환, 파·분쇄, 운반, 선광(제련)시설의 갱내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광산 및 연계산업의 공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국내광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40~60%이내)

□ 사업지원절차

선정기준 심의 (국고보조선정위원회) → 사업공고 (광물공사) → 연간시행 계획수립 (광물공사)

지원신청 (광업권자·조광권자) → 신청서 검토 (광물공사) → 지원대상 검토 (광물공사)

대상 선정 심의·의결 (국고보조선정위원회) → 교부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 (광업권자·조광권자)

사업관리 감독 (산업통상자원부, 광물공사)

□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1~'06	'07	'08	'09	'10	'11	'12	'13
현대화개발 광산수	42	44	45	47	50	52	51	51
투자비(억원)	522	88	99	91	122	118	144	152
생산액(10억원)	1,322	144	228	266	333	386	411	483
생산량(천톤)	97,991	14,704	15,566	14,660	17,502	20,703	20,842	22,121

□ 사업추진계획

구 분	주요장비	'91~'13 지원수량(대)	'14예산 보조액(백만원)
현대화장비	점보드릴, 화약장전기 등	383	3,354
산업클러스터	광학선별기, 자력선별기 등	33	-
설비갱내전환	파·분쇄설비 등	9	1,750
계	**-**	**425**	**5,104**

참고6 **갱도현대화굴진**

□ 사업개요

○ 지질조사 및 시추에 의해 확인된 광체의 정확한 광체 규모 및 품위를 파악하고, 신규광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갱도굴진 시공비를 지원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50% 이내)

□ 사업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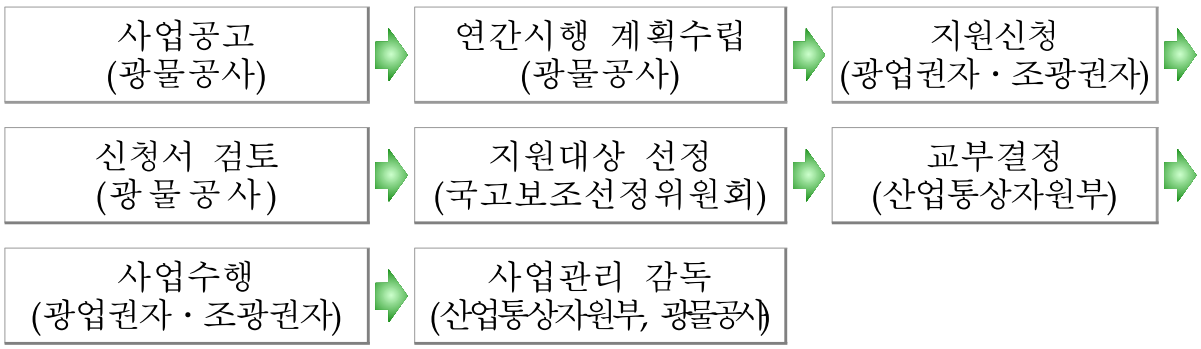

□ 지원실적 및 계획

구분	'67~'09	'10	'11	'12	'13	'14	'15~'17
수 량(M)	916,489	2,135	2,110	3,060	3,200	3,000	9,000
금액(백만원)	49,102	500	500	800	800	800	2,454

□ 굴진 지원량 변화추이

(단위 : 천m,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신 청 량(A)	31.6	20.6	10.6	8.0	12.4	7.7	
지 원 량(B)	10.3	8.6	2.1	2.1	3.1	3.2	
지원율(B/A (%))	32.6	41.7	19.8	26.3	25.0	41.6	

참고7 **국가암추센터**

□ 추진배경

○ 암추 보관공간 부족으로 중요한 지하자원 정보인 암추자료 사장화 우려

* 약 40억원/년 규모의 암추발생, 국내 영세광산 보관·관리 애로

○ 세계 자원시장 환경변화로 탐사 자료의 재평가 기반 마련 시급

* 저품위 광물자원 개발 증가 → 기존 암추자료 분석을 통해 재개발 가능성 검토

□ 사업개요

○ 목　　적 : 암추 등의 지질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학·연에 국가 지질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01.1억원 ('13~'16년)

○ 대상부지 : 한국폴리텍대학 정선캠퍼스('09.2월 폐교, 북평면)

* 정선군과 본교 부지(17,900평), 건물(2,350평) 무상임대 협의 완료('13.4)

○ 주요내용 : 리모델링 연면적(4,957m^2), 신축건물(2,945m^2), 기타(276m^2)을 구축하여 '20년까지 암추 338km 보관 및 정보제공

□ 기대효과

○ (기반구축) '20년까지 338km의 암추, 970여개의 산업광물 표준시료, 500여개의 암석표본 보관 가능

* 호주 등 광업선진국은 '60년대부터 국가암추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운영 중, 러시아·몽골·베트남 등도 중앙정부가 직간접 보관·운영 중

○ (비용절감)

① 광산 재개발시 '국가암추센터' 활용을 통해 탐사비용 절감

* '11년 20개 신규광산 개발 : 과거의 암추시료를 보관하였다면 수천억원의 비용(예산) 절감 가능

② 지자체의 유휴시설 활용성을 제고하고, 센터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신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산안전시설(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광산안전시설	3,487	3,487	3,388	△99	△2.8

* 사업코드 : 21-24-4-110-115-5300-5336-302

* 담당자 : 에너지원정책국(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박훈, 044-203-5150), 주무관(이욱종, 51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2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1,084억원)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비의 60~70%(광업권자) 광산안전사업비, 구호·검사·교육장비 구입비 100%(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운공사

2. 사업목적

○ 심부작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시설의 선진화와 확충을 위한 광산안전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과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해 광산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

- 고빈도재해 및 대형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유도
- 광산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광산안전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재해 예방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대형 및 고빈도 재해예방을 위한 광산안전시설 구입비와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광산안전사업비 3,388백만원

○ 산출근거

- 작업환경개선시설 : 통기수갱 등 688점 1,224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숏크리트 시공 등 8,551점 1,189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안전관리시스템 등 16점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장비 : 가스검정기 등 30점 60백만원
- 기타시설 : 다단펌프 등 40점 393백만원
- 광산안전교육훈련 : 광산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훈련 등 350백만원

계 9,325점 3,38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노천 광산개발에서 갱내채굴로 전환되는 광산이 늘어나고 작업장이 심부화됨에 따라 작업환경 악화 및 낙반붕락 등 재해발생요인이 급증

○ 대부분의 광산은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안전시설 투자에는 미온적이며, 타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광산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 필요

○ 갱내작업장의 심부화로 광산재해 발생요소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안전관리 취약 작업장의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고빈도 재해 예방시설인 낙반방지시설의 중점지원으로 백만인당 재해율 감소 목표 달성(‘12년 31.4명 → ’15년 24.4명)

○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발생을 낮춰 취업기피로 인한 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광산의 안정적인 개발 및 광산지역 발전 유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광산안전시설	3,487	3,487	3,388	△99	△2.8
▪ 작업환경개선시설	1,082	1,082	1,224	142	13.1
▪ 낙반방지시설	1,189	1,189	1,189	-	-
▪ 중앙집중감시시설	172	172	172	-	-
▪ 광산안전보안장비	360	360	60	△300	△83.3
▪ 기타시설	684	684	393	△291	△42.5
▪ 광산안전교육훈련	-	-	350	350	
□ 비목	3,487	3,487	3,388	△99	△2.8
▪ 민간경상보조(320-07)	-	-	350	350	
▪ 민간자본보조(320-07)	3,487	3,487	3,038	△449	△12.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빈도·대형재해 예방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중점지원으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 재해예방을 위한 첨단 안전장비의 적극적인 투자유도로 안전관리 선진화

○ 지원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장비교육·훈련 강화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저변확대로 지원 효과 제고

○ 백만인당 재해율 매년 5%씩 감소 목표('12년 31.4명→'17년 22.0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5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기타시설 : 684백만원
'15	34	▪작업환경개선시설 : 1,224백만원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광산안전보안 등 : 60백만원 ▪기타시설 : 393백만원 ▪광산안전교육훈련 : 350백만원
'16	35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기타시설 : 684백만원
'17	35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기타시설 : 684백만원
'18	35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기타시설 : 684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7조(사업비의 용도)① 제 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추진경위

- 광산개발 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1982년부터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광산안전시설	35	33	35	35	3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5				35		
	(35)	( )	( )	( )	(35)	( )	( )
'12년	33				33		
	(33)	( )	( )	( )	(33)	( )	( )
'13년	35				35		
	(35)	( )	( )	( )	(3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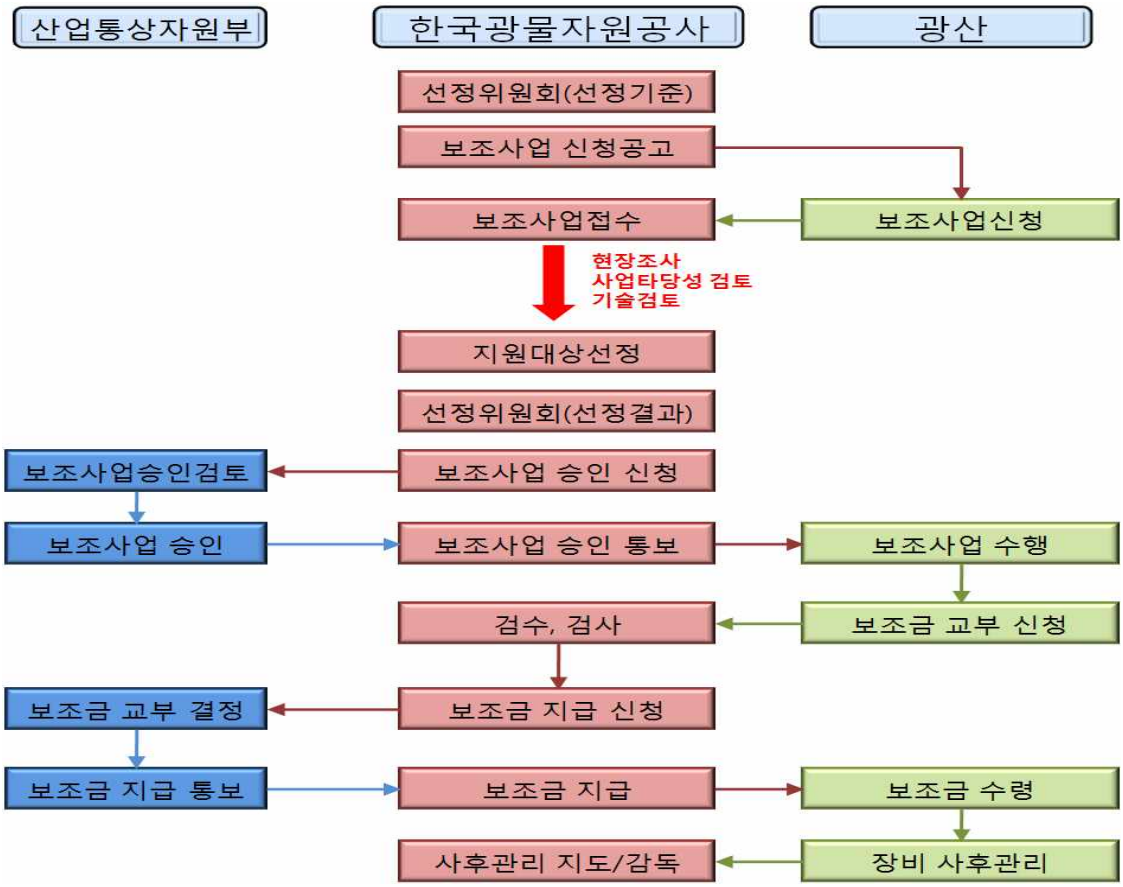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 광산안전사업 추진실적

참고 광산안전사업 추진실적(1982 ~ 2013)

(백만원)

연도	석탄광		일반광		한기연	광물공사	계	
	광산수	보조액	광산수	보조액	보조액	보조액	광산수	보조액
’82	45	2,323				33	46	2,356
’83	46	1,564				60	47	1,624
’84	41	1,950				42	42	1,992
’85	75	2,364			432	60	77	2,856
’86	93	2,148			390	63	95	2,601
’87	89	2,505	15	365	207	70	106	3,147
’88	88	2,660	8	97	495	108	98	3,360
’89	42	3,443	12	1,010	227	135	56	4,815
’90	32	3,216	15	1,059		252	48	4,527
’91	24	3,015	19	1,104		224	44	4,343
’92	14	3,089	27	1,476		57	42	4,622
’93	11	2,141	3	687		206	15	3,034
’94	10	1,443	4	1,337		124	15	2,904
’95	10	1,973	7	894		182	18	3,049
’96	11	1,226	9	1,381		117	21	2,724
’97	10	2,126	5	606		128	16	2,860
’98	11	1,848	8	1,114		41	20	3,003
’99	11	1,804	11	1,079		74	23	2,957
2000	10	2,235	9	604		118	20	2,957
2001	9	2,362	11	478		117	21	2,957
2002	9	1,614	14	989		354	24	2,957
2003	9	1,920	20	834		842	30	3,596
2004	8	1,762	18	1,679		359	27	3,800
2005	7	2,150	24	1,148		502	32	3,800
2006	6	1,591	27	1,859		350	34	3,800
2007	7	1,698	25	1,004		794	33	3,496
2008	6	1,203	19	1,740		553	26	3,496
2009	5	1197	23	1,942		357	29	3,496
2010	5	1105	24	1,918		473	30	3,496
2011	5	799	23	2,322		375	29	3,496
2012	5	459	26	2,524		338	32	3,321
2013	4	1,406	28	1,781		300	33	3,487
계	**758**	**62,339**	**434**	**33,031**	**1,751**	**7,808**	**1,229**	**104,929**

※ 한기연 : 한국기계연구소

광산물비축사업출자(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45,000	40,000	38,000	△2,000	△5.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300 - 5341 - 301

* 담당자 : 에너지원정책국(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박훈, 044-203-5150), 주무관(우동규, 51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1,916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녹색성장 관련 국가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녹색성장 및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원료광물인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하여 광산물의 자주적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전략 비축사업으로 국가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광산물비축사업출자

- 비축광산물 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38,000백만원 요구(목표량 16,537톤기준)
- 잔여비축물량이 많은 광종을 집중구매하여 '18년까지 비축목표 달성
  - ▪ 최근 3년간 광물가격 하락안정세로 구매예상단가가 하락한 상황을 활용하여 몰리브덴, 크롬 등 잔여 비축목표량이 많은 광종위주로 집중구매

* '15년 총 구매량 16,537톤 (크롬)15,737톤, (몰리브덴)600톤, (안티모니)100톤, (지르코늄)100톤

□ 지원 필요성

○ 희유금속 광물자원의 안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출자지원 필요
- 광산물비축사업 출자금은 크롬 등 10광종의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6년까지 비축목표(79.3천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매 소요재원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45,000	40,000	38,000	△2,000	△5.0
▪ 비축광산물 구입 (산출근거)	45,000 (9,824톤×4.58백만)	40,000 (7,922×5.05백만)	38,000 (16,537×2.3백만)	△2,000	△5.0
□ 비목	45,000	40,000	38,000	△2,000	△5.0
▪ 출자금(460-1)	45,000	40,000	38,000	△2,000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및 자원정책에 반영
- 정부는 광산물 비축사업을 승인('05.4), 비축규모는 정부비축기능조정회의에서 확정('07.2)

○ 광산물 공급위기에 대비한 광산물 비축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 '18년까지 10개 희유금속 79.3천톤 비축에 3,311억원 투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00.0	▪ 7,922톤×5.049천원×100%
'15	380.0	▪ 16,537톤×2,298천원×100%
'16	361.0	▪ 5,624톤×6,419천원×100%
'17	361.0	▪ 5,530톤×6,528천원×100%
'18	306.8	▪ 3,276톤×9,365천원×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1항 3호(광산물의 비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추진경위

- '04.12 공사법 개정을 통해 광산물비축사업 법정 사업화
- '05.04 산업자원부 장관 광산물비축사업 승인
- '06.09 정부비축업무 조정회의 및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 '07.02 조달청과 비축품목 조정, 비축기지 제공 합의
- '07.12 크롬 등 4광종 3,346톤 비축
- '13.12 티타늄 등 9광종 40,411톤(누계) 비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광산물비축사업출자	300	400	450	400	38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00	-	-	300	300	-	-
	(300)	(-)	(-)	(300)	(300)	(-)	(-)
'12년	400	-	-	400	400	-	-
	(400)	(-)	(-)	(400)	(400)	(-)	(-)
'13년	450	-	-	450	450	-	-
	(450)	(-)	(-)	(450)	(45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67.0점('14.5)

구 분	평가점수	등급	보완사항
'13	67.0점	보통	광산물 관련 비용 효율적 운용 등

○ '11년 국정감사('11.10)

- 지적내용 :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의원 : 권성동, 김성회, 박진, 이화수, 김낙성 의원 등
- 주요 지적사항
  - 희토류 등 희유금속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조치결과
  - '12년 예산 400억원 반영 및 향후 예산 확보 추진하여 희유금속 9개 광종 78.4천톤(60일분) 비축을 추진 중
  - 특히, 희토류는 '14년까지 국내 수요량의 100일분 조기 비축

○ '12년 국정감사('12.10)

- 지적내용 : 공급위기에 대비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 및 비축방안 강구, 조달청과 비축품목 조정 관련 업무협의
- 지적의원 : 이채익, 홍일표, 전정희 의원 등
- 주요 지적사항
  - 공급위기를 대비한 비축노력 필요
  - 전문적·경제적 비축관련, 광물공사와 조달청간의 비축품목 조정 업무협의 필요
- 조치결과
  - '13년 예산 450억원 반영 및 향후 예산 확보 추진
  - 지속적인 수요증가 및 가격상승 등에 대비한 희유금속 비축확대 (78,400톤 → 79,300톤)
  - 비축광종 조정은 기재부(조달청)와 산업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광종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 추진

○ ‘13년 국정감사(‘13.10)

▪ 지적내용 :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반입을 확대방안 강구

▪ 지적의원 : 전정희 의원

▪ 주요 지적사항

-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 개념에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해외개발 자원의 실제 국내반입실적 미흡하여 개선요망

▪ 조치결과

- 암바토비 니켈 생산물량의 국내 반입 확대 (('12) 700톤 → ('13) 6,081톤)
- 조달청-광물공사 비축기관간 업무협약체결로 향후 광물공사 해외자원 개발의 국내도입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13.12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의 사례

구 분	비축 목적	제도창설	비축품목(수)	비축목표	비축기관
미국	전략비축 국가비상사태대비	1939년	알루미늄, 크롬 등 20개 품목	국내수요 3~4년분	- 연방비상관리처(FEMA), - 국방병참처(DLA) 산하 국가방위비축센터(DNSC)
일본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83년	니켈, 크롬 등 7개 희유금속	국내수요 60일분	- 국가(42일) : 석유가스금속기구(JOGMEC) - 민간(18일) : 특수금속협회
중국	전략비축 경제안정보장비축	1953년	비철금속 및 안티모니 등 희유금속	품목별 상이 (1-3개월)	- 물자비축국(SRB) - 국가물자비축센터

○ 민간의 사례

비축물자	정부부처	비축관리기관
비철금속, 희유금속(9광종)	기획재정부	조달청
석유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무연탄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농·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	해양수산부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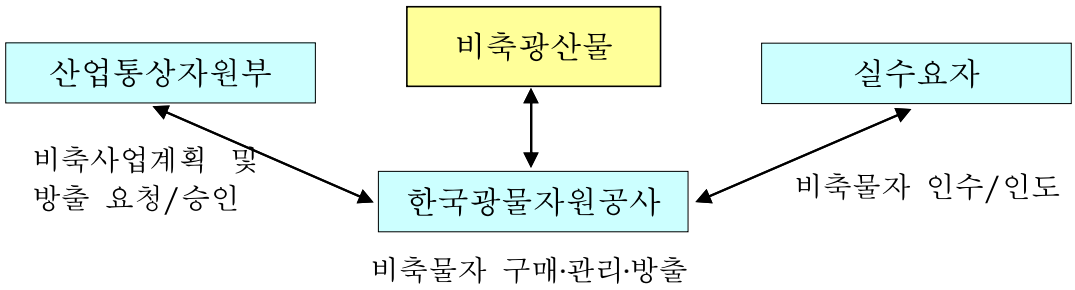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460	1,457	1,311	△146	△10.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300 - 5341 - 302

* 담당자 : 에너지원정책국(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박훈, 044-203-5150), 주무관(우동규, 51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64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소요경비의 100% 이내)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원료광물인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수행중인 광산물 비축사업과 관련된 비축광산물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광산물 비축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관리 소요비용 1,311백만원 요구

* 총액 1,311백만원 : 인건비 118백만원, 운영경비 1,193백만원

○ 신축비축기지내 장비·시설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기지자산상각 등 비축기지 임차료, 보험료 우대, 절전, 검정업무 통합,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으로 **관리비 절감**

- (임차료) '13년말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시장가기준으로 건물사용료부과와 자산상각이 시작되어 큰 폭의 임차료 인하

* ('14년) 668백만원 → ('15년) 520백만원 (△22%)

- (보험료) 비축기지 경비장치 강화, 지붕 및 벽면 보수, 특수창고내 희토류 등 보관을 위한 밀폐공사 등으로 '13.8월 보험협회가 보험대상물 보관장소 등급(1등급)을 상승시켜 우대 보험요율 (연 0.06%이하) 적용

  * ('14년) 169백만원 (1,600억원 × 0.106%) → ('15년) 133백만원 (2,000억원 × 0.06% + 건물보험료 13백만원)

- (전력료) '14.3월 효율적인 항온항습장치 밀폐공사 및 디지털 온습도센서 및 간절기 절전프로그램 도입으로 전력료 절감

  * ('14년) 168백만원 (계약전력 300KW) → ('15년) 101백만원 (계약전력 180KW)

- (기 타) 정부 3.0과제로 조달청과 협업하여 "비축사업 외부기관평가 및 향후 방출체계 선진화 연구" 실시 등으로 소폭 증가

  * ('14년) 기타운영비 452백만원 → ('15년) 기타운영비 55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속적 경비지원을 통한 광산물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

- (광산물 구매관리) 광산물 시장동향분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기본방향설정, 합리적인 구매계획수립 후 구매실시, 광산물 인수시 검수·검사를 통한 광산물 심사
- (비축시설 및 광산물 관리) 비축시설·광산물에 대한 재난예방, 보안, 기타 비축관련 장비 등 유지 보수
- (비축사업 선진화 추진) 광산물 수급 등 시장동향에 적응토록 비축계획 조정 및 비축제도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자료획득, 연구, 회의 참석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460	1,457	1,311	146	△10.0
▪ 인건비 (산출근거)	118	118 (39.5백만×3명)	118 (39.5백만×3명)	-	-
▪ 운영경비 (산출근거)	1,342	1,339 (임차료 668백만) (보험료 169백만) (기타 502백만)	1,193 (임차료 520백만) (보험료 133백만) (기타 540백만)	△146	△10.0
□ 비목					
▪ 민간경상보조(302)	1,460	1,457	1,311	△146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전략 비축시설 및 비축광물의 차질 없는 관리·운영

○ 비축량 증가에 따른 동산종합보험 등 고정관리비용 증가분을 **임차료 인하 및 절전 등을 통해** 현 관리비 유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57	▪ 인건비 1.18 운영경비 13.39
'15	13.11	▪ 인건비 1.18 운영경비 11.93
'16	12.45	▪ 인건비 1.18 운영경비 11.27
'17	12.45	▪ 인건비 1.18 운영경비 11.27
'18	10.58	▪ 인건비 1.18 운영경비 9.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1항 3호(광산물의 비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추진경위

- '08. 01 광산물 비축자산관리보조 사업 개시
- '13. 12 광산물 크롬 등 9광종 40,411톤(누계) 비축자산관리 지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6	10	15	15	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6	-	-	6	6	-	-
	(6)	(-)	(-)	(6)	(6)	(-)	(-)
'12년	10	-	-	10	10	-	-
	(10)	(-)	(-)	(10)	(10)	(-)	(-)
'13년	15	-	-	15	15	-	-
	(15)	(-)	(-)	(15)	(1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67.0점('14.5)

구 분	평가점수	등급	보완사항
'13	67.0점	보통	광산물 관련 비용 효율적 운용 등

○ '12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지적내용 : 조달청으로부터 임차중인 군산비축기지 임차료 면제방안 추진 요청

▪ 주요 지적사항

- 국유재산법상의 공익사업수행 공공기관의 임차료 면제조항을 적용받도록 조달청과 협의 요구

▪ 조치결과

- '11.10월과 '13.8월에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임차료 면제요청공문 발송후 조달청으로부터 타민간비축과 형평성, 세입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협의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의 사례

구 분	비축 목적	제도창설	비축품목(수)	비축목표	비축기관
미국	전략비축 국가비상사태대비	1939년	알루미늄, 크롬 등 20개 품목	국내수요 3~4년분	- 연방비상관리처(FEMA), - 국방병참처(DLA) 산하 국가방위비축센터(DNSC)
일본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83년	니켈, 크롬 등 7개 희유금속	국내수요 60일분	- 국가(42일) : 석유가스금속기구(JOGMEC) - 민간(18일) : 특수금속협회
중국	전략비축 경제안정보장비축	1953년	비철금속 및 안티모니 등 희유금속	품목별 상이 (1-3개월)	- 물자비축국(SRB) - 국가물자비축센터

○ 민간의 사례

비축물자	정부부처	비축관리기관
비철금속, 희유금속(9광종)	기획재정부	조달청
석유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무연탄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농·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	해양수산부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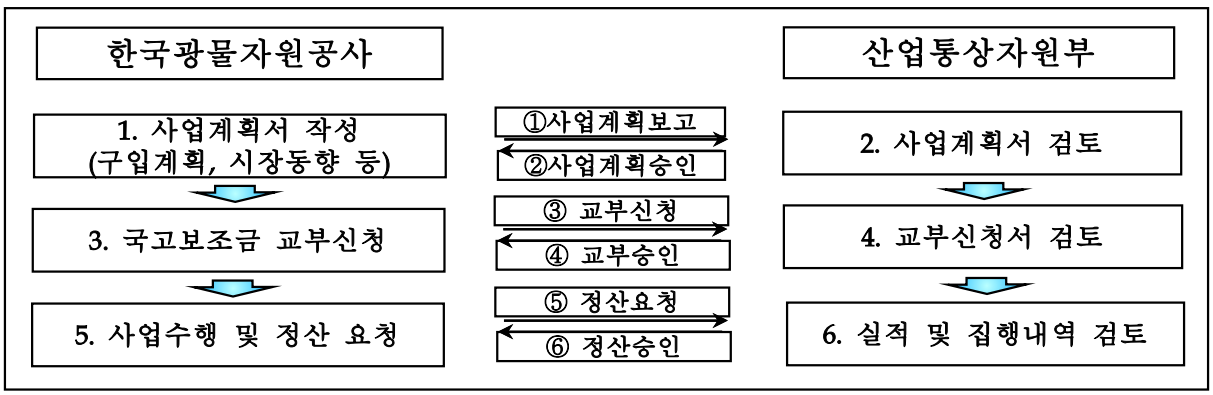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해외자원개발조사(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해외자원개발조사	9,070	7,828	6,787	△1,041	△13.3

* 사업코드 : 21-24-4-110-115-5300-5333-302

* 담당자 : 에너지원정책국(박일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박훈, 044-203-5150), 사무관(박석주, 515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조사사업 '78년~, 기반구축사업 '98~, 융자심의회운영 '11~,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11~'14)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3,328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조사사업 : 사업비의 80~100% 이내 민간보조 - 기반구축사업, 융자심의회 운영 : 사업비의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해외자원개발협회(융자심의회운영)

2. 사업목적

○ 해외자원개발 촉진 및 투자리스크 경감

○ 주요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정보, 국제협력의 지원

○ 에너지 및 산업원료광물의 전략광종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정부협력사업 후속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조사사업 : 5,727백만원

○ ‘19년 자원 개발목표 42% 달성(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및 국정과제인 “탐사성공 중심 해외자원개발 내실화”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조사(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사업비

② 기반구축사업 : 710백만원

○ 자원정보 기반(자원정보 수집DB확충, 자원정보시스템 개선, 정보수집 채널 확대)와 국제협력(전략지역 에너지자원 협력 및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협력 추진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③ 융자심의회 운영 : 350백만원

○ 석유·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융자 신청한 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 수당, 기술·법률 전문기관의 심사비, 현장 실사비, 회계·법무법인의 감면심사비, 융자심의회 운영비, 관리비 등을 위한 사업비

□ 지원 필요성

[조사사업]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 동광 등 주요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기업의 투자위험도를 저감시키고, **해외자원개발의 탐사성공 중심 질적 성장 제고**

[기반구축사업]

○ 해외자원개발 정보수집·분석, 해외자원개발관련 국내 민·관 협력 강화 및 자원부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교류기반 구축

[융자심의회]

○ 국내외 석유·가스 및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융자심의회의 운영비와 위원수당, 현장 실사비, 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융자 및 감면심사비, 협회 위탁수수료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해외자원개발조사	8,925	7,828	6,787	△1,041	△13.3
▪ 조사사업	7,200	6,483	5,727	△756	△11.7
▪ 기반구축사업	1,190	710	710	0	-
▪ 융자심의회운영	380	500	350	△150	△30.0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155	135	-	△135	△100.0
□ 비목	8,925	7,828	6,787	△1,041	△13.3
▪ 민간경상보조(320-01)	8,925	7,828	6,787	△1,041	△13.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자원 자원개발 목표 달성 및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 투자 활성화를 지원

- 기술, 정보, 국제협력 지원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 유망사업 발굴, 제공을 통한 초기단계 리스크 경감

* 자원개발 목표 상향조정(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10.12.22))
: 6대 전략광물 : ('09) 25.0% → ('12) 32.0% → ('16) 40.0% → ('19) 4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8.3	▪ 조사사업 : 64.8 ▪ 기반구축사업 : 7.1 ▪ 융자심의회운영 : 5.0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1.4
‘15	67.9	▪ 조사사업 : 57.3 ▪ 기반구축사업 : 7.1 ▪ 융자심의회운영 : 3.5
‘16	74.4	▪ 조사사업 : 58.5 ▪ 기반구축사업 : 9.5 ▪ 융자심의회운영 : 5.0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1.4
‘17	74.4	▪ 조사사업 : 58.5 ▪ 기반구축사업 : 9.5 ▪ 융자심의회운영 : 5.0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1.4
‘18	74.4	▪ 조사사업 : 58.5 ▪ 기반구축사업 : 9.5 ▪ 융자심의회운영 : 5.0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1.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보조) 및 제11조(융자)

○ 추진경위

- 조사사업은 ‘78년 이후, 기반구축사업은 ’98년 이후, 융자심의회운영은 ‘11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은 ‘11년 이후 ’14년까지 예산 반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해외자원개발조사	100	92.5	90.7	78.3	6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13년 패키지협자원개발사업 1.4억원 → '15년 제외사업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0			100	100		
	(100)	( )	( )	(100)	(100)	( )	( )
'12년	92.5			92.5	92.5		
	(92.5)	( )	( )	(92.5)	(92.5)	( )	( )
'13년	90.7			90.7	90.7		
	(90.7)	( )	( )	(90.7)	(89.3)	( )	(1.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대기업 지원축소('13년 예결위, 국정감사)

- 조치사항 : 지원대상 변경('14년부터 중소기업 추진 및 참여사업만 지원) 및 지원예산축소('13년 1,680백만원→ '15년 390백만원)

○ 광물공사의 해외지사 운영비용 국비지원 부적절('13년 예결위)

- 조치사항 : '14년부터 광물공사 해외지사 운영비용은 자체비용으로 수행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등 해외자원개발협회 보조금 축소 필요('14년 예결위)

- 조치사항 : **'15년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지원제외,** 융자심의회 운영 예산축소('14년 500백만원→ '15년 350백만원)

□ 평가결과

○ 20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2011년, 우수)

○ 외부기관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누적성과 평가결과

▪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13.8~'13.10)

▪ 평가결과 : 조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민간단독 추진사업보다 투자회수율은 2배 이상 높고, 성공률은 3.4배 높은 성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 해외광물자원조사에 26.8억엔(328.9억원) 보조 지원('12년 기준)

기관 / 사업내용	NEDO - 신에너지개발기구	JOGMEC - 석유/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
정보제공 및 프로젝트 발굴	- 해외사무소(5개소) - NEDO정보센타 운영	- 해외사무소(11개소) - 해외광업사정조사(자원정보조사) - 국제포럼개최 및 기술교류 사업 - 자원정보센타 운영
기초탐사	- 해외석탄개발가능성조사(민간기업) - 해외지질구조조사(NEDO) - 석탄자원개발기초조사(NEDO) - APEC지역개발조사(NEDO)	- 해외지질구조조사(JOGMEC) - 해외공동지질구조조사(민간기업) - 인공위성영상자료해석(JOGMEC) - 자원개발협력 기초조사(JOGMEC) - 연구협력사업(JOGMEC)

(5) 사업추진절차

○ 해외자원개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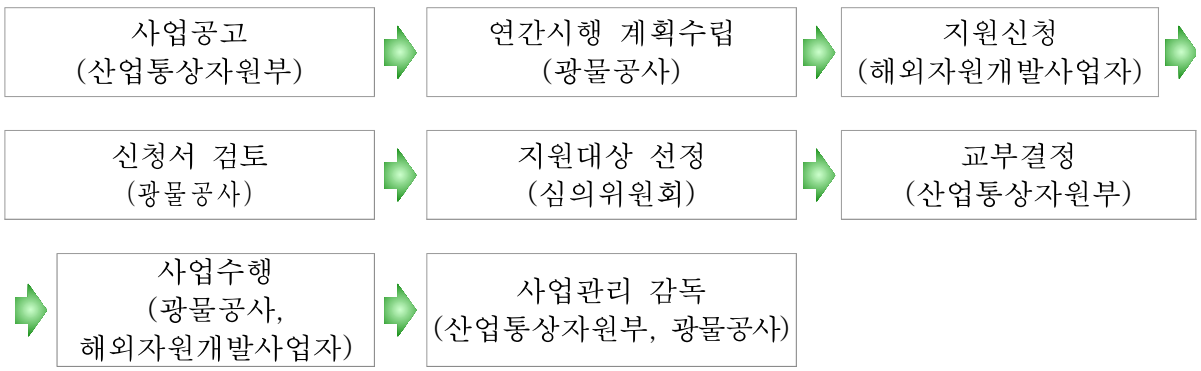

○ 융자심의회 운영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에특회계>	552,743	587,898	608,112	20,214	3.4
○석유비축사업출자	73,578	61,427	58,926	△2,501	△4.1
○석유유통구조개선	9,120	6,660	6,327	333	△5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7,910	14,647	11,510	3,137	△21.4
○탄가안정대책보조	188,979	236,486	215,000	△21,486	△9.1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49	1,714	1,628	△86	△5.0
○폐광대책비	51,436	26,000	67,294	41,294	158.8
○광해방지비	88,000	82,000	86,714	4,714	5.4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10,000	21,693	32,267	10,574	48.7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40,350	△12,650	△23.9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4,290	6,990	9,815	2,825	40.4
○도시가스보급배관사업(융자)	62,000	74,000	75,000	1,000	1.4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2,000	2,000	2,000	-	-

석유비축사업출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석유비축사업출자	73,578	61,427	58,926	△2,501	△4.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1 - 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유산업과장(이용환, 044-203-5220), 사무관(김정운, 52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0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 투자액 : 3조7738억원)
사업규모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25년까지 비축유 107백만배럴 확보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2. 사업목적

○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석유비축사업의 효과적 수행으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

- 이를 위한 비축유 구입, 비축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비축유 구입 : 휘발유 124천배럴 구입을 위한 사업비 18,267백만원

- 휘발유 124천B x $122/B x 1,020원/$ = 15,430백만원
- 운임·보험료·부대비용, 물량·품질정산 등 2,837백만원

② 비축기지 건설 : 울산석유비축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을 위한 2차년도 공사비 25,859백만원

- 1,450억원(총공사비) x 18%(공정률) = 25,859백만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공정률	조사・설계	18%	40%	42%	100%
사업비	80	259	580	611	1,530

* 울산남항 전면에 방파제 축조공사(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국토해양부고시 2011-402호)가 '13.12월 착공됨에 따라, 방파제 축조 위치에 현재 운영 중인 해상 원유입출하시설을 2017년까지 이설 필요
  - 사업비: 1조2556억원('13~'19)/사업규모: 남방파제 3.2㎞, 방파호안 1.42㎞

③ 비축기지 유지보수 : 9개 비축기지 유지보수, 거제 지하비축기지 기밀성 보완 3차년도 공사를 위한 사업비 14,800백만원

- 기계장치 : 거제기지 1차공동 펌프룸 상부 호이스트 교체 등 4,966백만원
- 구축물 : 구리기지 매설소화배관 교체 등 318백만원
- 건 물 : 거제기지 입구 노후초소 교체 등 228백만원
- 저장품 : Main Line Hose(해상입출하설비) 등 내·외자 1,557백만원
- 공기구비품 : 비축비품,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493백만원
- 차량운반구 : 9개기지 작업용 노후차량 12대 교체(크레인차량 2대 포함) 438백만원
- 거제 지하비축기지 기밀성 보완공사(3차년도) : 459억원(총공사비) x 15%(공정률) = 6,800백만원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공정률	실시설계	13%	15%	35%	34%	3%	100%
사업비	12	60	68	155	153	11	459

*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공동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수벽시스템 설치공사로, 저장기능 상실로 인한 폐쇄후 신규 건설시 약 5천억원 이상 소요 추정

□ 지원 필요성

○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당시 석유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 동종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80년부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기지건설과 비축유 확보를 추진

-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40%에 달하며, 세계 5위의 석유순수입국 및 8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원유의 86.0%(총 915백만 배럴 대비 787백만 배럴)를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

- 중동사태, 수송로의 봉쇄 등으로 인한 석유공급 중단과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축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

* 그간 4차례(독자방출 1, 국제공조 3) 방출로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

구분	등유방출	걸프전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비아 사태
기간	'05.12.~'06.3.	'90.8.~'91.3.	'05.9.~'05.10.	'11.7.~'11.8.
물량	○ 등유 980천B - 이상 기온으로 난방용 등유 독자 방출	○ 총 4,940천B - 원유 3,130천B - 제품 1,377천B - LPG 433천B	○ 총 2,916천B - 원유 2,523천B - 제품 393천B	○ 총 3,465천B - 원유 1,943천B - 제품 1,522천B

- 또한, 휘발유 비축량은 9일분(166만B)으로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비축 확대 필요(계획 15일분, 일소비량 19만B)

* 원유를 정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15일 소요
* 일본은 '11.3월 동북부 지진시 정제설비 피해(약 17%)로 우리나라에 휘발유 등 석유제품(360만B) 긴급지원 요청(일본은 원유 437백만B 비축중)

○ 정부는 직접비축유 107백만B 확보할 계획이며, '14.10월말 기준, 비축량은 90.8백만B로 4차 비축계획에 의거 '25년까지 16백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 '14.10월말 기준 정부 직접비축량은 원유 78.2백만B, 제품 12.6백만B로써, IEA 기준(연료유 순수입량) 115일, 소비량기준(산업용 포함) 36일간 공급 가능

- 민간 정유사의 재고 106백만B을 포함한 국내 총비축물량은 196.8백만B로 IEA 기준 254일, 소비량기준 78일간 공급 가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석유비축사업출자	73,578	61,427	58,926	△2,501	△4.1
▪ 비축유 구입	44,197	41,649	18,267	△23,382	△56.1
▪ 비축기지 건설	10,000	8,000	25,859	17,859	223.2
▪ 비축기지 유지보수	19,381	11,778	14,800	3,022	25.7
□ 비목	73,578	61,427	58,926	△2,501	△4.1
▪ 일반출자금(460-01)	73,578	61,427	58,926	△2,501	△4.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공급 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상시 비축시설 안전관리 강화, 울산 신항만 개발에 따른 해상 입출하설비의 적기 이설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14	▪ 비축유 구입 : 416휘발유 272천B) ▪ 비축기지 건설 : 80(울산해상입출하설비 이설 1차 조사설계비 1,450x5.455%) ▪ 유지보수 : 118(9개 비축기지 58,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2차 459x13%=60)
'15	589	▪ 비축유 구입 : 182(휘발유 124천B) ▪ 비축기지 건설 : 259(울산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2차 공사비 1,450x18%) ▪ 유지보수 : 148(9개 비축기지 80,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3차 459x15%=68)
'16	614	▪ 비축유 구입 : 151(휘발유 120천B) ▪ 비축기지 건설 : 580(울산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3차 공사비 1,450x40%) ▪ 유지보수 : 235(9개 비축기지 80,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4차 459x35%=155)
'17	614	▪ 비축유 구입 : 151(휘발유 115천B) ▪ 비축기지 건설 : 611(울산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4차 공사비 1,450x42%) ▪ 유지보수 : 233(9개 비축기지 80,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5차 459x34%=153)
'18	614	▪ 비축유 구입 : 151휘발유 115천B) ▪ 유지보수 : 91(9개 비축기지 80,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6차 459x3%=11)

※ 비축유 물량 축소,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울산비축기지 해상 입출하설비 이설 사업비 부족

- 울산 신항만 개발에 따라 '17년까지 이설을 완료하려면 '16~'17년 필요한 예산은 1,191억원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규모는 512억원(679억원 부족)으로 기한내 완공 불가
- 비축유 구입, 유지보수 예산도 석유위기 대응능력의 취약성과 안전문제 등으로 감액은 사실상 곤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제16조(석유비축시책)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 추진경위

- 제1·2차 석유파동이후 정부는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 '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 석유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사업비는 '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 수행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기 시작('95년부터는 에특회계에서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석유비축사업출자	1,250	814	736	614	5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250			1,250	1,250		
	( )	( )	( )	( )	( )	( )	( )
'12년	814			814	814		
	( )	( )	( )	( )	( )	( )	( )
'13년	736			736	736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4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 (지적사항) 국제공동비축물량을 임대물량이 아닌 실제 비축량으로 산정
- (후속조치) 정부 비축물량 산정시 국제공동비축물량 구분 및 임대물량과 실재고량을 구분하여 파악

○ '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60.0점)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실적이 다소 미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단위 : 백만배럴)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프랑스	IEA
비축물량	187	575	1,761	289	168	4,149
- IEA 기준(일)	240	148	204	141	105	198
- 소비량 기준(일)	75	110	85	110	90	82

주1) 국가별 비축물량 : IEA Oil Market Report('14.5월호/'13년말 재고기준, 정부 및 민간부문 포함 물량

주2) IE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OECD 33개국중 28개국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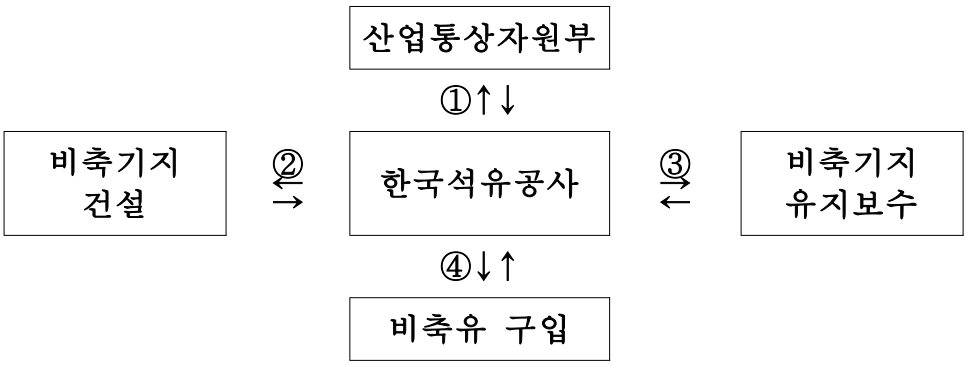

① 비축계획수립 및 승인

② 비축기지 연도별 건설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③ 비축기지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④ 비축기지 연도별 비축유 구입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사업근거 해당 법령 조문내용

○ 정부비축계획 추진 현황

참고1 사업근거 해당 법령 조문내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비축·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참고2 정부비축계획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유 확보를 추진

< 정부석유비축계획 >

(단위 : 백만B)

구 분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계
사업기간	'80~'89년	'90~'03년	'95~'13년	'80~'13년
저장용량	43.6	51.9	50.5	146.0
- 원 유	40.1	43.4	44.0	127.5
- 제 품	1.6	6.0	6.5	14.1
- LPG	1.9	2.5	-	4.4
사업비(억원)	9,376	19,960	26,714	56,050

□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확보('13.12월말)	달성률
비축시설	'11년까지 146백만B 건설	146백만B	100%
비 축 유	'13년까지 141백만B 확보 - 직접비축 101백만B - 국제공동비축 40백만B	135.2백만B - 직접비축 91.0백만B, - 국제공동비축 44.2백만B	96.1%

○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비축목표는 총 141백만B로, 직접비축 101백만B, 국제공동비축에 의한 간접비축 40백만B로 구분

○ '13.12월말 기준 정부 비축물량은 91.0백만B로 직접비축 목표(101백만B) 대비 90.3% 달성

○ 비축시설 용량 및 비축량 ('13.12월말)

(단위 : 백만B, 일)

구분	비축시설 용량			비 축 량						
	원유	제품	합계	원유	제 품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LPG	소계	
정부	127.5	18.5	146.0	78.4	1.7	2.5	4.6	3.8	12.6	91.0
비축일수	-	-	-	31.2 (107.0)	8.5	41.3	12.4	14.8	5.0 (16.4)	36.2 (123.4)

* 지속일수는 소비량기준(괄호 안은 IEA기준) / '12년 소비량(천b/d) : 휘발유 196, 등유 60, 경유 373, LPG 260
* 국제공동비축물량은 제외
* IEA기준: 비축량을 전년도 일일 순수입량(연료유)으로 나누어 산정(공동비축제외)
  - 세계 각국은 IEA 권고규정(자국의 일일 순수입량기준 90일분 이상 확보)을 준수하면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비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
  - 한국은 IEA 권고기준과 소비량기준을 병행하여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석유유통구조개선(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석유유통구조개선	9,120	6,660	6,327	333	△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2 -303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유산업과(이용환, 044-203-5520), 주무관(김아름, 52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276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2. 사업목적

○ 석유수급시스템,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등 국내 석유정보 시스템 운영·개선 및 석유유통정보 DB 고도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 및 석유수급 안정도모

○ 알뜰주유소 등 자가상표 주유소 육성·지원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국내석유시장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개선 사업 지원

○ 가격조사 및 오피넷 등 정보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650백만원 (↑17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구액	비 고
가격조사 및 오피넷 시스템 운영	450	• 석유제품 가격 정보 수집 - VAN 주유소 가격정보 이용료(VAN사 2개 확대 및 수수료 증액에 따라 50백만원 증액) - 콜센터 운영
	200	• 가격정보 시스템 운영 - ARS 가격수집 시스템 운영 - VAN 전용선 이용료(석유공사이전으로 통신비 50백만원 증액) - 오피넷 지도 서비스 등 - 모바일 유지보수 개선(70백만원 증액)
합 계	**650**	

②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사업 지원

○ 석유제품 및 LPG 거래자료 수집·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백만원(△50백만원)

■ 산출내역 : 석유제품 및 LPG 거래자료 수집·처리 비용

– 석유제품 : 2개협회 × 50백만원 = 100백만원

* 석유유통협회(대리점 500개), 일반판매소협회(판매소 3,000개)

– LPG : 1개협회 × 50백만원 = 50백만원

* LPG산업협회(충전소 2,000개)

③ 유통시장경쟁촉진 사업 지원

○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장의 시설개선 비용, 자가폴 및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5,047백만원(△633백만원)

■ 산출내역 : 알뜰주유소 확산에 따른 신규전환 사업장의 감소 및 품질관리 대상 사업장의 확대추세 반영(시설개선지원 1,240백만원 감액, 품질보증 프로그램 607백만원 증액)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2,860백만원 = 24백만원 × 120개 업소

* 신규전환 주유소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120여개 주유소 지원 계획('14년 170개 예상)

- 품질보증 프로그램 2,187백만원 =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지원 (350여개 업소)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 인지도 제고 등
  * 14년 8월 기준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대상 906개 업소
  * 품질보증 프로그램 사업비 660만원 중 90%(594만원) 지원

④ 석유유통질서확립 및 투명성제고 사업 지원

○ 석유시장 감시(가짜석유 퇴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등)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480백만원(↑180백만원)

■ 산출내역 : 석유시장 감시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

- 소비자 시장감시단 : 15백만원 × 12월 = 180백만원
- 혼합판매 지원 등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 : 200백만원
- 알뜰주유소 등 자가폴주유소 유통구조 개선 : 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유사의 과점 등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에 근거하여 정부 예산 등 재원 투입을 통해 수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임

○ (오피넷 운영 및 개선) 석유가격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유사, 주유소 등 판매업자 일방의 가격결정 구도를 타파하여 소비자의 유류구매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조사 및 서비스제공은 국민 및 국가편익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는 석유수입, 생산, 수출, 판매, 소비, 재고, 비축 등 국내 전반의 석유유통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석유통계 및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에너지수급, 물가, 세제, 통계 등 다양한 정부 정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사업임

○ (유통시장 경쟁촉진) 4대 정유사 과점체제로 시장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유통채널 구축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석유유통구조개선	9,120	6,660	6,327	△333	△5
▪ 오피넷운영 및 개선	500	480	650	170	37.8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200	200	150	△50	△25
▪ 유통시장 경쟁촉진	8,120	5,680	5,047	△633	△11.1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300	300	480	180	60
□ 비목(합계)	9,120	6,660	6,327	△333	△5
▪ 민간경상보조(320-01)	9,120	6,660	6,327	△333	△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경쟁촉진을 위한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하고, 석유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7	▪ 오피넷운영 및 개선 사업 : 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2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57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15	61	▪ 오피넷운영 및 개선 사업 : 6.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1.5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50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16	61	▪ 오피넷운영 및 개선 사업 : 6.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1.5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50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17	46	▪ 오피넷운영 및 개선 사업 : 6.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1.5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35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18	46	▪ 오피넷운영 및 개선 사업 : 6.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1.5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35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금융대책회의(‘12.4.16)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12.4.19)을 실시한 바 있는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 법령상 근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의2,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동법시행령 43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 추진경위

- ‘04. 9월 : 유류카드제 운영 사업비 지원
- ‘08. 4월 : 오피넷 오픈
- ‘11. 4월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발표
- ‘11.11월 :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발표
- ‘11.12월 : LPG 사업자 판매가격 공개
- ‘11.12.29 : 알뜰주유소 1호점 개설
- ‘12. 4월 :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석유유통구조개선	11.2	85.1	91.2	66.6	63.2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1.2			11.2	11.2		
	( )	( )	( )	( )	( )	( )	( )
’12년	85.1			85.1	85.1		
	( )	( )	( )	( )	( )	( )	( )
’13년	91,2				91.2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알뜰주유소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12년 예산 예결위 검토 보고서)

○ 알뜰주유소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방안을 강구하고 품질점검을 강화할 것 (‘12년 지경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알뜰주유소사업은 저가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익제공이 주요 취지이므로 지속적으로 저가판매 방안을 강구할 것 (‘12년 지경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알뜰주유소 간의 판매가격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가능성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알뜰주유소의 운영실태, 문제점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12년 지경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과다지원 및 보조금 정산방식 부적절(‘12년 결산 예결위 결과보고서)

○ 알뜰주유소 관련 사업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되면서 예산집행상 비효율 발생(‘12년 결산 예결위 결과보고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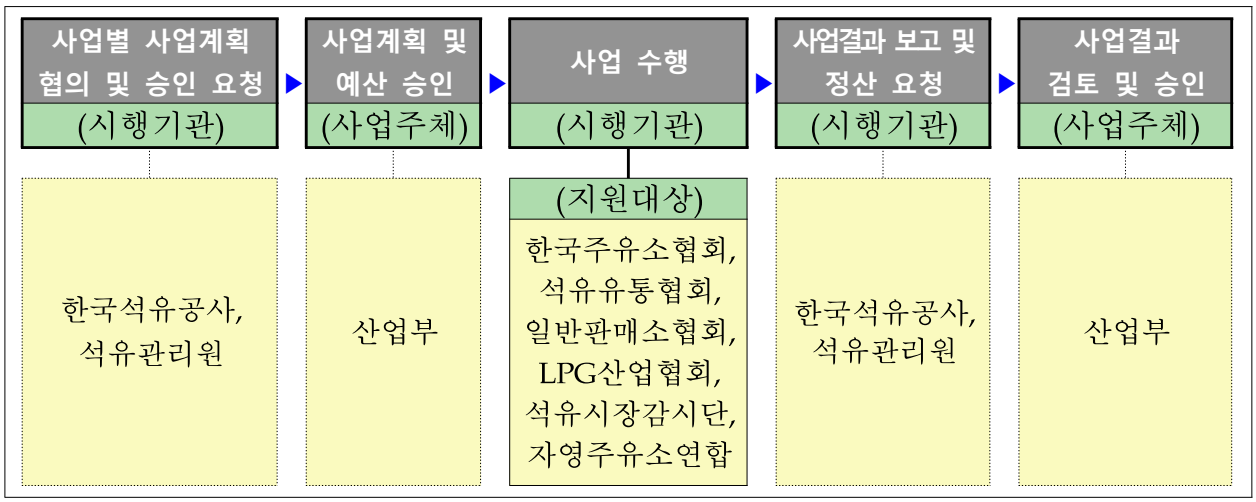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LP가스품질검사(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사업코드 : 21-24-4-110-115-5400-5434-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가스산업과장(이호현, 044-203-5230), 주무관(정정식, 52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4년까지 기투자액 : 154.4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관리원 (LP가스품질 전문 검사기관)

2. 사업목적 : LP가스 품질검사비용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LP품질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 1,281백만원

- 품질검사 대상업소(충전소) 및 품질위반 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적정한 품질검사 지원

  * 충전소(개) : ('09)1,739→('10)1,887→('11)1,960→('12)1,994→('13)1,994

  * 위반건수 : ('09)27(0.6%)→('10)32(0.7%)→('11)31(0.7%)→('12)33(0.7%)→('13)29(0.6%)

- 4,762건(대상업소 1,994개×업체당 1회~5회) × 단가(269,000원) = 1,28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LP가스 품질검사는 세액이 적은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프로판 과다혼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 부탄과 프로판의 세금차이(358원) = 개별소비세 차이[부탄(275원)-프로판(20원)=255원]+교육세(부탄만 41원)+판매부과금(부탄만 62원)

- 다만, 품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세수 확보와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소요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함

○ 또한 프로판 불법혼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충전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LP가스 품질검사의 지속적인 실시가 요구됨

* 충전소(개) : ('09)1,739→('10)1,887→('11)1,960→('12)1,994→('13)1,994
* 위반건수 : ('09)27(0.6%)→('10)32(0.7%)→('11)31(0.7%)→('12)33(0.7%)→('13)29(0.6%)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비목	1,281	1,281	1,281	-	-
▪ 민간경상보조(320-01)	1,281	1,281	1,28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신축적인 품질검사 실시

- 품질검사 이력 등*을 참고로 위반가능성이 높은 LP가스 제조·판매업소 중점관리

* 위반유인이 높은 프로판 충전(용기 충전) 겸업 업소, 품질위반 이력 업소 등

- 취약시기·시간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위반율이 높은 지역이나 변절기(5월, 10월) 등 전략적 품질검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2.8	▪4,762건(1,994개 충전소×1~5회) × 단가(269,000원)
'15	12.8	▪4,762건(1,994개 충전소×1~5회) × 단가(269,000원)
'16	12.2	▪4,524건(1,994개 충전소×1~5회) × 단가(269,000원)
'17	12.2	▪4,524건(1,994개 충전소×1~5회) × 단가(269,000원)
'18	10.3	▪3,843건(1,994개 충전소×1~4회) × 단가(269,000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제4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또는 위탁검사기관)에 대해 품질검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특별소비세법 개정('00.12, 수송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부탄의 특별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액차이로 인해 자동차용 부탄에 불법으로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LP가스품질검사 추진

· 2001.12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품질검사 근거 신설)

· 2002. 4 : LPG품질기준제도 도입관련 법령 시행 및 고시 제정

· 2002. 8 : 품질검사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LP가스품질검사	11.72	12.81	12.81	12.81	12.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1.72	-	-	11.72	11.72	-	-
	(11.72)	(-)	(-)	(11.72)	(11.72)	(-)	(-)
'12년	12.81	-	-	12.81	12.81	-	-
	(12.81)	(-)	(-)	(12.81)	(12.81)	(-)	(-)
'13년	12.81	-	-	12.81	12.81	-	-
	(12.81)	(-)	(-)	(12.81)	(12.8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LP가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충전소당 품질검사 횟수 증대 필요

⇒ 조치사항 : '05년 LP가스 품질검사 예산 증액을 통한 횟수 증대

* ('04) 8.7억원(충전소당 2~3회) → ('05) 13.0억원(충전소당 3~4회)

○ '08년 국감시 지적사항 : LP 가스 품질검사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기관 일원화 필요(주승용 의원 등)

⇒ 조치사항 : 품질검사 공정성을 위하여 상호 경쟁하에서 투명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지역 상호교체 정례화 시행

○ 제298회 지경위 법안상정 전체회의('11.3월) : LPG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도시가스 품질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전담 방안 제언('11.3.3, 도법 개정안 심의시 김성회·조경태의원)

⇒ 조치사항 : LPG 품질검사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11.12.19)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12. 1. 1.부터 시행)

* LPG 품질검사 일원화에 따른 검사인력 6명 충원 확정('11.9월, 기재부)

* '12. 1.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독 수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　본 : 품질규격 표시제(미표시 판매금지), 지자체 품질검사

○ 미　국 : LP가스 품질규격에 따라 州정부가 품질검사 실시

○ 영　국 : CALOR GAS가 자율 실시

○ 이태리 : 품질규격 적합여부 확인 및 탈세방지 위해 정부가 품질검사 실시

(5) 사업추진절차

<LP품질검사 계획·예산 흐름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검사 시행계획 수립 후 품질검사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매년 초)

⇓

② 품질검사기관은 세부시행계획을 작성마련 후 지역별/월별 계획에 따라 검사

⇓

③ 품질검사기관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달 15일까지 품질검사 자금을 신청

⇓

④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기마다 자금 교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연도별 부탄 - 프로판 세액 비교

○ LP가스 품질기준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처벌기준 비교

참고 연도별 부탄 - 프로판 세액 비교

(단위 : 원/Kg)

구 분		'02.7~	'03.7~	'04.7~	'05.7~	'06.7~	'07.7~	'08.4~
프로판 (A)	개소세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
부탄 (B)	소 계	**259.40**	**370.96**	**483.08**	**414.18**	**414.18**	**378.53**	**378.53**
	개소세	203.00	297.00	382.00	306.00	306.00	275.00	275.00
	교육세	30.45	44.55	57.30	45.90	45.90	41.25	41.25
	판매 부과금	25.95	29.41	43.78	62.28	62.28	62.28	62.28
차이 (B-A)	계	**219.40**	**330.96**	**443.08**	**374.18**	**374.18**	**338.53**	**358.53**
	개소세	163.00	257.00	342.00	266.00	266.00	235.00	255.00

* 근거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프로판 20원), 바목(부탄 275원)

참고 LP가스 품질기준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처벌기준

	LPG		석유제품(참고)
	'06년 이전	현 행('06.5.3~)	
①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좌 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근거)	(액법 제48조)	〃	(석대법 제45조)
②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제한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근거)	(액법 제9조) (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	(액법 제9조) (액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0)	(석대법 제13조) (석대법 시행규칙 제16조)
- 1회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3월(중과실) 경고(경과실)
- 2회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6월(중과실) 사업정지 3월(경과실)
- 3회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20일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정지 6월(중과실)
- 4회위반시	허가취소	-	-

석유품질관리사업(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석유품질관리사업	7,910	14,647	11,510	3,137	△21.4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115 - 5400 -5434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유산업과(이용환, 044-203-5520), 사무관(나한균, 52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3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 투자액 1,062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관리원

2. 사업목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8조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향상에 기여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용 법정시험장비 보강, 유통관리 강화 및 가짜석유제품 단속 사업 실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품질검사시험장비(6,125백만원)

- 시험장비 보강 및 교체 :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등 19종 22대(1,385백만원)
- 비노출정량검사시험차량 보강 : 정량검사차량 2종 3대(240백만원)

② 성능평가 분석보조장비 지원 (1,102백만원)

- 석유대체연료 실도로 배출가스 분석기 등 4종 4대(1,102백만원)

③ 가짜석유제품 단속 지원 (292백만원)

- 길거리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위한 여비, 시험·검사 비용 지원 경비 (242백만원)
- 소비자의 신고의식 고취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효율적 차단을 위한 소비자 신고포상금(50백만원)

④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지원 (314백만원)

- 석유수입부과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환급확인을 통하여 부과금의 과다 환급, 부당환급 방지 및 환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314백만원)

⑤ 석유유통관리 지원 (7,381백만원)

- 가짜석유제품 등의 불법유통, 정량미달 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 석유유통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 7,381백만원

⑥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800백만원)

- 석유사업자 수급보고 지원 : 542백만원
  · (주유소 지원) 석유사업자가 기존 사용중인 POS를 활용하여 수급보고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미들웨어) 설치 및 교육지원(200백만원)
  · (안내센터) 수급거래상황 보고 자료(팩스, 운편 등) 입력, 보고오류사항 점검, 시스템 활용 및 수급보고 관련 문의 응대를 위한 전담 지원 인력 운영(327백만원)
  · (네트워크) 수급보고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 및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용선 이중화 운영(15백만원)
-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개선 및 운영환경 개선 : 258백만원
  · (시스템 개선)수급보고 시스템 환경 개선 등(150백만원)
  · (교환기)수급보고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전화 업무 대응을 위해 교환기 증설 도입(40백만원)
  · (전자팩스)서면보고 사업자의 원활한 보고 환경 구축 및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자팩스 시스템 도입(6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는 그 품질과 가격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의 개연성이 상존

- 석유제품은 세금이 차등 부과되고 유통시 품질, 상표, 계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가짜석유 불법유통 지속
-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 (산업부 정책연구용역결과, '12.12)

○ 이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근절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 가짜석유 제조·판매관련 정보수집, 시험검사기법 연구개발·개선 등 첨단·정밀분석장비 확보,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사업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 및 환경오염 방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사업으로서, 유통·품질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품질검사시험장비 및 성능평가 분석보조장비 구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 신규 및 교체도입
- 가짜석유제품 단속의 기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등 장기적인 정부정책 수립에의 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분석보조장비 확보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원
- 다만,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가짜석유 불법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확인·점검업무는 단속 실효성을 감안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주도

하에 가짜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및 시험분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지원 필요 그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지원 필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 석대법 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서 석유 수입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석유제품 등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에 대한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환급 확인사무는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인 필요사업으로써, 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

<석유유통관리 지원>

- 석유유통관리지원사업은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여 세금탈루 및 환경오염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사업임
- 특히, 최근 소비자를 우롱하는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행위가 증가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유통 이외의 불법행위도 증가추세임
- 또한, 기존의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점검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
- 참고로, 최근 지능화, 변칙화 되고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비노출정량검사차량 등 첨단검사장비를 투입·대응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인력을 확대('11년 35명,'12년 85명)
- 따라서,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전방위 단속하기 위해 증원된 120명에 대한 인건비·경비 지원 필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 '11.9·10월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건(4명 사망) 등으로 국민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 차단을 위한 근본적 추가 대책 필요성 대두

※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11.10.14),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12.5.4),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국회 청문회('11.11.8) 등에서 추진방안 논의

- 주요 이행과제로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IT기반의「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사업」추진을 결정

<참고>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 현재 '매월 수기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석유수급·거래상황 보고를 휘발유·등유·경유에 한하여 '전산·전자·서면의 방법으로 매주 보고'토록 개선

- 新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 조기 달성을 위해 예산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가짜석유로 인한 세수탈루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사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석유품질관리사업	14,839	14,647	11,510		
▪ 품질검사시험장비 지원	1,331	1,966	1,625		
▪ 성능평가분석보조장비 지원	624	1,424	1,102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33	292	292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299	310	310		
▪ 석유유통관리 지원	5,852	7,280	7,381		
▪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6,500	3,375	800		
□ 비목	14,839	14,647	11,510		
▪ 민간자본보조	8,135	3,390	2,985		
▪ 민간경상보조	6,704	11,257	8,52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가짜석유제품의 근절,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증과 기준설정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6.47	▪ 품질검사 시험장비 19.66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14.24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95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3.1 ▪ 석유유통관리 72.80 ▪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33.75
'15	115.10	▪ 품질검사 시험장비 16.25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11.02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92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3.10 ▪ 석유유통관리 73.81 ▪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8.00
'16	109.35	▪ 품질검사 시험장비 16.25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11.02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92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3.10 ▪ 석유유통관리 73.81 ▪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2.25
'17	109.35	▪ 품질검사 시험장비 16.25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11.02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92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3.10 ▪ 석유유통관리 73.81 ▪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2.25
'18	92.95	▪ 품질검사 시험장비 9.17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3.95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92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3.10 ▪ 석유유통관리 73.8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 1호 및 제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3
-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5.4)

○ 추진경위

- 석유품질관리원 설립 당시 모든 예산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
- 1995년부터 정부예산 지원
  ※ '83 ~ '94년간 석유사업기금 17,889백만원 보조
  ※ '95 ~'13년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검사기기 보강, 실험실 확충 및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으로 73,738백만원 보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석유품질관리사업	47.17	79.10	148.39	146.47	115.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다만, '13년도 실집행액 중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국무총리실 규제심사)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예산 배정 연기 및 집행 지연으로 이월액(6,500백만원) 발생
  * 법령개정 '13.9月→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13.11月
- 가짜석유 원료공급 차단과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 분석을 통한 제조·판매자의 단속으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로 신고포상금 불용액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7.17			47.17	47.17		
	(47.17)	( )	( )	(47.17)	(47.17)	( )	( )
'12년	79.10			79.10	79.10		
	(79.10)	( )	( )	(79.10)	(78.72)	( )	(0.38)
'13년	148.39			148.39	148.39		
	(148.39)	( )	( )	(148.39)	(148.39)	(65.00)	(0.6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12년 실시)
- 11년 석유품질관리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69점)

○ '09년 지경위 시정요구사항(권대수 전문위원)
-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단속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및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 수집 등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시행기관 변경 요구(석유공사→석유관리원)

○ '10년 국정감사(김성회 의원)
- 가짜석유의 적시성있는 단속을 위해 석유수급상황보고를 관리원으로 일원화하거나,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토록 조치 요구

○ '11년 가짜석유 유통근절 청문회(김재균, 조경태 의원 등)
- 가짜석유 근절의 근본적 대책으로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 요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주요국들은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는 자체 연료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도 다양

○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에서는 베네수엘라 등 인근국가의 저가 연료*가 밀수되어 자국의 연료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거래상황 모니터링시스템(콜롬비아 : SICOM, 페루 : SCOP)을 도입하여 운영

* 베네수엘라 휘발유 : 0.0045$, 콜롬비아 휘발유 : 1.26$

○ (영 국) 주로 면세된 등경유 제품(가정용/산업용)이 정상경유에 불법 혼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전체 연료시장의 4%(최대 7%), 세액손실 £650~1,150백만(1조2천억~2조)으로 추정(영국국세청 09~10년 연차보고서)

- 국세청(HMRC)에서 탄화수소유법에 의해 가정용・산업용 등경유 제품의 유통업자와 사용자 등을 의무 등록시키고 거래상황 등을 전산통합관리 하고 있으며(등록요건 준수여부, 거래내역 허위여부 등 확인)
- 길거리 자동차 연료에 대한 불시 노상검사(연 10만건, 적발율 3~4%)를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

○ (일 본)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은 없으나 전국적으로 가짜석유 4~10%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2009)

- 전국석유협회(경제산업성에서 위탁)에서 품질확보법에 의거 시행하는 ㉠시료매입검사(연 20만건, 석대법 제25조제2항 검사와 동일)와 ㉡분석수탁검사(연 20~23만건, 휘발유판매업자에게 시료분석을 의무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용경유 노상검사(동경도 기준 연 7~8천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가짜휘발유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변성제 투입, 고가판매정책 등의 제도를 운영

○ (미 국)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동차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 탈세보다는 주로 소비자보호(주정부에서 수행), 대기환경측면(연방정부(EPA)에서 수행)에서 품질관리를 수행

- 각 주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도량형사무국(Office of Weights & Measures)에서 주법에 의해 품질검사(뉴욕의 경우 18,000건 적발율 1~3% 수준)를 수행

(5) 사업추진절차

< 품질검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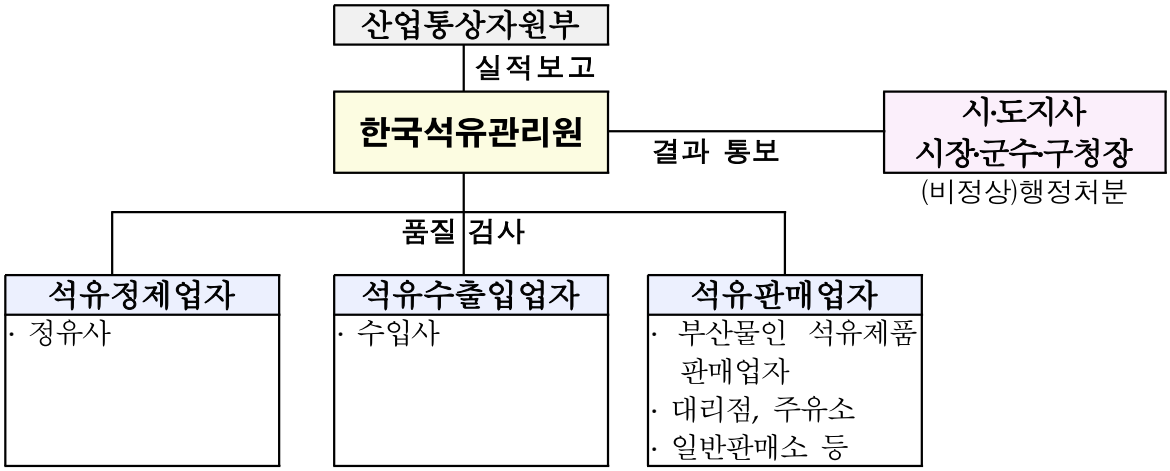

< 유통검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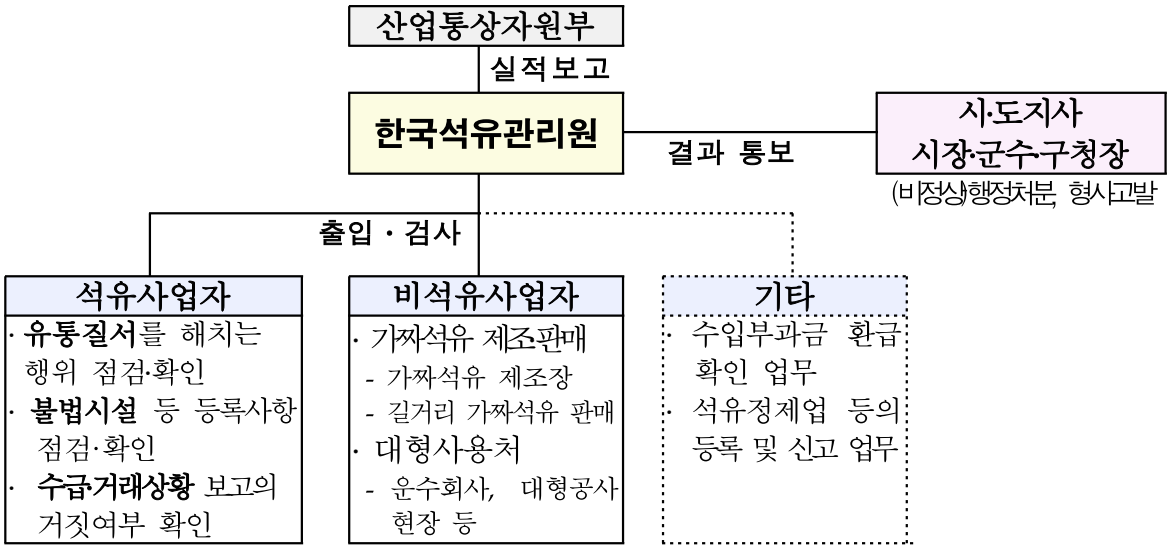

< 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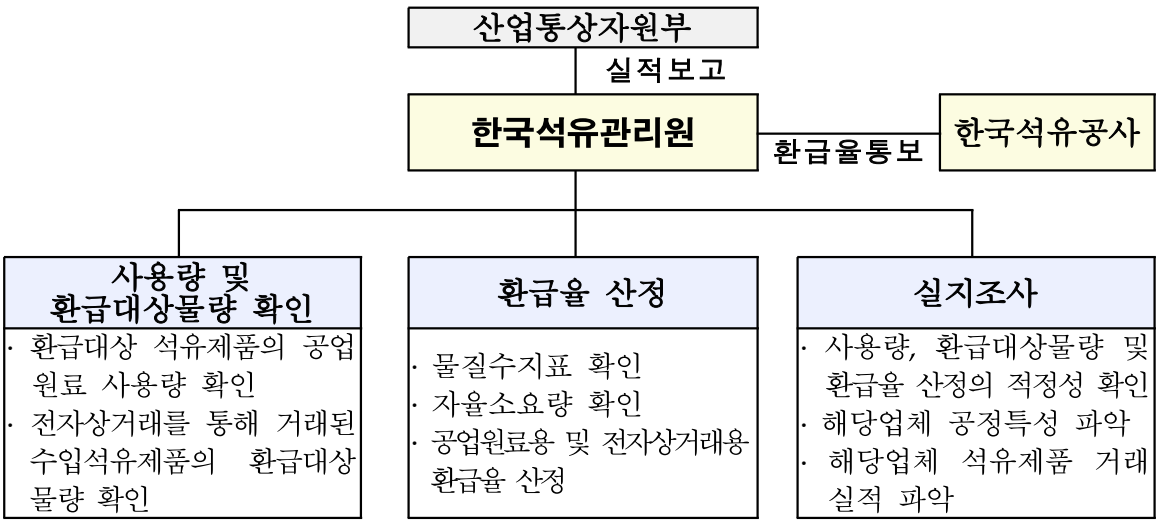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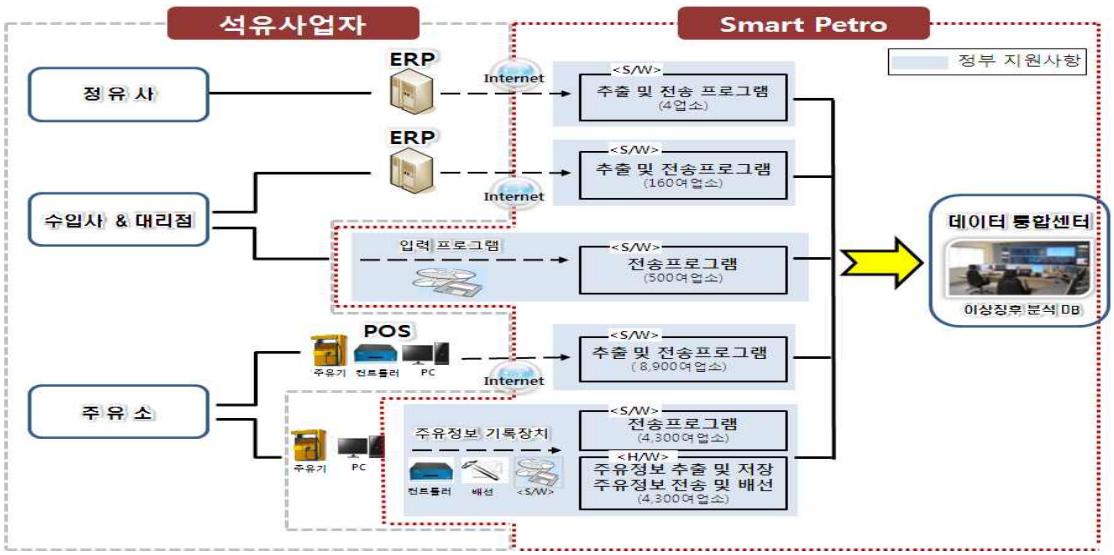

* 정유사, 수입사 & 대리점용 ERP 데이터 추출 및 전송 : 연계 프로그램(S/W)
* 수입사 & 대리점 입력 프로그램 : 석유거래정보 입력 및 전송 프로그램(S/W)
* 주유소 POS용 추출 및 전송 프로그램 : 데이터 추출 및 전송용 프로그램(S/W)
* 주유소 주유정보기록장치 : 주유정보기록단말기(H/W), 미들웨어 프로그램(S/W)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사업근거 해당 법령 조문내용

참고 사업근거 해당 법령 조문내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탄가안정대책보조(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탄가안정대책보조	188,979	236,486	215,000	△21,486	△9.1

* 사업코드 : 110-115-5400-5436-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윤한성, 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사업('89~)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4년 기준 5개 탄광, 47개 연탄공장
지원조건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매년 별도 고시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서민생활보호 및 석탄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 석탄과 연탄의 판매 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지정,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 등 보전

○ 서민연료인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석탄가격지원 : 석탄광 간접비(산재보험료 및 근로자 자녀학자금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6,025백만원

- 1,721천톤 x 26,743원/톤

② 생산감축지원 : 석탄공사·태백광업 생산감축 광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4,989백만원

- 94천톤* x 53,074원/톤

* 석탄공사 54천톤, 태백광업 40천톤

③ 갱도굴진지원 : 석탄광업자의 갱도 굴진지원을 위한 사업비 5,279백만원

- 3,975m x 1,897천원/m x 70%

④ 연탄가격안정지원 : 연탄을 생산·판매한 연탄제조업자(제조비)지원을 위한 사업비 152,877백만원

- 497.21백만개 x 307.47원/개

⑤ 자동차수송비지원 : 연탄제조용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00백만원

- 1,116천톤 x 5,197원/톤

⑥ 회계사수임료 : 석탄·연탄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비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지정·고시함으로써 생산원가와 판매가격간 차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탄가안정대책보조	188,979	236,486	215,000	△21,486	△9.1
▪ 석탄가격보조	26,932	62,009	46,025	△15,984	△25.8
▪ 생산감축지원	8,987	2,956	4,989	2,033	68.8
▪ 갱도굴진지원	6,045	5,549	5,279	△270	△4.9
▪ 연탄가격지원	142,574	159,625	152,877	△6,748	△4.2
▪ 자동차수송비지원	4,425	6,327	5,800	△527	△8.3
▪ 회계사수임료	16	20	30	10	50
□ 비목	188,979	236,486	215,000	△21,486	△9.1
▪ 민간경상보조(320-01)	188,979	236,486	215,000	△21,486	△9.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서민생활보호 및 석탄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 석·연탄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 등을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365	▪ 석탄가격보조 62,009백만원, 감축지원금 2,956백만원, 갱도굴진지원 5,549백만원, 연탄가격보조 159,625백만원, 자동차수송비 6,327백만원, 수임료 20백만원
'15	2,150	▪ 석탄가격보조 46,025백만원, 감축지원금 4,989백만원, 갱도굴진지원 5,279백만원, 연탄가격보조 152,877백만원, 자동차수송비 5,800백만원, 수임료 30백만원
'16	2,150	▪ 석탄가격보조 46,025백만원, 감축지원금 4,989백만원, 갱도굴진지원 5,279백만원, 연탄가격보조 152,877백만원, 자동차수송비 5,800백만원, 수임료 30백만원
'17	2,150	▪ 석탄가격보조 46,025백만원, 감축지원금 4,989백만원, 갱도굴진지원 5,279백만원, 연탄가격보조 152,877백만원, 자동차수송비 5,800백만원, 수임료 30백만원
'18	2,150	▪ 석탄가격보조 46,025백만원, 감축지원금 4,989백만원, 갱도굴진지원 5,279백만원, 연탄가격보조 152,877백만원, 자동차수송비 5,800백만원, 수임료 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판매가격 지정등)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추진경위

-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석탄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조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탄가안정대책보조	1,636	1,518	1,890	2,365	2,1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636	-	-	1,636	1,636	-	-
	(1,636)	( )	( )	(1,636)	(1,636)	( )	( )
'12년	1,518	-	-	1,518	1,518	-	-
	(1,518)	( )	( )	(1,518)	(1,518)	( )	( )
'13년	1,890	-	-	1,890	1,890	-	-
	(1,890)	( )	( )	(1,890)	(1,89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석탄광업자·연탄제조업자→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 실사 및 자금교부 신청→교부결정(산업통상자원부)→자금수령 및 집행(광해관리공단→석탄광업자·연탄제조업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석탄비축자산관리비(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49	1,714	1,628	△86	△5.0

* 사업코드 : 110-115-5400-5436 - 303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윤한성, 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9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4년까지 기투자액 : 901억원)
사업규모	3개 정부비축장의 비축무연탄 관리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대한석탄공사

2. 사업목적

○ 정부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을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인건비 : 3개 정부 석탄비축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794백만원
- 16명 X 49.6백만원

② 물건비 : 3개 정부 석탄비축장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 일반경비 362백만원(278천톤 X 1.3백만원/천톤)
- 비축탄 덮개 등 폐기물처리비 119백만원(340톤 X 35만원)
- 비축 무연탄 방출비 353백만원(7,800톤 X 45,195원/톤)

□ 지원 필요성

○ 정부비축탄 및 비축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정부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49	1,714	1,628	△86	△5.0
▪ 인건비	678	794	794	-	-
▪ 물건비	471	920	834	△86	△10
□ 비목	1,149	1,714	1,628	△86	△5.0
▪ 위탁사업비(210-15)	1,149	1,714	1,628	△86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비축장 및 비축탄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7	인건비 8, 물건비 9
'15	16	인건비 8, 물건비 8
'16	15	인건비 8, 물건비 7
'17	15	인건비 8, 물건비 7
'18	13	인건비 8, 물건비 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위탁)

○ 추진경위

- 1975년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국내 무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197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80년부터 인천비축장 등 비축장 설치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석탄비축자산관리비	25	11	11	17	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5			25	25		
	(25)	( )	( )	(25)	(25)	( )	( )
'12년	11			11	11		
	(11)	( )	( )	(11)	(11)	( )	( )
'13년	11			11	11		
	(11)	( )	( )	(11)	(11)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2.0)

- 관리과제 : 석탄수급안정('13. 5월 평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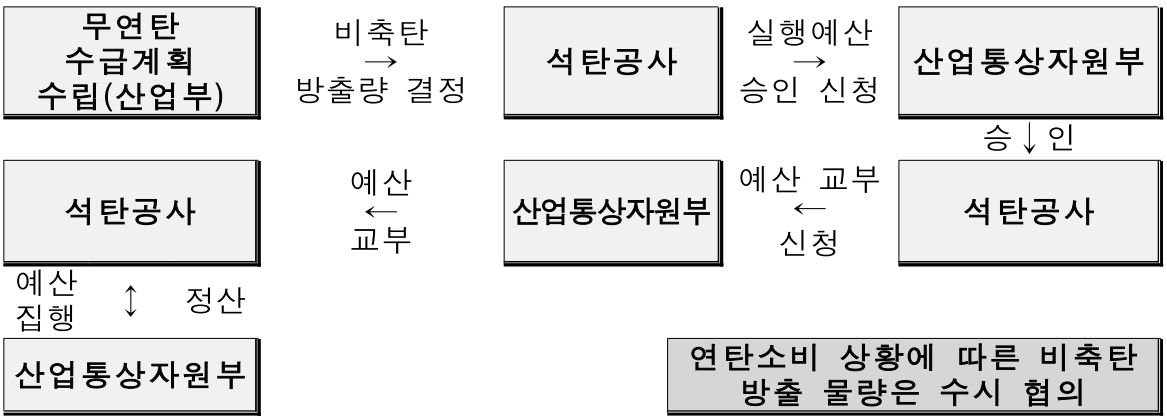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폐광대책비(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폐광대책비	51,436	26,000	67,294	41,294	158.8

* 사업코드 : 110-115-5400-5437-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윤한성, 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사업('89~)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석탄 생산감축에 따른 근로자대책비 : 67,294백만원

- 석탄공사 퇴직근로자(338명) 감축지원금 : 66,769백만원

· 퇴직근로자 전업준비금 17,401백만원

* 51백만원/명 x 338명

· 퇴직근로자 특별위로금 48,988백만원

* 145백만원/명 x 338명

· 퇴직근로자 자녀학자금 380백만원

* 6백만원/명 x 63명

- 경동·태백 생산감축 퇴직근로자 사후대책비 : 525백만원

· ㈜경동 퇴직근로자 자녀학자금 360백만원

* 6백만원/명 x 58명

· 태백광업 퇴직근로자 자녀학자금 165백만원

* 6백만원/명 x 27명

□ 지원 필요성

○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 감축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석탄광업자와 탄광근로자 노동조합간 합의를 전제로 석탄생산 감축과 폐광을 시행하고 있어 적기 지원이 요구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폐광대책비	51,436	26,000	67,294	41,294	158.8
▪ 근로자대책비	51,436	25,340	67,294	41,294	158.8
▪ 광업자대책비		660			
□ 비목	51,436	26,000	67,294	41,294	158.8
▪ 민간경상보조(320-01)	51,436	26,000	67,294	41,294	158.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국가 재정부담 경감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60	▪ 근로자대책비 25,340백만원, 광업자대책비 660백만원
'15	673	▪ 근로자대책비, 사후대책비(학자금) 등 67,294백만원
'16	240	▪ 근로자대책비, 사후대책비(학자금) 등 23,959백만원
'17	235	▪ 근로자대책비, 사후대책비(학자금) 등 23,479백만원
'18	232	▪ 근로자대책비, 사후대책비(학자금) 등 23,244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 지급)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석탄산어법 시행령 제41조(폐광대책비)

○ 추진경위

- '89년부터 폐광지원사업 추진('89년이후 340개 탄광 폐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폐광대책비	17	545	514	260	67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7	-	-	17	17	-	-
	(17)	(88)	( )	(105)	(36)	(37)	(32)
'12년	545	-	-	545	545	-	-
	(545)	(37)	( )	(582)	(544)	(25)	(13)
'13년	514	-	-	514	514	-	-
	(514)	(25)	( )	(539)	(509)	(3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

* 관리과제 : 광산지역진흥,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폐광신청시 : 폐광예비신청(석탄광업자)→폐광대상탄광 선정(광해관리공단, 산업부)→광업권 소멸후 폐광대책비 신청(석탄광업자)→실사 및 폐광대책비 집행(광해관리공단)

○ 생산감축시 : 감축승인신청(석탄광업자)→감축대상선정·승인(광해관리공단, 산업부)→감축지원금 신청(석탄광업자)→실사 및 폐광대책비 집행(광해관리공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광해방지비(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광해방지비	88,000	82,000	86,714	4,714	5.4

* 사업코드 : 21-24-4-110-115-5400-5437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정재욱, 52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연 250개소 이상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 요인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 광산개발 초기단계부터 광해발생의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 방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광해를 복구하여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6,714백만원 요구

▪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 38,781백만원(92개소×421.5백만원)

- 매년 환경부, 농식품부가 통보하는 중금속 오염광산(석면·폐금속 등) 주변의 오염토양 개량·복원사업 92개소

▪ 오염수질개선사업 : 11,134백만원(36개소×309.3백만원)

- 광산 갱내수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36개소

▪ 먼지·소음진동방지사업 : 12,083백만원(30개소×402.8백만원)

- 가행중인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가행광산의 사업신청 수요 등을 감안 30개소 반영

▪ 지반침하방지사업 등 : 15,300백만원(50개소×306백만원)

- 지반침하방지 5,800백만원(33개소), 폐석・광미유실방지 3,000백만원(7개소), 산림복구 4,200백만원(8개소), 폐시설물철거 2,300백만원(2개소)

▪ 사후관리운영 등 : 9,416백만원(30개소×313.9백만원)

-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의 운영・관리(30개소), 광해방지사업 인프라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 지원 필요성

○ 광해는 피해 규모가 크고, 장기간 다양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속한 복구 필요

- 광해는 대부분 원인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폐광산에서 발생되어 방치할 경우 피해확산 우려되어 정부의 주도적인 복구가 필수적

○ 광해방지사업은 환경복원사업의 특성상 다년도 계속사업 비중이 매년 약 80% 수준(사업비 기준)으로,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 예산부족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 중단될 경우 추진사업의 왜곡, 대규모 민원발생, 안전문제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 상존

○ 또한, 매년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법적 의무사항) 신청에 따른 사업비 지원(총사업비의 70%)을 위한 최소의 신규사업 예산 반영 필요

○ 특히, 환경부 등 관계부처 사업 요청광산에 대해 시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중으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수적

- 관계부처 요청 사업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 예산 지원에 한계 등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

* 환경부 등 사업요청 광산 사업추진율이 약 21%(473개 중 99개)에 불과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광해방지비	88,000	82,000	86,714	4,714	5.6
▪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31,562	37,367	38,781	1,414	3.6
▪ 오염수질개선사업	15,041	11,134	11,134	-	-
▪ 먼지·소음진동방지사업	10,646	12,083	12,083	-	-
▪ 지반침하방지사업 등	22,664	12,000	15,300	3,300	27.5
▪ 사후관리운영·인프라조성	8,087	9,416	9,416	-	-
□ 비목	88,000	82,000	86,714	4,714	5.6
▪ 출연금(350-01)	88,000	82,000	86,714	4,714	5.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광해방지정책 목표

- 향후 15년내(2026년까지) 광해방지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
-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예방으로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 추진전략

-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광해방지시스템 구축
-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20	▪ 오염토양개량복원 373.7, 오염수질개선 111.3, 먼지·소음진동방지 120.8, 지반침하방지 등 120.0, 사후관리운영·인프라조성 94.2
'15	867	▪ 오염토양개량복원 387.8, 오염수질개선 111.3, 먼지·소음진동방지 120.8, 지반침하방지 등 153.0, 사후관리운영·인프라조성 94.2
'16	800	▪ 오염토양개량복원 355.0, 오염수질개선 102.0, 먼지·소음진동방지 110.0, 지반침하방지 등 136.0, 사후관리운영·인프라조성 97.0
'17	700	▪ 오염토양개량복원 310.0, 오염수질개선 85.0, 먼지·소음진동방지 95.0, 지반침하방지 등 110.0, 사후관리운영·인프라조성 100.0
'18	600	▪ 오염토양개량복원 260.0, 오염수질개선 70.0, 먼지·소음진동방지 80.0, 지반침하방지 등 90.0, 사후관리운영·인프라조성 10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조, 6조～9조, 11조~12조, 18조, 22조, 41조

○ 추진경위

-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가행광산 폐석유실방지사업」추진('80)
-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시·도 위임사업으로 추진('87)
-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폐탄광 광해방지사업」시행('90)
- 광해방지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00, 석탄산업법 개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06.6)
- 광해방지전담기관으로「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06.6)
- 제1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년) 수립·시행('06.10)
- 광해방지 관련 사업 통합('07.1)
- 제2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년) 수립·시행('11년)

< 광해방지사업 추진체계 개편과정 >

구 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최초 시행	1980년	1990년
지원 대상	가행광산, 휴폐업 일반광산	합리화로 인한 폐탄광
지원 금액 ('06년까지)	2006년까지 2,288억원	2,071억원
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 통합 ('07년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통합하여 시행('07.1월 이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광해방지비	820.0	820.0	880.0	820.0	86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20	-	-	820	820	-	-
	(820)	(-)	(-)	(820)	(820)	(-)	(-)
'12년	820	-	-	820	820	-	-
	(820)	(-)	(-)	(820)	(820)	(-)	(-)
'13년	880	-	-	880	880	-	-
	(880)	(-)	(-)	(880)	(88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정감사 지적사항

-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해복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인근 주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것('11년, '13년 국감)
- 석면광산을 포함한 광해사업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11년 국감)
-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 하천 중금속 오염 심각, 수질정화 등 광해방지사업 조속한 시행 요구('11년, '13년 국감)

○ 언론 지적사항

-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한 광해방지사업 지연 문제 지적 ('13.8.10, KBS 추적60분)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적이고 2차 오염이 적은 상용화 기술 적용

- 광물찌꺼기의 무해화 및 완전처리를 위하여 유가금속회수 후 갱내 충전방식 선택
- 광산 오염수질개선은 박테리아 등을 이용한 자연정화시스템을 선택
- 광산지역 위해성평가, 위험도 예측 모델링 등에 GIS 활용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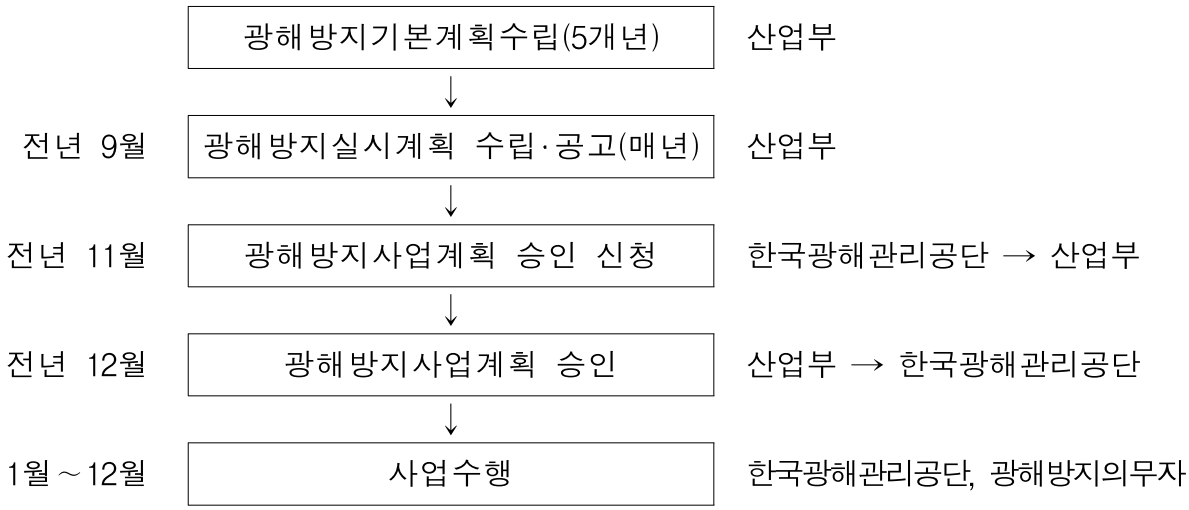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10,000	21,693	32,267	10,574	48.7

* 사업코드 : 110-115-5400-5437-304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남한규, 528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2~2015
총사업비	1,497억원(국비 748.5억원, 지방비 748.5억원)
사업규모	폐광지역 3개도 5개 시·군에서 지역별 경제회생 자립을 위한 7개 특화사업 추진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매칭 : 국비 50%)
사업시행주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2. 사업목적

○ 폐광·감산 등으로 침체된 석탄광산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을 경제자립형 자족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3개도 5개시군에서 추진중인 7개 생산기반시설조성사업 등의 토목·건축공사 사업비 32,267백만원

① (강원 태백)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 : 14,420백만원

- 총 28,840백만원×0.5(국비)=14,420백만원〔토목공사 24,098백만원(부지조성공사 13,574백만원, 도로공사 4,793백만원, 배수시설조성 5,731백만원), 건축공사 703백만원(가압장 420백만원, 오폐수중계펌프장 283백만원), 조경공사 1,468백만원, 감리비 2,571백만원〕

② (강원 삼척)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 4,216백만원

- 총 8,432백만원×0.5(국비)=4,216백만원〔건축공사 7,432백만원(박물관 등 건축물 5,250백만원,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 1,310백만원, 기계 및 소방설비 872백만원), 감리비 1,000백만원〕

③ (강원 정선)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 7,164백만원

- 총 14,328백만원×0.5(국비)=7,164백만원〔건축공사 12,993백만원(가공공장 및 창고 등 건축물 11,793백만원, 전기·통신공사 1,200백만원), 조경공사 1,335백만원〕

④ (강원 정선) 신동 묵은지마을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 603백만원

- 총 1,206백만원×0.5(국비)=603백만원〔토목공사 476백만원(부지조성공사 170백만원, 주차장공사 306백만원), 건축공사(전시판매시설) 200백만원, 가공(전처리)시설 530백만원〕

⑤ (강원 정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 83백만원

- 총 166백만원×0.5(국비)=83백만원〔조경공사 166백만원〕

⑥ (전남 화순) 전통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 3,609백만원

- 총 7,218백만원×0.5(국비)= 3,609백만원〔토목공사 5,115백만원(부지조성공사 3,869백만원, 도로공사 1,130백만원, 주차장공사 116백만원), 조경공사 812백만원, 건축공사 1,291백만원〕

⑦ (경북 문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172백만원

- 총 4,344백만원×0.5(국비)=2,172백만원〔도로공사 4,022백만원, 감리비 32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적용시한('25년)까지 국비 확보를 통해 폐광지역을 경제자립형 도시로 육성

- 석탄산업의 정리로 인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전환되어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 연도인 '15년까지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한 국고 재정지원(50%)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10,000	21,693	32,267	10,574	48.7
▪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900	4,230	14,420	10,190	240.8
▪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614	4,073.5	4,216	142.5	3.4
▪ 산채·리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316	4,047	7,164	3,117	77.0
▪ 신동묵은지 마을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1,670	673	603	△70	△10.4
▪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1,780	330.5	83	△247.5	△74.8
▪ 전통식품육성 산업단지 조성	1,200	2,691	3,609	918	34.1
▪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3,520	5,648	2,172	△3,476	△61.5
□ 비목					
▪ 지자체자본보조(330-03)	10,000	21,693	32,267	10,574	48.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육성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유도

- 탄광지역의 고유 자원 활용 및 내생적 발전 유도를 통한 폐광지역 자생력 극대화 추진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16	▪ 폐광지역 3개시도 9개사업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등(432×50%)
‘15	322	▪ 폐광지역 3개시도 7개사업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등(644×50%)
‘16	0	
‘17	0	
‘18	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2015년까지 연장(’15.3월)
- 해당 지자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발굴(’10.7월～9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KDI 연구용역수행, ’11.4월～9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	70	100	216	32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	(-)
’12년	70	-	-	70	70	-	-
	(70)	(-)	(-)	(70)	(17)	(53)	(-)
’13년	100	-	-	100	100	-	-
	(100)	(53)	(-)	(153)	(82)	(68)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 '13년 예산안 지경위 검토보고 :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B/C비율이 1.27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개별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 실행 계획을 보완하여 경제성을 제고시키는 조정 필요

- '13년 산업위 결산 검토보고 : 일부 집행 부진사업의 보조금이 재재이월되거나, 용도외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외부기관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

* 관리과제 : 광산지역진흥,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경우, 폐광지역 재정지원을 40년 동안 실시

(5) 사업추진절차

○ 국고보조금 교부기준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교부 신청(해당 도지사) ⇒ 사업교부 결정(산업통상자원부) ⇒ 국고보조금 교부(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도지사) ⇒ 사업수행(해당 지자체)

- 교부기준 공고 근거 :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면 집행계획 공고에 사업비 교부신청 절차 등을 공고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2011.4.20～2011.9.20(5개월간)

* 7개 시·군 1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집단사업(Package Project)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편익/비용분석(B/C) : 1.27 (1.0 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 인정)
- 종합적정책분석(AHP) : 0.674 (0.5 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 인정)

대한석탄공사출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40,350	△12,650	△23.9

* 사업코드 : 110-115-5400-5439 - 302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윤한성, 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부터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4년까지 기출자액 2,650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대한석탄공사

2. 사업목적

○ 차입금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에 대한 출자 지원을 통해, 석탄공사의 부채증가 속도를 늦추고 중장기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순차입금 1,410,300백만원에 대한 이자 40,350백만원

② 1,410,300백만원* × 2.86% = 40,350백만원

* 부채감축계획상 '14~'15년 순차입금 평균

1,410,300백만원 = (1,381,900백만원 + 1,438,700백만원) / 2

□ 지원 필요성

○ 석탄산업의 유지·보호를 위해 석탄공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및 서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석탄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발행하는 영업손실 등으로 석탄공사의 차입금 증가
- 출자지원을 통해 석탄공사의 신용등급을 유지시켜 차입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공사의 부채증가 속도를 늦추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40,350	△12,650	△23.9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40,350	△12,650	△23.9
□ 출자금(합계)	53,000	53,000	40,350	△12,650	△23.9
▪ 출자금	53,000	53,000	40,350	△12,650	△23.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출자를 통해 누적 금융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전하여 석탄 생산원가의 증가를 억제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석탄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차입금의 증가 억제 및 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30	▪ 1,413,057백만원×3.77%
'15	403.5	▪ 1,410,300백만원×2.86%
'16	383	▪ 1,502,102백만원×2.55%
'17	383	▪ 1,534,018백만원×2.50%
'18	326	▪ 1,571,041백만원×2.0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2항3호
- 석탄산업법 제27조1항5호
- 대한석탄공사법 제4조1항

○ 추진경위

- 석탄공사는 '89년이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한 구조조정,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무연탄 판매가격 제한에 따른 경영 손실 등으로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재무구조 악순환 상태
  * 13년말 부채 15,032, 차입금 14,311, 자본 △8,247
- '01년부터 금융비용에 의한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석탄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작
- 그간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14~'17년 중장기재무계획 보다 부채증가를 30% 축소하기 위한 추가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조정('14.5월) 등 자구노력을 추진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대한석탄공사출자	530	530	530	530	40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30			530	530		
	(530)	( )	( )	(530)	(530)	( )	( )
'12년	530			530	530		
	(530)	( )	( )	(530)	(530)	( )	( )
'13년	530			530	530		
	(530)	( )	( )	(530)	(53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국정감사 : 공사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유휴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조정, 재해증가 분석 및 대책마련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결과

- ’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비 부채증가 30% 축소를 위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14.2)하여 추진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LPG소형저장탱크보급(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4,290	6,990	9,815	2,825	40.4

* 사업코드 : 21-24-4-110-115-5400-5443-304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가스산업과장(이호현, 044-203-5230), 사무관(황호준, 52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18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사회복지시설 : '15년 360개소('13~'17년 5년간 1,800개소) · 농어촌 마을 : '15년 35개소 [9개 광역도(道)별 3~4개소]
지원조건	· 복지시설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8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농어촌마을 :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LPG산업협회

2.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

○ LPG 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에 준하는 경제성과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4,26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이용시설과 학교 포함) 360개소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 (정부 : 복지시설 = 8 : 2)

- 산출근거 : 360개소× 1,412만원(평균시공비)× 80%(국비보조)
+ 사업운영비 200백만원 = 4,265백만원

②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 지원 : 5,250백만원

- 30가구 이상 마을 35개 지역에 LPG 저장탱크·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 LPG소형저장탱크, 마을단위 배관망 등 설치 지원 (정부:지자체:사용자=5:4:1)
* 9개 광역도(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별 3~4개 마을 지원

- 산출근거 : 35개 마을× 3억(LPG탱크·배관망)× 50%(국비보조)= 5,250백만원

③ 군단위지원 타당성연구조사 : 300백만원

- 경제성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군(郡)지역 읍·면 단위에 대한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산출근거 : 읍·면 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주민 등의 연료비 부담 완화

- (현 황)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 도시지역보다 비싼 연료(LPG용기, 등유 등) 사용 → 도농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 심화

- (기대효과)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LPG 공급가격을 낮춤(약30%)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 (충전소-판매소) →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 (벌크 공급)

<용기공급 vs 벌크공급 소비자 공급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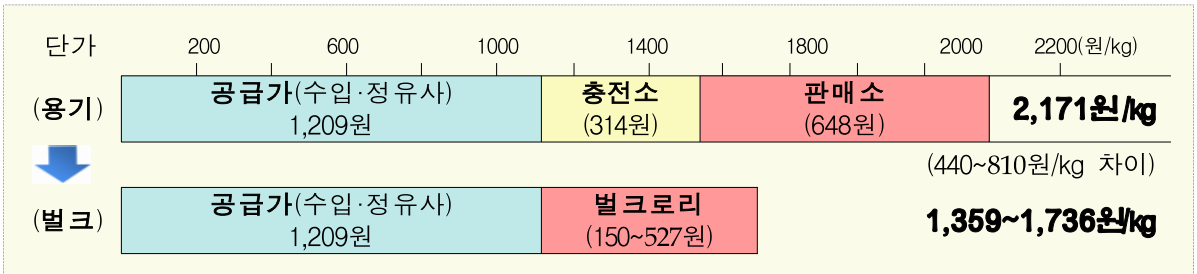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한국LPG산업협회 조사자료 ('14. 5월말 기준)

○ LPG 사용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

- (현 황) LPG 고무호스 연결 시설은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LPG 용기 수시교체, 배달지연 등에 따른 사용자 불편

- (기대효과) LPG 벌크차량을 통해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이 가능(도시가스에 준하는 끊김없는 가스 공급)하며, LPG 용기 시설 대비 사고예방 및 안전성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4,290	6,990	9,815	2,825	40.4
▪ 사회복지시설 지원	4,290	4,290	4,265	△25	△0.58
▪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	2,700	5,250	2,550	94.4
▪ 군단위지원 타당성연구조사	-	-	300	300	순증
□ 비목	4,290	6,990	9,815	2,825	40.4
▪ 민간경상보조(320-01)	225	225	200	△25	△11.1
▪ 민간자본보조(320-07)	4,065	4,065	4,065	-	-
▪ 자치단체보조(330-03)	-	2,700	5,250	2,550	94.4
▪ 연구개발비(260-00)	-	-	300	3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13~'18년까지(6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마을 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 지원

* 농어촌 마을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공급 시스템 설치 지원

○ LPG-LNG 균형발전을 통한 1차 국가에너지원 적정Mix 정책 유지 필요

* 연구용역『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경연, '12.12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9.9	▪사회복지시설 4,290백만원 <360개소×1,412(탱크설치비)×80%보조 + 운영비 200> ▪농어촌 마을단위 2,700백만원 <18개 마을×300(탱크설치비LPG탱크·배관망비)×50%보조>
'15	98.2	▪사회복지시설 4,265백만원 <360개소×1,412(탱크설치비)×80%보조+운영비 200> ▪농어촌 마을단위 2,700백만원 <35개 마을×300(탱크설치비LPG탱크·배관망비)×50%보조> ▪군단위지원 타당성연구조사 300백만원
'16	75.7	▪사회복지시설 4,265백만원 <360개소×1,412(탱크설치비)×80%보조+운영비 200> ▪농어촌 마을단위 3,300백만원 <22개 마을소×300(탱크설치비LPG탱크·배관망비)×50%보조>
'17	75.7	<상동>
'18	75.7	<상동>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 추진경위

-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에경연, '11.12월)에서 적정 수준의 LPG산업기반 유지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복지시설 등에 대한 LPG 패키지시스템 지원 제안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회복지시설 대상 보급사업 시작('13년)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에경연, '13.9월)에서 도시가스 배관연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급 제안

- LPG 업계에서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을 통해 농어촌 1개 마을에 대한 LPG 배관망 공급 시범사업 실시('13.5~10월)

  * LPG 업계(수입사 E1, SK가스)에서 '12년도부터 150억원 기금 조성·운영 중(바우처, 장학금 등 지원)

- '14년 농어촌 마을단위 18개소 보급사업 시작(9개 광역도당 2개소씩 시범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	-	42.9	69.9	9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	(-)
'13년	42.9	-	-	-	42.9	-	-
	(42.9)	(-)	(-)	(-)	(42.9)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13, '14년 국정감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영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소형저장탱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공급으로 보급이 활성화됨

- 일본의 경우 가스의 53%를 LP가스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저장 탱크는 16만개 이상 설치·보급 중(2006년)

- 영국은 LP가스 공급물량의 약60%를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저장 탱크는 8만개 이상 설치·보급 중(2006년)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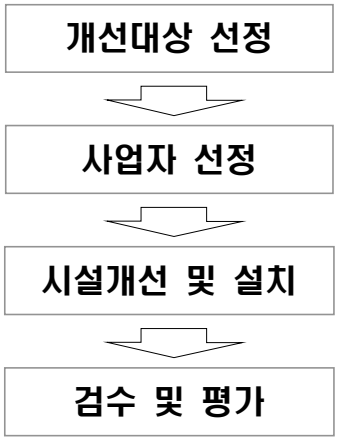

- 대상추천 → 검토 → 대상 확정
- 사업자 공고 → 심사 → 사업자 선정
- 설계(사업자) → 시공 → 자체검사
- 검수(한국LPG산업협회) → 비용 지불 → 사업 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참고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1 소형 LPG저장탱크 활용 이해도

가. LPG 배관망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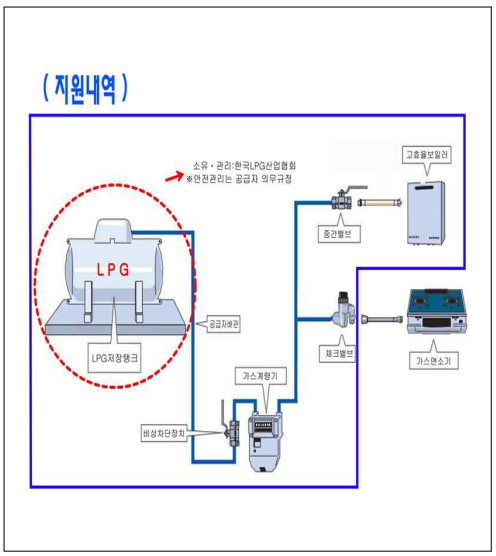

나. 개선사업 전·후 비교도

2 마을 단위 시범사업 사례 조감도

3 LPG공급설비 규모별 개요

○ 용 량 : 500kg 이하, 1.0톤, 2.0톤, 2.9톤등 총 4종류

500kg 이하	1.0톤
2.0톤	2.9톤

4 주요설비 내역

명 칭	사 진	기 능
소형LPG저장탱크		0.2톤-2.9톤까지 시설개선 대상의 적정 사용량에 맞춰 공급
방호조치		▪ 소형저장탱크가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
경계책		▪ 제3자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경우 높이 1m이상의 경계책을 만들고 출입구 설치
기화기/조정기		▪ 기화장치 : 기온·사용량에 따라 프로판이 적절히 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 ▪ 조정기 : 가스출구부의 압력을 조정
LPG벌크로리 참고사진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62,000	74,000	75,000	1,000	1.4

* 사업코드 : 21-24-5-110-115-5400-5435-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가스산업과장(이호현, 044-203-5230), 사무관(조현훈, 523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7~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도시가스사의 배관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지원 ○ 신규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5백만원(복지시설 1,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융자), 지원조건(아래표 참조)
사업시행주체	공급배관(석유공사, 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석유공사, 농협)

구 분	지원비율	지원조건
공급배관 융자	건설비의 80%, 사업자 당 70억원 한도	국고채3년유통물수익율 - 1.25%p,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
사용자시설 융자	설치비의 100%, 가구당 500만원 한도 (복지시설 1,000만원)	1.5%고정금리, 1년거치 2년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2. 사업목적

○ 도시가스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의 배관건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0백만원

- 산출내역 : 도시가스사 투자계획 6,018억원('15년도) × 지원비율 10.0%

< 2015년 도시가스사 공급배관건설 사업규모 >

사업목표(전망)		시설투자계획		에특회계 융자	총투자 대비 융자비율
공급가구수	도시가스 보급율	신규 공급배관망	시설투자 총 액		
449천가구	('13) 76.4% → ('15) 78.6%	1,719㎞	6,018억원	600억원	10.0%

②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 도시가스 신규사용 가구의 사용자 시설(내관, 보일러 등)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0백만원

- 산출내역 : 전국 약 3,750가구 × 가구당 약 400만원

□ 지원 필요성

○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투자 한계에 따라 정부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조기 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또한 도시가스사에서 투자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62,000	74,000	75,000	1,000	1.4
▪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52,500	59,000	60,000	1,000	1.7
▪ 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9,500	15,000	15,000	-	-
□ 비목					
▪ 기타민간융자금(450-04)	62,000	74,000	75,000	1,000	1.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의 공급배관 건설에 대한 융자 지원과 농·어촌/지방 등의 우선배정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

*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 ('14년) 77.5% → ('18년) 약 81% 수준

○ 신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초기 시설투자비용(내관, 보일러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4,000	▪ 공급배관건설 590억원(투자계획 6,018억원× 9.8%수준) 사용자시설 150억원(3,750가구×평균 4백만원)
'15	75,000	▪ 공급배관건설 600억원(투자계획 6,018억원× 10.0%수준), 사용자시설 150억원(3,750가구×평균 4백만원)
'16	70,000	▪ 공급배관건설 600억원(투자계획 6,018억원× 10.0%수준), 사용자시설 100억원(2,500가구×평균 4백만원)
'17	70,000	▪ 공급배관건설 600억원(투자계획 6,018억원× 10.0%수준), 사용자시설 100억원(2,500가구×평균 4백만원)
'18	70,000	▪ 공급배관건설 600억원(투자계획 6,018억원× 10.0%수준), 사용자시설 100억원(2,500가구×평균 4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특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 에특회계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국정과제 52번)

○ 추진경위

- '87년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배관 건설자금 융자 지원
- '94년까지 석유사업기금으로 지원, '95년부터 에특회계로 통합 운영
- '09년부터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융자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620	620	620	740	7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620	-	-	620	620	-	-
	(620)	(-)	(-)	(620)	(620)	(-)	(-)
'12년	620	-	-	620	620	-	-
	(620)	(-)	(-)	(620)	(620)	(-)	(-)
'13년	620	-	-	620	620	-	-
	(620)	(-)	(-)	(620)	(62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 국감 조치요구)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 (조치결과) '13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관융자 우선 배정 및 사용자시설 융자 상환조건의 다양화를 통해 부담을 완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 : 계획수립 및 지침공고(산업부) → 융자신청 및 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지사)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융자대여 및 대출실행(한국석유공사, 시중은행)

○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 계획수립 및 지침공고(산업부) → 융자 신청 및 추천(도시가스사용자, 시도지사) → 융자대여 및 대출시행(한국석유공사, 농협)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근거 법령조문

참고 관련근거 법령조문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내지 제6조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회계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3조(사업의범위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제4조(융자조건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2,000	2,000	2,000	-	-

* 사업코드 : 21-24-5-110-115-5400-5438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채희봉),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주무관(임하영, 044-203-528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6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96 ~ 현재 213개업체 지원
지원조건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 이내, 변동금리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변동금리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 7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탄광에만 의존하던 지역경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비 20억원

- 400백만원(업체당 평균지원액) * 5개업체

□ 지원 필요성

○ 석탄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았던 폐광지역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및 삶의 질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 사업추진 이래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창출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 또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폐광지역 기업유치의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리금 연차적 상환으로 사업선호도가 높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2,000	2,000	2,000	-	-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2,000	2,000	2,000	-	-
□ 비목	2,000	2,000	2,000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000	2,000	2,0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유도
- 폐광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기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하여 장기적 폐광지역 경제안정화

○ 폐광지역 주민생활 향상
- 폐광지역의 중소기업 유입 및 안정적 확장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매출액 향상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활력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0	▪400백만원(업체당평균지원액) * 5개업체
‘15	20	▪400백만원(업체당평균지원액) * 5개업체
‘16	19	▪400백만원(업체당평균지원액) * 4.75개업체
‘17	19	▪400백만원(업체당평균지원액) * 4.75개업체
‘18	16.2	▪400백만원(업체당평균지원액) * 4.05개업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09호, ‘14.10.29)

○ 추진경위

- 최초 시작연도 : 1996년
-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지역의 공동화현상 및 경기침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1995년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12.29)
- 1996년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71호, ‘96.8.16)
- 1996년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사업 개시
- 1998년 : 대출방식 전환(직접대출 → 대리대출)
- 2012년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3호, ‘12.11.12)
- 2014년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9호, ‘14.10.29)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3	40	20	20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3			43	43		
	(43)	( )	( )	(43)	(43)	( )	( )
'12년	40			40	40		
	(40)	( )	( )	(40)	(40)	( )	( )
'13년	20			20	20		
	(20)	( )	( )	(20)	(2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

- 관리과제 : 광산지역진흥융자('13. 5월 평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융자계획 공고 (광해관리공단)
- 신문공고

→ 융자신청서 접수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환경성 검토 및 도 제출

→ 추천서 발급 (도)
-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해관리공단 송부

→ 현장실사 및 예비심사 (광해관리공단, 지자체)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조사
- 소요자금 사정

→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지원대상업체 적격여부, 융자지원액 등 심의

→ 지원대상업체 통보 (공단)
- 산업부 및 지자체, 대리대출취급은행, 업체별 통보

→ 약정체결 (은행)
- 담보물 평가
- 대출약정 체결

→ 자금지급 (은행)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전자금 : 일시지급

→ 사후관리
- 원리금 상환
- 업체 중간점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21,439	538,073	805,698	267,625	49.7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32,500	250,000	500,000	250,000	100.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6,750	15,203	21,160	5,957	39.2
○에너지진단보조	2,671	2,220	2,109	△111	△5.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180,657	173,113	187,223	14,110	8.2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1,053	1,153	873	△280	△24.3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32,823	47,131	47,961	830	1.8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15,254	13,759	12,166	△1,593	△11.6
○기후변화협약대응	10,873	11,054	10,501	△553	△5.0
○인센티브지급방삭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3,449	2,750	2,600	△150	△5.5
○지역에너지절약	35,409	21,690	21,105	△585	△2.7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32,500	250,000	500,000	250,000	100.0

* 사업코드 : 21 - 24 - 5 - 110 - 115 - 5100 - 5141 - 302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명(이상훈, 044-203-5360), 서기관(김정기, 536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0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2000년~2013년까지 기투자액 : 75,326억원)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 융자('14년 기준) - 지원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대기업인 경우 제외)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을 도모

○ 중소기업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ESCO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산업 활성화 추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ESCO 투자사업 : 225,000백만원

-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을 위한 사업비
(2014년) 935백만원×122건×100% → (2015년) 964백만×234건×100%

② 목표관리제 투자사업 : 50,000백만원

-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14년) 1,827백만원×13건×100% → (2015년) 1,934백만×26건×100%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 : 225,000백만원

- 기타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14년) 197백만원×558건×100% → (2015년) 169백만×1,332건×100%

구 분	'14예산	'15요구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ESCO투자사업	중소기업 대상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대기업 제외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목표관리제투자사업	중소기업 대상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대기업 제외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절약시설투자사업	중소기업 대상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대기업 제외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나

* 절약은 '20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의 20%이상 감축할 수 있는 「제5의 에너지(Fifth Fuel)」로 강조(타임誌 '09년 신년호)

- 에너지사용자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열위에 있고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여력이 취약

○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속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32,500**	**250,000**	**500,000**	**250,000**	**100.0**
▪ ESCO투자사업	120,000	115,000	225,000	110,000	95.7
▪ 목표관리제투자사업	80,000	25,000	50,000	25,000	100.0
▪ 절약시설투자사업	132,500	110,000	225,000	115,000	104.5
□ 비목	**332,500**	**250,000**	**500,000**	**250,000**	**100.0**
▪ 융자금(450-04)	332,500	250,000	500,000	250,000	1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금 지속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500	▪ ESCO투자 : 1,150 ▪ 목표관리제 : 250 ▪ 절약시설 : 1,100
'15	5,000	▪ ESCO투자 : 2,250 ▪ 목표관리제 : 500 ▪ 절약시설 : 2,250
'16	5,000	▪ ESCO투자 : 2,250 ▪ 목표관리제 : 500 ▪ 절약시설 : 2,250
'17	5,000	▪ ESCO투자 : 2,250 ▪ 목표관리제 : 500 ▪ 절약시설 : 2,250
'18	5,000	▪ ESCO투자 : 2,250 ▪ 목표관리제 : 500 ▪ 절약시설 : 2,25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대상기관)

○ 추진경위

- 1, 2차 Oil Shock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79.12)하고, 동법에 따라 '80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2008.8.15.)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12)에 반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6,018	5,298	3,325	2,500	5,0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09결산 지경위·예결위 시정요구, '12년 심층평가)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개선책을 마련할 것

○ ('11년도 국정감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조치결과) '13년부터 대기업은 정책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정책금융공고 추진 제도) JFC(Japan Finace Corporation)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환경·에너지 대책자금' 중 융자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촉진을 도모(약 50개의 에너지절약 설비 대상)

○ (ESCO*)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ESCO가 활발히 보급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감(효율개선) 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비용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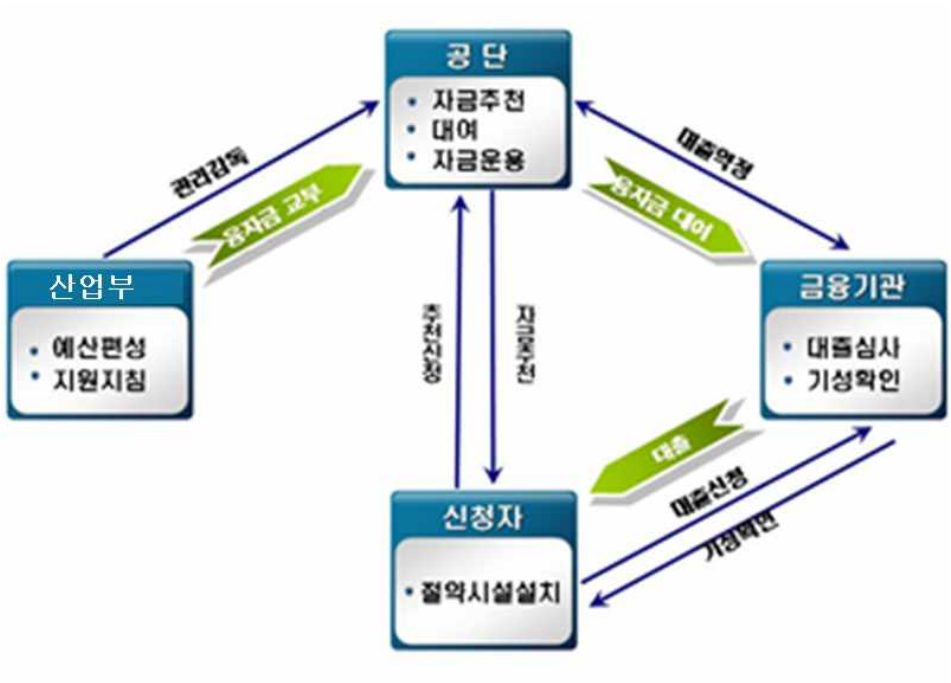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 : 관리감독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수행기관인 공단에 해당 자금을 교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을 제정하여 관리·감독

《 에너지관리공단 : 융자지원 》
공단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신청을 접수하여 자금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자금추천 및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

《 금융기관 : 대여·대출 》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후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금을 최종 대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6,750	15,203	21,160	5,957	39.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9 - 313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명(이상훈, 044-203-5360), 서기관(김정기, 536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283억원('14년까지 기투자액)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출연 ▪(IT기반 ESCO 사업) 에너지사용자·ESCO컨소시엄 : 50%이내 ○ 이차보전 ▪(민간융자 이차보전) 중소·중견기업은 정책자금과의 금리차이 100% 보전, 대기업은 1.5%p 보전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 확대, 국제적 기후변화 규제 강화,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단순 설비교체가 아닌 I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 사업영역을 발굴·확산

- 에너지절약시설 민간융자금 투자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효율 향상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IT 기반 ESCO 사업) ESCO 확산을 위해 적용 가능한 에너지절약분야 과제 발굴 및 지원 2,000백만원

- (2014년) 816백만원×5개과제×50% → (2015년) 667백만원×6개과제×50%

② (이차보전) 민간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비 19,160백만원

- (2014년) 기대출 9,600+신규대출 3,563 → (2015년) 기대출 19,160

○ 민간자금 기대출금(‘11~’14년)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19,160백만원

- ‘11년도 대출액(37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74백만원
  * 37억원 × 2% × 1년 = 74백만원
- ’12년도 대출액(283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566백만원
  * 283억원 × 2% × 1년 = 566백만원
- ‘13년도 대출액(2,677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7,570백만원

<목표관리 및 절약 사업>
* 347억원(대기업) × 2% × 1년 = 694백만원
* 582억원(중견,기타) × 3.45% × 1년 = 2,008백만원
* 263억원(중소기업) × 3.70% × 1년 = 974백만원
<ESCO 사업>
* 755억원(대기업) × 2% × 1년 = 1,510백만원
* 253억원(일반고정) × 2.45% × 1년 = 619백만원
* 477억원(일반변동) × 3.70% × 1년 = 1,765백만원

- ‘14년도 대출액(3,5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10,950백만원

<목표관리 및 절약 사업>
* 268억원(대기업) × 1.5% × 1년 = 402백만원
* 698억원(중견,기타) × 3.45% × 1년 = 2,409백만원
* 733억원(중소기업) × 3.70% × 1년 = 2,712백만원
<ESCO 사업>
* 370억원(대기업) × 1.5% × 1년 = 555백만원
* 336억원(일반고정) × 2.45% × 1년 = 822백만원
* 1,095억원(일반변동) × 3.70% × 1년 = 4,0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현실적 대안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에너지절약산업 활성화 필요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소비효율개선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비용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

- (IT기반 ESCO 신사업) 단순 고효율 설비 등 교체 뿐만 아니라 IT를 접목한 에너지절약 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절약산업의 신 시장 창출

< 에너지 절약관련 VIP 말씀 >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고 IT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 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주기 바람 (제24회 국무회의, '13. 5. 28.)

- (민간금융 이차보전) 에너지절약시설 민간융자금의 기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6,750	15,203	21,160	5,957	39.2
▪ IT기반 ESCO사업	1,800	2,040	2,000	△40	△2.0
▪ 민간자금 이차보전사업	4,950	13,163	19,160	5,997	45.6
□ 비목	6,750	15,203	21,160	5,957	39.2
▪ 출연금(350-01)	1,800	2,040	2,000	△40	△2.0
▪ 이차보전금(320-05)	4,950	13,163	19,160	5,997	45.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발굴된 IT기반 신사업모델의 현장적용가능성 및 에너지절감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사업모델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민간융자금 투자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51.6	▪ IT 기반 ESCO 신사업 : 20억원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31.6억원
‘15	211.6	▪ IT 기반 ESCO 신사업 : 20억원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91.6억원
‘16	212.3	▪ IT 기반 ESCO 신사업 : 30억원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82.3억원
‘17	184.5	▪ IT 기반 ESCO 신사업 : 30억원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54.5억원
‘18	145.7	▪ IT 기반 ESCO 신사업 : 30억원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15.7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추진경위

- (‘10년 10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절약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11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자금 이차보전, IT기술 기반 ESCO 신사업 모델 발굴 확산 사업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27.5	42.5	67.5	152.03	21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7.5	-	-	27.5	12.8	-	14.7
	(27.5)	(-)	(-)	(27.5)	(12.6)	(-)	(14.9)
'12년	42.5	-	7	35.5	33.6	-	1.9
	(42.5)	(-)	(7)	(35.5)	(31.3)	(-)	(4.2)
'13년	67.5	-	-	67.5	67.5	-	-
	(67.5)	(-)	(-)	(67.5)	(43.2)	(-)	(24.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11년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15억원 중 3,400만원만 집행되어 부진

○ (조치사항) 민간융자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4.55% → '12년 4%), 민간융자자금 지원 비율 확대(소요자금의 40% → 100%), 민간융자자금 지원대상 확대(대기업 → 대기업+중소기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IT기반 ESCO 사업 >

○ 2014년도 ICT기반 ESCO 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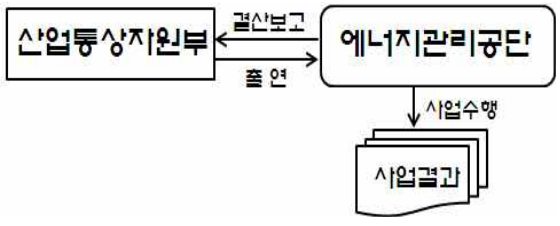

① 정부출연(산업부 ⇒ 에너지관리공단)
②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산업부)
③ 과제별 사업수행
(에너지관리공단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④ 사업평가 및 보고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부)

< 이차보전 >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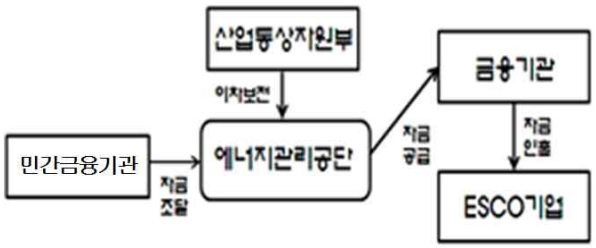

① 민간융자금 조성
(에너지관리공단이 민간금융기관에서 차입)

② 민간융자금 대여
(에너지관리공단⇒ 금융기관)

③ 민간융자금 대출(금융기관⇒사업자)

④ 이차보전 지원
(산업부⇒에너지관리공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15년 “IT기반 ESCO 신사업 발굴” 추진 방향

참고 '15년 "IT기반 ESCO 신사업 발굴" 추진 방향

□ **(사업개요)** ICT기반 ESCO사업을 통한 EE시스템 효용성을 증대하고, ESCO의 IT 활용역량 강화 및 사업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사업방향)** 사업모델 발굴단계에서 현장 적용, 실증 단계의 시범사업에서 본격적인 도입, 확산 단계로 전환

□ **(추진현황)** '11년부터 LED 디밍, IDC(인터넷데이터센터), EMS 등 **IT를 접목한 에너지절약시설 구축** 과제 발굴·지원

* '11년-4개(12.5억원), '12년-7개(27.5억원), '13년-6개(18억원), '14년-5개(20.4억원)

□ **(추진계획)**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미적용 분야 대상를 중심으로 공모에 의한 지원과제 발굴

○ **(클라우드 EMS)** 유사 사업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FEMS, BEMS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모델 발굴

<클라우드 기반 (원격) EMS>

- (개념) 다수의 건물·공장 에너지 관리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원격 인터넷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 수행
- (장점) 규모의 경제(저비용 고효과)를 통한 보급 촉진 용이
- (해외사례) 슈나이더의 EOO(Energy Operation Online), 존슨콘트롤의 Panoptix Building Energy Cloud Platform, 하니웰의 애튠(Attune)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등

○ **(단일 사이트 EMS)** 산업부문(FEMS)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분야의 사업 모델을 발굴하되, 미적용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지원대상)** ESCO, 에너지사용자, ICT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 ESCO는 반드시 참여,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

○ **(지원방식)** 총 과제비의 5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며, 4~5개 과제 선정 예정(매칭펀드 방식)

* 총과제비 규모·기업규모·업종·에너지절감율 등 과제수행계획 종합평가

□ **(과제선정)** 공모를 통해 신청과제를 접수받고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사업자 과제신청 → 서면검토 (KEMCO, NIPA) → 과제발표 및 평가 (평가위) → 최종심의·선정(심의위) → 최종 수행 과제 선정

에너지진단보조(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진단보조	2,671	2,220	2,109	△111	△5.0

* 사업코드 : 21-24-4-110-115-5100-5139-303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김기일, 536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70%)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1만toe미만의 의무진단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의무진단보조

- 의무진단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1만toe미만인 중소기업의 진단비용 지원을 위해 2,109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19.3백만원 × 70% × 155개사업장

□ 지원 필요성

○ ‘07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시행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활성화와 에너지절감·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 유도

○ 그러나,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비용보조가 반드시 필요

- 중소기업은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진단비용 대비 에너지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에너지비용 대비 진단비용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 진단의무화에 따른 진단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진단보조	2,671	2,220	2,109	△111	△5
▪ 의무진단보조	2,234	1,891	2,109	218	11.5
▪ 자율진단보조	437	-	-	-	-
▪ 교육시설진단보조	-	329	-	△329	순감
□ 비목	2,671	2,220	2,109	△111	△5
▪ 민간경상보조(320-01)	2,671	2,220	2,109	△111	△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진단을 의무화하여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도모

- (민간부담)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진단비용은 민간이 자체부담

- (정부보조) 에너지절감·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체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비용을 정부가 보조(70%)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효율적 활용과 이를 통한 에너지성능 개선 등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정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2.2	▪ (의무진단) 1,891백만원=18.9백만원*70%*143개소 ▪ (교육시설진단) 329백만원=4.7백만원*70%*100개소
‘15	21.1	▪ (의무진단) 2,109백만원=19.3백만원*70%*155개소
‘16	20.0	▪ (의무진단) 2,004백만원=20.0백만원*70%*140개소
‘17	20.0	▪ (의무진단) 2,004백만원=20.0백만원*70%*140개소
‘18	17.0	▪ (의무진단) 1,703백만원=20.5백만원*70%*120개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너지 진단비용의 지원)

○ 추진경위

- ’07.1월 :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시행
  * 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진단의무화 결정(’04.12.2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05.12.23 공포, ’06.6.24 시행)
- ’09.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비율 확대(70%→90%)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대책 보고」(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08.8.24)
- ‘10.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2천~5천toe→2천~1만 toe)와 2천toe미만 중소기업(2,000개소) 진단비용 지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 보고」(‘09.3월)
- ‘12.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비율 축소(90%→7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진단보조	38.0	27.2	26.7	22.2	2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자율진단보조 예산(459백만원)을 '에너지정책홍보' 예산으로 전용

○ ('13년) 중소기업의 자부담 회피, 소규모 간이진단에 대한 진단신뢰성 우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의 신청 저조에 따른 지원물량 감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8.0			38.0	38.0		
	(38.0)	( )	( )	(38.0)	(38.0)	( )	( )
'12년	27.2		△4.6	22.6	22.6		
	(22.6)	( )	( )	(22.6)	(22.6)	( )	( )
'13년	26.7			26.7	26.7		
	(26.7)	( )	( )	(26.7)	(17.0)	( )	(9.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Energy Policy Act 2005
- 에너지부에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전략과 개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수행 지원

○ 일본
- 에너지진단의무제도와 같은 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省에너지센터에서 무료진단 전액지원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이상~1,500㎘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진단을 받지 않은 설비에 대해 지원
  *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500㎘이상 사업자도 지원

○ 호주 : EEO법(Energy Efficicncy Opportunities Legislation, '06.7월)
-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TJ(12천toe)이상인 사업장에게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인 EEO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 부여
  * '12년 기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TJ 사업장은 220여개
- EEO 프로그램 참여한 사업장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과 진단결과에 개선활동을 수행

○ EU : DIRECTIVE 2012/27/EU

- 에너지효율 의무화제도로 회원국들의 중소기업에게는 권장, 대기업에게는 정부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15년 12월 5일까지 최초 진단을 받고, 매 4년 주기로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 진단의무화 대상 사업장중 에너지경영 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제외 가능

(5) 사업추진절차

○ 의무진단보조(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1만toe미만)

구분	주 체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진단기관에 에너지진단 신청
↓		
②	진단기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③	진단기관	진단계약 및 일정통보
↓		
④	공단	진단현장 확인 후 선급금(계약금액의 50%이내) 지급
↓		
⑤	진단기관	진단완료 후 진단보고서 제출
⑥	공단	종합평가(보고서 평가, 고객설문조사 등) 및 잔액지급
↓		
⑦	진단기관	진단사업장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실시(3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80,657	173,113	187,223	14,110	8.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700 - 5701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허정민, 536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2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 변화 대응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에너지수요관리융합 기술개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에너지효율향상 : ('14) 133,455 → ('15) 116,429백만원

-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분야[1],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2]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업종 관련 핵심 효율향상 기술개발

1) 그린카, 히트펌프,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건물효율, 고효율신광원 분야
2) 석유화학공정 및 혁신제철기술, 차세대건조기, 고효율 염색공정, 미활용에너지, 가전기기, 고효율 정보화기기, 전동기, 열교환기, 유체기기, 에너지소재, 연소기기 분야 등

- '15년 계속과제(85,163백만원 : 101개 과제 x 843.2백만원), '15년 신규과제 (31,266백만원 : 33개 과제 × 947.4백만원)

② 가스안전 : ('14) 8,500 → ('15) 9,000백만원

- 가스(LNG, LPG 등)분야 안전 강화를 통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가스안전고도화 기술개발
- '15년 계속과제 (7,650백만원 : 15과제 × 510백만원), '15년 신규과제 (1,350백만원 : 5과제 × 270백만원)

③ 온실가스처리 : ('14) 26,256 → ('15) 26,256백만원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CCS(CO2 포집·저장) 및 포집된 CO2의 이용·활용 등 기술개발
- '15년 계속과제 (21,356백만원 : 14과제 × 1,525.43백만원), '15년 신규과제 (4,900백만원 : 3과제 × 1,633.33백만원)

④ 에너지수요관리융합 : ('14) 0 → ('15) 18,800백만원

- 타 산업(농·어업, 국방, 국토·교통 등), 디자인, 사회과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문제해결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R&D 과제 지원
- '15년 계속과제 (16,884백만원 : 9과제 × 1,876백만원), '15년 신규과제 (1,916백만원 : 3과제 × 638.7백만원)

⑤ 에너지신산업 : **('14) 0 → ('15) 11,500백만원**

- 에너지신산업 조기 창출을 목표로, 기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시장 진입을 위한 시스템 구성 기술 개발
- '15년 신규과제 (11,500백만원 : 11과제 × 1,045.5백만원)

⑥ 기획평가관리비 : **('14) 4,902 → ('15) 5,238백만원**

-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비용

□ 지원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대응)**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인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 효율향상기술 개발 필요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로 지정 (국정과제 89-1)

- 2020년 BAU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억톤('11년 약 7억 톤)으로 목표치 30% 중 에너지R&D*를 통해 50%**인 약 1.2억톤 절감 목표

* 2011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분야가 85.7% 차지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목표치

[ETP 2010의 CO_2 감축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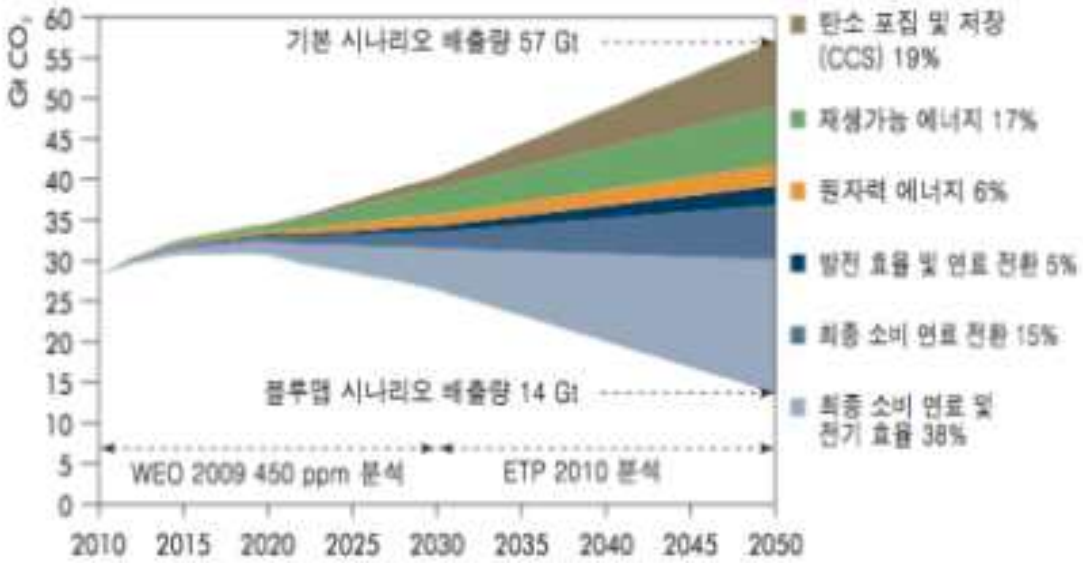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수요관리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유망*

* 에너지효율향상은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에너지수급관리 및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McKinsey, Energy Efficiency: A compelling global resource, 2010)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62%를 에너지효율향상(43%), CCS(19%)를 통해 달성 가능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R&D		탄소 포집·저장(CCS)
·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로 수요 절감 가능 ·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	(2020년 BAU대비 15% 감축)	⇦	· 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이 대부분 화력발전에서 기인 ·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처리는 CCS 기술개발로 해결 가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

- (실행과제 31-②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능형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전력거래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
- (실행과제 31-③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LNG 저장설비 및 공급망 확충 : 가스안전기술이 바탕이 된 시설 확충 필요
- (실행과제 32-①) 8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정책 지원 마련

* ①신재생에너지, ②전기차, ③이산화탄소빌리지, ④스마트그리드, ⑤에너지 저장장치, ⑥ 에너지관리시스템, ⑦ 지능형 수요반응(DR), ⑧ 에너지절약기업(ESCO)

- (실행과제 32-②)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점 R&D 대상 기술분야 선정 및 사업화 전략 로드맵 수립

○ **(창조경제 실현 선도)** ICT를 활용·접목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개발로 새로운 수요관리 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

* 수요관리 시장 : 피크부하를 감축·이전하는 부하관리 시장과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효율향상 시장으로 구성

**'13~'17까지 약 2.1조원 시장, 1.5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 대통령님 말씀 세계에너지총회(WEC, 2013.10) >

"에너지 산업은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약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 (창조경제 실현전략 3, 추진과제 3-4*)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CCS** 기술 등)

*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추진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2013.5.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CO_2 포집・저장・전환 및 환경관리기술

○ **(가스안전 강화)**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난/재해 대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회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독성가스 산업안전, 노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이 요구됨
- 최근 발생한 빙그레 암모니아(독성가스) 폭발 사고('14.2.17)를 계기로 전국의 독성가스시설(2,774개) 안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
- LPG 관련 인명피해 사고도 연이어 발생, LPG 용기 안전성 강화 필요(최근 5년간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72%)

<대형 가스사고 및 최근 사고 사례>

사고 명	피해 규모
대구 도시가스 폭발 (1995년)	피해액 : 600억, 사상자 : 202명
부천 충전소 폭발 (1998년)	피해액 : 120억, 사상자 : 97명
구미 불산 누출(2012년)	피해액 : 560억, 사상자 23명, 치료 및 검진환자 8000명, 피해업체 126개사
빙그레 암모니아 배관폭발(2014년)	사상자 : 4명, 암모니아 6톤 유출로 2차 피해 등 발생

- 세월호 참사('14.4.16) 이후, 사회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재점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투자 확대 필요성 확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80,657	173,113	187,223	14,110	8.2
▪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21,401	133,455	116,429	△17,026	△12.8
▪ 가스안전기술개발	8,367	8,500	9,000	500	5.9
▪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28,780	26,256	26,256	0	0
▪ 에너지수요관리융합기술개발	-	-	18,800	18,800	순증
▪ 에너지신산업기술개발	-	-	11,500	11,500	순증
▪ 미래선도기술	16,988	-	-	0	0
▪ 기획평가관리비	5,121	4,902	5,238	336	6.9
□ 비목	180,657	173,113	187,223	14,110	8.2
▪ 출연금(350-01)	180,657	173,113	187,223	14,110	8.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착실히 뒷받침하면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R&D에 중점 투자
- 그린에너지 및 온실가스감축 전략로드맵 등 장기·종합적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

○ 가스안전/관리 기술개발로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가스 공급시설 안전 확보 및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731	▪ 에너지효율향상(1,334), 가스안전기술(85), 온실가스처리(263), 기획평가관리비(49)
'15	1,872	▪ 에너지효율향상(1,164), 가스안전기술(90), 온실가스처리(263), 에너지수요관리융합(188), 에너지신산업(115), 기획평가관리비(52)
'16	1,924	▪ 에너지효율향상(1,196), 가스안전기술(93), 온실가스처리(270), 에너지수요관리융합(193), 에너지신산업(118), 기획평가관리비(54)
'17	2,022	▪ 에너지효율향상(1,257), 가스안전기술(97), 온실가스처리(284), 에너지수요관리융합(203), 에너지신산업(124), 기획평가관리비(57)
'18	2,072	▪ 에너지효율향상(1,288), 가스안전기술(100), 온실가스처리(291), 에너지수요관리융합(208), 에너지신산업(127), 기획평가관리비(5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추진경위

<중장기 계획>

- ’97.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
- ’02.1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4.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 ’06.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10개년)계획
- ’08.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 ’08.1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 ’97.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
- ’11.11.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 ’14.0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전전략 등 국가계획>

- ’08.09.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08.09.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
- ’09.11. 국가 중기 CO_2 감축 목표량 발표
- ’10.07.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 ’11.06.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전략
- ’13.08.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 ’14.0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전략로드맵 등 R&D전략>

- ’09.05.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 ’11.06.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 ’11.06. 온실가스 감축기술 로드맵
- ’14. 가스안전기술 로드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2,153	2,142	1,807	1,731	1,872

* ’13년도부터 자원개발기술분야는 별도사업으로 분리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153	-	-	2,153	2,153	-	-
	(2,153)	(-)	(-)	(2,153)	(2,153)	(-)	(-)
'12년	2,142	-	-	2,142	2,142	-	-
	(2,142)	(-)	(-)	(2,142)	(2,142)	(-)	(-)
'13년	1,807	-	-	1,807	1,807	-	-
	(1,807)	(-)	(-)	(1,807)	(1,80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0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상용화실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성과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4단계 gate keeper"* 시행 중

* 과제기획의 내실화,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사업성평가 별도 실시, 종료과제에 대하여 상용화 등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 등

○ 평가관리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별도의 기관운영예산이 없어 평가관리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14년 관리기관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진행중)>

○ 자체평가 등급 : 우수

* '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 78.2(보통), 자체평가 : 93.0(매우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 온실가스를 저감, 저장, 처리하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발표('06.9월, DOE)

*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 중 기술부문으로 자발적 또는 의무적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과학 연구, 청정에너지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을 포함

○ '08년 ARPA-E를 설립하고 바이오 연료, 에너지저장, CCS 등 에너지 분야에서 74개 원천 기술을 선정하여 총 3,300억원 투자를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제정('09.2)

② 일본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수급구조 구축, 자원 및 에너지 환경협력의 강화와 위기 대응책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新국가에너지전략」 발표('06.5)
* '30년까지 에너지 효율 30% 개선, 자주석유개발 비율 40% 달성

○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Cool Earth Innovative Technology Program"을 발표('08.5)
* 21개 주요기술 발표 : 에너지절약기술, 차세대 고효율 조명, 초고효율 히트펌프, 에너지절약형 정보기기·시스템, HEMS/BEMS/EMS, CCS 등

③ EU

○ "An Energy Policy for Europe"을 발표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대안으로 채택('07.1)

○ "EU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Plan)"을 구축, 국가간 연계를 통해 화석연료의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저탄소 기술 개발 추진

④ IEA(국제에너지기구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2년마다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의 발표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CO_2 배출 문제 대응 기술적인 대안 제시

○ ETP 2010에서는 단기간 에너지기술개발으로서 효율개선, 스마트 그리드 연계 비탄소 전력생산을 최우선으로 설정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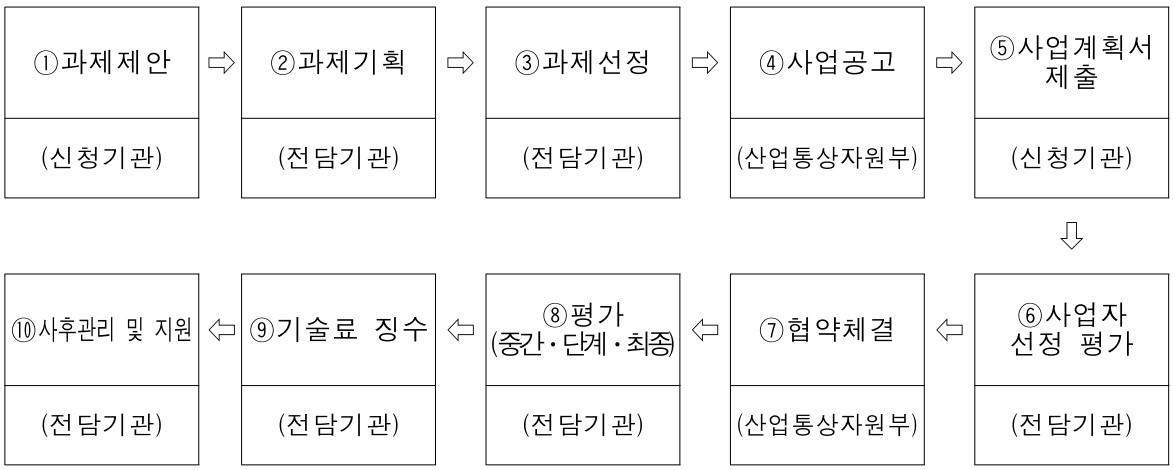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 관련근거 법령조문

참고1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주요내용

<수립 배경>

□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국내·외 에너지기술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수립

□ 글로벌 'Green Race'에 대응하여 **에너지기술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전략 수립** 필요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

□ **목표** :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창출** 및 **기후변화대응**

◈ 세계시장 10% 점유 ◈ 에너지효율 12% 향상
◈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

≪ 중점 투자 분야 ≫

'20년까지 4대 분야 기술개발 집중 투자 (R&D 투자 2배 이상 증대)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자력	효율향상/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 자원개발
태양광, 풍력 등 조기 수출산업화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등 신성장동력화	고효율기기, CCS 등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희유금속, 비전통유가스 등 미래에너지원 확보

<추진전략 및 과제>

1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을 차세대 **수출산업화 및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적극 육성

*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형·상용화 R&D 추진
* 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및 범부처 공동 에너지 R&D도 강화

○ 에너지분야 혁신적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개발 원천기술 연구**도 **강화**

* 미래형 그린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에너지 미래기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장기 에너지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심해저·극한지·비전통 자원개발 등 新자원개발기술 R&D를 강화

○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년 85% 수준**으로 제고하고 **부품·소재·장비 R&D 지원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

*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 ('10) 56% → ('20) 85%
* 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 비율 : ('10) 17.7% → ('20) 25% 이상

2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기술개발모델**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

* '12년도 중대형 신규과제부터 적용 : ('10) 20% → ('12) 30% → ('20) 50% 이상

○ '2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 추진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R&D 지원에서부터 국내외 특허출원, 사업화 컨설팅, 기술·마케팅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권역별** 에너지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풍력(호남권, 동남권), 연료전지(대경권)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에너지저장·그린카 분야 등으로 확대

○ **저소득층용**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에너지기술개발 등 **복지형 에너지 R&D** 추진

* 고효율 조명·창호·보일러 등의 기술개발을 우선지원하고, 보급사업과도 연계 추진

3 에너지 R&D 시스템 선진화

○ 에너지 R&D **분야별 재원배분 포트폴리오시스템, 에너지기술통계** 및 동향분석 시스템 등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기반 구축**

○ 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 자원개발 등 **정책목표별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PD 등 **민간전문가 주도의 책임기획** 실시

○ 에너지 R&D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성과활용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R&D 성과 확산** 및 **환류**를 **강화**

4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

○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 및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인력 양성**의 **저변 확대**

* 분야별 인력수급의 시급성, 전문성 등에 따라 학과(전공), 특성화대학, 전문대학원 등으로 다양화

○ 선진국(그린에너지기술역량강화), 개도국(자원확보·수출 연계) 등과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다자기구 활동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

* IEA(국제에너지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CSLF(CO_2처리리더십포럼) 등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ISGAN(국제스마트그리드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회의 추진

○ **실증사업**을 **확대**('10년 11% → '20년 25%)하여 기업의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하고 **표준화·인증**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조기진입**을 **지원**

4. 기대효과

□ '20년 **수출 202조원**, 내수 59조원 달성 및 **일자리 914천명 창출**

참고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 **(개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ICT연계 시장형 온실가스감축 등을 통한 창조적 신산업 창출 방안 마련

○ **(추진배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Post 2020 장기 감축목표 설정에 대응한 적극적 기술개발과 신 사업모델 확산 요구 반영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담화문('14.2월) :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7.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 에너지 6대 新산업 >

참고3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 수립배경

○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

-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공급중심 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수요를 줄인 후 공급을 확대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일시적 절약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우리 ICT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 추진 필요

◉ 대통령님 말씀 (제 24차 국무회의, '13.5.28)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주기 바람"

○ 전력수급 위기를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 2차전지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융합하여 ESS, EMS, LED 등 ICT기반 에너지 신산업 시장진출 기회 제공
-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창출하여 ICT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등 신규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참여자와 창조적인 일자리 확대

□ 추진방향

1 에너지저장장치(ESS)

○ 발전사업자, 신재생 사업자가 선도적으로 ESS 초기시장 창출

* 리튬이온 전지 등 고효율, 친환경 기술 개발 (양수발전 제외)

○ 전기요금제도 개편, 제도정비 등을 통해 전력다소비 수용가, 공공기관의 대규모 ESS 투자 유도

① 초기시장 형성	투자환경개선 ⇨ 시장창출	② 대규모 투자유도
▪ 신재생과 ESS 연계 ▪ 주파수추종(FR) ESS ▪ 관련 제도정비		▪ 발전사업자 ▪ 대규모 전력사용 수용가 ▪ 전력다소비 공공기관

2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건물, 공장 등 대규모 에너지수용가에 EMS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EMS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활용기업을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자로 육성하고, EMS 업체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3 ICT활용 고효율기기

○ **(LED)** 경제성이 충분한 LED는 설치의무화, 민간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보급 촉진(저소득층, 복지시설은 정부부조금 지원)

○ **(스마트플러그)**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 가정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를 제공

○ **(지역냉방·가스냉방)** 의무설치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보조금 확대, 효율향상 R&D 추진

4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 확대

○ 에너지공급사가 수요를 추종하여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효율향상사업을 통해 수요를 우선 감축

○ 에너지 공급사가 효율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공급자원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수 수요관리자원 시장 활성화

○ ESS, EMS 등을 통해 확보한 수요감축자원(Negawatt)도 공급 발전자원(Megawatt)과 대등하게 거래되는 전력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 시장형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기대효과

○ **(시장변화)** 신사업과 새로운 시장 형성을 통해 지금까지 없던 신규 사업 모델 창출과 시장참여자 출현, 일자리 확대

- ES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17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이상의 시장 창출
- 신사업 확대,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에 따라 기존에 없던 사업유형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출현

사업자 유형	수익창출 모델
대규모전력사용자	자신이 감축한 피크수요 절감분을 시장에 판매
부하관리사업자	빌딩·공장 등 제3자의 부하를 모아 수요관리자원 판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신이 투자 또는 관리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절감량 판매
수요자원개발자	공급발전자원보다 저렴한 수요관리자원 연구·개발

- '17년까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70만kW의 피크 부하 절감 기대

주요시장	2012	2013~2017
에너지저장장치 (ESS)	1백억원 시범보급, 실증시장	9천억원 신재생, FR, 수용가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1천억원 보급률 2.9%	7천억원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공건물 시장
스마트그리드	1.1천억원 제주실증사업	1.4조원 DR, 스마트미터, 전기차 시장 등
효율향상 투자	-	5.4천억원 효율향상 시장 형성

경제효과	주요 과제별 전망치	
일자리 창출	에너지저장장치(ESS)	3.6천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6.6천개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5.0천개
전력피크 감축	에너지저장장치(ESS)	45만kW
	에너지관리시스템(EMS)	10만kW
	수요관리 투자확대	15만kW

< 창조경제 시대의 ICT 에너지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기대효과 >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 (공급측면) 공급 위주의 수요추종형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전력 수급 최적화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발전소 건설 최소화

* (요금측면) 피크절감을 통한 전기도매요금(SMP) 인하와 신뢰성 있는 수요감축자원 확보를 통한 충분한 설비예비력 유지가능

참고4 관련근거 법령조문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융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1,053	1,153	873	△280	△24.3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9 - 316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한주현, 53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산업계 및 가정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조성된 상쇄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소비현황을 쉽게 인식,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

-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개선사업 미참여 단체에 대한 참여 유도로 고지서 개선 대상 확대 필요

  * 단지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등급 표기, 이웃집 평균 및 전년 동월비교 그래프 등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사용량에 따른 차별화된 고지서 발송

○ 도시화로 인해 거주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가 큰 지하주차장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고효율 건축물 보급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탄소중립 프로그램(440백만원)
- 운영효율화 기반 조성(100백만원)
- 참여 확산을 위한 마케팅(160백만원)
- 탄소중립형 국가 행사 등 지원(80백만원)
- 대중소기업상생프로그램 지원(100백만원)

②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 사업(220백만원)
- 관리비 전산업체 전산 및 출력프로그램 개발비 지원(80백만원)
-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및 DB 구축(96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개선사업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비(44백만원)

③ 에너지절약형 우수아파트 지원사업(213백만원)
- 우수아파트 LED 설치지원(200백만원)
- 사업확산을 위한 홍보(1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탄소중립프로그램) 최소한의 홍보만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투입비용 대비 높은 효과

○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시범사업 시행시, 세대당 평균 에너지사용 절감액을 기준으로 1개월(36.3억원), 1년(436억원) 절감효과

○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 아파트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1,053	1,153	873	△280	△24
▪ 탄소중립 프로그램	720	720	440	△280	△39
▪ 아파트고지서 개선사업	333	333	220	△113	△34
▪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	100	213	113	11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속 발굴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의 전국적 참여 확대를 추진, 공동주택 에너지사용 현황에 대한 통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절전 유도

○ 에너지절감노력이 탁월한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문화 확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53	▪ 범국민 녹색실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탄소중립형 국가·국제행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지원(72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개선사업(333백만원) ▪ 우수아파트 지원 사업(100백만원)
'15	873	▪ 범국민 녹색실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탄소중립형 국가 행사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지원(44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개선 사업(220백만원) ▪ 우수아파트 지원 사업(213백만원)
'16	829	▪ 범국민 녹색실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탄소중립형 국가 행사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지원(396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개선 사업(220백만원) ▪ 우수아파트 지원 사업(213백만원)
'17	829	▪ 범국민 녹색실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탄소중립형 국가 행사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지원(396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개선 사업(220백만원) ▪ 우수아파트 지원 사업(213백만원)
'18	705	▪ 범국민 녹색실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탄소중립형 국가 행사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지원(272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개선 사업(220백만원) ▪ 우수아파트 지원 사업(213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탄소중립프로그램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 적극 전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제1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제1항

○ 추진경위

▪ 탄소중립 프로그램

- 기후변화 Week 행사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공식출범 ('08.2.18)
- 건국 60주년 경축행사 제1호 탄소중립마크 부여 ('08.8.15)

* ('08~'13년) 15,933건, 86,640tCO_2 인증 (누적)
* 탄소중립프로그램은 '11년부터 안전행정부의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선정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사업

- 에너지 절약대책 국무회의 보고시 대국민 에너지절약 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사업' 보고 ('11.1.18)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11.2.27) 및 그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수요관리 대책' 발표('11.3.1)
- 시범단지(600세대) 대상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발송('11.1월~3월)

* 산업부 디자인브랜드과 주관으로 전문가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관리비 고지서 디자인 개발, 서초구 방배동 600세대 대상 유인물 형태로 배포('11.1월~3월)

- 에너지절약형고지서 시범보급사업 추진단체 공모 및 선정(5월), 표준 고지서 디자인 개발(~8월), 시범보급적용 단지 선정 (~8월)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사업 ('14년 신규사업)

- 사업 대상 아파트단지 접수 ('14.6월)
- 전년 동기 대비 하계 전력사용량 감소 2개 단지 선정 ('14.10월)
- 우수아파트단지에 대한 LED 설치 지원 ('14.11월)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15.6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	3,745	1,053	1,153	87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하절기 전력피크 방지를 위한 절전홍보시행(매체활용 및 캠페인 추진) 사유로 에너지절약정책 홍보 사업으로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 ( )	- ( )	- ( )
'12년	3,745 (3,595)	- ( )	△150 (-)	3,595 (3,595)	3,595 (3,595)	- ( )	- ( )
'13년	1,053 (1,053)	- ( )	- ( )	1,053 (1,053)	1,053 (480)	- ( )	- (57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탄소캐쉬백 감사원 감사 지적('14.4.24)

○ 지적사항

- 탄소캐쉬백 사업과 환경부 '그린 카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유사('12년, 예정처), 운영실적 저조 및 예산집행 부진 ('14년, 감사원)

○ 후속조치

- 관계기관의 지적사항을 감안, 탄소캐쉬백 사업 종료 절차 진행 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탄소중립)

탄소중립 운영사	상쇄가격	국가	참여부문	승인/검증
Native Energy(NE)	$ 2 9 . 4 0 USD/tCO2e	미국	기업, 가정, 여행	EPI, EIA, 정부통계자료
Carbon Neutral(CN)	$ 2 2 . 5 0 AUD/tCO2e	호주	기업, 가정, 수송	DCCEE, 온실가스인벤토리 등
Sustainable Travel International(STI)	$ 2 5 . 3 5 USD/tCO2e	미국/영국	가정, 여행, 행사	IPCC, EIA, EU 전기사업연합회 등
Carbon Reduction Institute(CRI)	$ 2 2 . 0 0 AUD/tCO2e	호주	기업, 가정, 여행, 수송, 행사	DCCEE, 온실가스인벤토리 등
Carbonfund(CF)	$ 1 0 . 0 0 USD/tCO2e	미국	가정, 수송, 행사	EPA, DOE, EIA 등
Myclimate(MF)	€ 2 2 . 0 0 EUR/tCO2e	스위스	기업, 가정, 수송, 행사	Ecoinvent, UBA
Brighter Planet(BP)	$ 1 4 . 0 0 USD/tCO2e	미국	가정, 수송	EPI, EIA, 정부통계자료
Live Neutral(LN)	$ 1 4 . 0 0 USD/tCO2e	미국	가정, 수송	EPA, WBCSD, WRI, IPCC
에너지관리공단	15,000원	한국	기업, 가정, 여행, 수송, 행사	IPCC 가이드라인,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상쇄가격(offset cost) : 상쇄가격은 2012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변동될 수 있음.

※ 출처 : 탄소중립 국내외 사례조사 및 배출량 산정방식 연구(2012, 에너지관리공단)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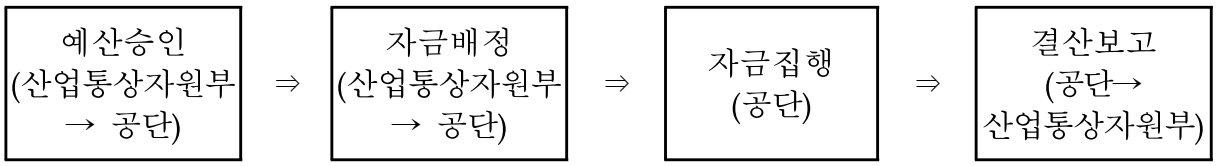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에너지관리공단지원(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32,823	47,131	47,961	830	1.8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43 - 301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이상훈, 044-203-5360), 주무관(이일보, 536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1~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4,616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수지차보전 : 총지출 - 자체수입)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종합적인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본 운영비 지원

* 주요기능 :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CO_2 저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5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총 지출예산 중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출연(수지차보전)

① 정부출연금(A-B) : 47,131 → 47,961백만원(+830백만원)

- 총 지출(A) : 70,602백만원, 자체수입(B) : 22,641백만원

② 사업비 : 33,437 → 34,092백만원(+655백만원)

- 산업체 등 에너지진단, 국가 에너지수요관리,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위한 효율관리제도 운영, 열사용기자재 검사 등 8,237 → 8,587백만원 (+350백만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 건축물 에너지관리제도 운영, 자동차 연비관리 등 10,655 → 13,343만원 (+2,688백만원)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매체홍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 다이어트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관리자 전문교육,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추진 등 9,281 → 9,281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 설비시공 전문업체 관리,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2,881 → 2,881백만원

③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 29,800 → 30,985백만원(+1,185백만원)

- 인건비 : 27,776 → 28,961백만원(+1,185백만원)

  * '14년도 인력증원 5명 6개월분(+125백만원) 및 공통인상분 3.8%(+1,060백만원)

- 경상운영비 : 2,024백만원(전년동)

④ 수송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자동차연비관리센터 구축 2차년도 사업비 3,000백만원(전년동)

  * 총 사업비 100억원 (1차년 30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40억원)

⑤ 본사 지방이전을 위한 신사옥 건축비 차입이자비용 보전 1,158백만원

- '15년 본사 신사옥 건축비 차입금 36,317백만원에 대한 이자비용

⑥ 목적예비비(1,179백만원) 및 퇴직급여충당금(188백만원) 전년동

⑦ 자체수입 : 20,473 → 22,641백만원(+2,168백만원)

- 사업수입 : 15,199 → 16,506백만원(+1,307백만원)

· 산업체 등 에너지진단 1,812 → 1,965백만원 (+153백만원)
· 열사용기자재검사 7,816 → 8,288백만원 (+472백만원)
  * 검사수수료는 압력용기 격년검사에 따라 홀수년도 결산 실적('11,'13년) 대비 35.4% 인상분 반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917 → 897백만원 (△20백만원)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0 → 279백만원 (+279백만원)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0 → 890백만원 (+890백만원)
·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1,520 → 1,418백만원 (△102백만원)
· 직접대출 융자취급수수료 2,161 → 1,796백만원 (△365백만원)
  * 대출잔액 감소('14년 4,225억원 → '15년 3,513억원)
· 법정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수입 735백만원(전년동)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238백만원(전년동)

- 사업외수입 : 5,274 → 6,135백만원 (+861백만원)

· 결산잉여금 세입계상 : 599백만원(전년동)
· 지역난방공사 배당수입 : 2,175 → 3,647백만원 (+1,472백만원)
  * '14년 배당 수준 반영
· 이자수입 등 : 2,500 → 1,889백만원 (△611백만원)
  * '13년도 결산 실적치 반영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종합적인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32,823	47,131	47,961	830	1.8
□ 에너지관리공단지원(A-B)	32,823	47,131	47,961	830	1.8
○지출금액(A)	62,968	67,604	70,602	2,998	4.4
▪ 사업비	32,549	33,437	34,092	655	2.0
▪ 인건비	26,204	27,776	28,961	1,185	4.3
▪ 경상운영비	1,991	2,024	2,024	-	-
▪ 목적예비비	-	1,179	1,179	-	-
▪ 퇴직급여충당금	1,614	188	188	-	-
▪ 자동차연비센터	-	3,000	3,000	-	-
▪ 본사지방이전	-	-	1,158	1,158	순증
▪ (차)차년도 세입계상	611	-	-	-	-
○자체수입(B)	30,145	20,473	22,641	2,168	10.6
▪ 사업수입	13,588	15,199	16,506	1,307	8.6
▪ 사업외수입	16,557	5,274	6,135	861	16.3
□ 비목	32,823	47,131	47,961	830	1.8
▪ 출연금(350-01)	32,823	47,131	47,961	830	1.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을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등 6대 중점과제의「국가에너지 기본계획」중점 추진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위한「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지속 추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적극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차질 없는 본사 지방이전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71	▪ 정부출연금(A-B) : 471 - 총지출(A) : 676억원, 자체수입(B) : 205억원
’15	480	▪ 정부출연금(A-B) : 480 - 총지출(A) : 706억원, 자체수입(B) : 226억원
’16	456	▪ 정부출연금(A-B) : 456 - 총지출(A) : 716억원, 자체수입(B) : 260억원
’17	456	▪ 정부출연금(A-B) : 456 - 총지출(A) : 676억원, 자체수입(B) : 220억원
’18	387	▪ 정부출연금(A-B) : 387 - 총지출(A) : 676억원, 자체수입(B) : 289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에의 출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항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범위등) ②항

○ 추진경위

- ’79.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포
- ’80. 7 에너지관리공단설립(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 ’81～ 정부예산지원(일반회계)
- ’9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
- ’03. 2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 ’05. 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 11 CDM운영기구(OE) 지정
- ’09. 7 신재생에너지센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 ’12. 6 녹색건축센터 지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64	192	328	471	4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64	-	-	164	164	-	-
	(164)	(-)	(-)	(164)	(164)	(-)	(-)
'12년	192	-	-	192	192	-	-
	(192)	(-)	(-)	(192)	(192)	(-)	(-)
'13년	328	-	-	328	328	-	-
	(328)	(-)	(-)	(328)	(32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12년)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성에너지센터(ECCJ) : 일본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술지도, 에너지절약설비 조사 및 보급, 교육·홍보·출판 및 정보제공 등
  (20부 8지부(소), 133명)

○ 환경·에너지관리공사 (ADEME) : 프랑스

-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신기술 시범도입 및 보급,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교육·홍보·출판 및 정보제공 등
  (12본부 26지부, 820명)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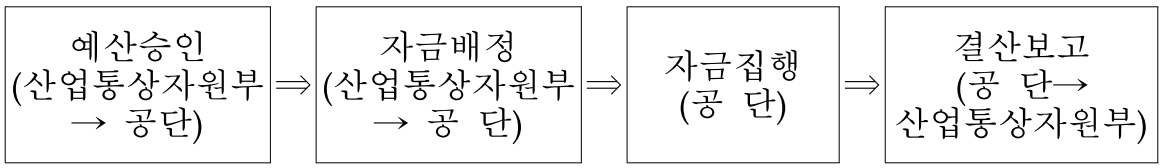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계속)

< 에너지및자원개발 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15,254	13,759	12,166	△1,593	△11.6%

* 사업코드 : 21-24-4-110-115-5100-5139-309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나승식), 온실가스감축팀장(송현주, 044-203-5370), 주무관(서민경, 044-203-537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4년까지 기투자액 : 714.5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2. 사업목적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달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소비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업체의 이행을 관리·지원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수단으로 녹색법에 신규 도입,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및 관리업체 이행역량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의 차질 없는 목표 이행 및 달성이 중요

○ '14년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로, 중소·중견 관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운영 및 이행지원 추진

* 목표관리제 추진과정(최초 연도 기준) : 제도 시행 및 관리업체 지정('10년) → 관리업체 목표 설정('11년) → 관리업체 목표 이행('12년) → 관리업체 이행실적 평가('13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8,342백만원

○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확산 : 5,600백만원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지원 : 3,600백만원
- 우수감축시설 도입 지원 : 1,200백만원
- 에너지진단 수행, 행정컨설팅 지원(Eco-Best 컨설팅) : 800백만원

○ 대·중소 기업간 동반감축 지원 : 850백만원 필요
- 기업협력군 에너지 동행 : 300백만원
-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지원 : 250백만원
-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 : 30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 지원 : 1,692백만원
- 공정개선 과제 발굴 및 에너지 최적화 실증테스트 : 600백만원
- 업종별 감축기술 보급·확산 : 1,092백만원

○ 전담인력 양성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② 제도 운영기반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 3,824백만원

○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00백만원
- 관리업체별 협상자료 수집, 분석 및 감축목표(안) 개발 등 : 1,850백만원
- 목표설정 설명회 및 목표설정 협상 등 : 150백만원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체계 고도화 : 299백만원

○ 감축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현황점검 : 625백만원

○ 온실가스 벤치마크(BM) 계수 개발 : 900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요구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13,759백만원	12,166백만원
▪ 운영기반확충	4,124백만원	3,824백만원
▪ 이행역량강화	9,635백만원	8,34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중소·중견 관리업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업체에 기술·정보·인력 등 다각적 이행지원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승('12년 1.6% → '13년 3.3% → '15년 10.0%) 및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에 따라, 제도운영 및 관리업체 지원 부담 증가

* 관리업체 지정기준 : (~'11년) 25/125, ('12년~'13년) 20/87.5, ('14년~) 15/50 (사업장/업체, 천톤CO2eq)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15,254**	**13,759**	**12,166**	**△1,593**	**△11.6**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15,254	13,759	12,166	△1,593	△11.6
□ 비목(합계)	**15,254**	**13,759**	**12,166**	**△1,593**	**△11.6**
▪ 민간경상보조(320-01)	15,254	13,759	12,166	△1,593	△11.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중견 관리업체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목표설정으로 목표달성률 제고 및 다각적 이행지원을 통한 관리업체 이행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감축 신기술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체력 증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15	121.66	▪ 이행역량 강화 : 83.42 ▪ 운영기반 확충 : 38.24
'16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17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18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기본법 **제42조 제10항**

제42조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제26조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건물·교통 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8~36조
  -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32조(검증기관 등)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 산업발전법 제6조

> * 제6조② :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생략.
>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 추진경위

- '08.12.「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 '09.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목표관리제 근거규정 마련
- '09. 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의결된「6. 4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0TOE 이상 사업장에「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이 결정
- '09. 9.「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09.10.「산업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 '09.1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발표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대통령 보고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업종 설명회, 공청회 개최
- '09.12. 47개 사업장과 시범사업 협약 체결
- '10.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녹색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확대·통합 운영

- '11. 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 '11.10. 산업·발전부문 366개 관리업체 '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

- ’12.11. 산업·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 ’13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
- ’13. 5. 산업·발전부문 ’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재설정
- ’13. 9. 산업·발전부문 426개 관리업체 ’14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
- ’13.12. 산업·발전부문 359개 관리업체 ’12년 목표 이행실적 평가
- ’14. 9. 산업·발전부문 40개 관리업체 ’15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
- ’14.12. 산업·발전부문 354개 관리업체 ’13년 목표 이행실적 평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18,183	16,254	15,254	13,759	12,1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12년도 하절기 전력수급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 예산(5132-302, 에너지정책홍보)으로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81**			181	**181**		
	(181)	( )	( )	(181)	**(149)**	( )	( )
’12년	**162**		△6	156	**156**		
	(162)	( )	(△6)	(156)	**(153)**	( )	( )
’13년	**152**			152	**152**		
	(152)	( )	( )	(152)	**(14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예산안 예정처 예산분석보고서

- (지적사항) ‘온실가스·에너지 우수감축시설 시범 보조사업’의 수요 부진 및 에너지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의 연계 미흡
- (후속조치) 중소기업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체계 개선
  · 지원대상기술 선정시 중소기업의 실제수요 반영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업참여율 제고
  · 에너지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수행으로 도출된 감축 아이템 경제성 분석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동 사업참여 유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전세계 20여개 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시행 중이며, 유형은 국제협정, 국내여건 등에 따라 규제, 인센티브, 페널티 등 다양

○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자금융자와 함께 보조금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 중

(5) 사업추진절차

관리업체 선정(3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 * **시행령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지정·고시(6월)	○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 **시행령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목표설정(9월)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 **시행령 제30조 ①항(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이행계획서 제출(12월)	○ 관리업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령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시행령 제30조 ③항(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이행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제출(3월)	○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과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시행령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	
평가/개선명령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명령 조치 * **시행령 제30조 ⑤항(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기후변화협약대응(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후변화협약대응	10,873	11,054	10,501	△553	△5.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42 - 301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나승식), 온실가스감축팀장(송현주, 044-203-5370), 사무관(윤종성, 537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민간경상보조, 연구용역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사업목적

○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기술DB 구축 등 국가 통계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략 및 정책방안 마련 등 산업계 역량 제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300백만원

- 산업·에너지부문 국가 온실가스통계 작성 : 3,000백만원
- 산업·에너지부문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DB 구축·확산 : 1,300백만원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개발 및 감축잠재량 분석 : 300백만원
- 기후변화정책 수립 등을 위한 상시 연구 : 700백만원

② 산업계 기후변화대응기반 구축 : 2,831백만원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 1,500백만원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 : 300백만원
- 기후변화 교육·행사, 정책협력단 운영 등 지원 : 1,031백만원

③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370백만원

- P-CDM 사업 지원, 기후변화홍보포털 운영 등

④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백만원

- 국제 CDM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수행

⑤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500백만원

- 국제 기후변화 협상 참가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등

□ 지원 필요성

○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온실가스 감축기술 DB 구축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기반 조성

○ 산업 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설비 지원 및 기후변화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지원

○ Post-2020 체제하에서의 협상능력 강화 및 CDM 등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기후변화협약대응	10,873	11,054	10,501	△553	△5.0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5,000	5,250	5,300	50	0.95%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3,130	3,284	2,831	△453	△13.8%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720	420	370	△50	△11.9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500	500	500	-	-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1,523	1,600	1,500	△100	△6.2%
□ 비목	10,873	11,054	10,501	△553	△5.0
▪ 출연금(350-01)	9,350	9,454	9,001	△453	△4.8
▪ 민간경상보조(320-01)	500	500	500	-	
▪ 연구용역(260-00)	1,023	1,100	1,000	△100	△9.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이행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설비 보급확산 추진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DB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등을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수립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0.54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2.5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84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6.00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4.20
'15	105.01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3.0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01 ▪온실가스 MRV 기반구축 : 5.00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5.00
'16	99.76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3.0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00 ▪온실가스 MRV 기반구축 : 5.00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9.76
'17	99.76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3.0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00 ▪온실가스 MRV 기반구축 : 5.00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9.76
'18	84.80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46.0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26.00 ▪온실가스 MRV 기반구축 : 5.00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7.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범위등) ②항 1호, 2호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항, ②항

①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및 공표) ②항, ③항, ④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①항, ②항 8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너지관리공단 사업) 1호, 12호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1. 1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일된 재정의 필요성 제기 (국무조정실회의)
- ’02. 3월 기후변화대응 제2차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의결
- ’05. 3월 기후변화대응 제3차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의결
- ’05년말 유럽배출거래시작, 교토의정서 발효(2월), Post-2012 국가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 본격 시작
- ’05.10월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제도 시행
- ’07. 6월 국제엑스포박람회(BIE총회)에서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약속 발표(국무총리 발표)
- ’08. 9월 기후변화대책종합기본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의결
- ’08.12월 기후변화대책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의결
- ’10.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12.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 공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후변화협약대응	123	115	108.5	110.5	10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11년, 불용) 연구용역 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

○ (‘12년, 이·전용) 에너지자원정책지원(에너지정책홍보)사업으로300백만원 전용

* 하절기 전력피크 방지를 위해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으로 전용

○ (‘12년,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12년, 불용) 연구용역 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

○ (‘13년, 불용) 계약차액 발생 및 개별 사업 정산 등에 따른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23	2.2		125.20	122.34	2.6	0.25
	(123)	(2.2)	( )	(125.20)	(122.34)	( )	( )
'12년	115	2.6	3	120.6	110.11	4.2	0.22
	(115)	(2.6)	(3)	(120.6)	(110.11)	( )	( )
'13년	108	4		112.7	108.7	2.2	1.8
	(108)	(4)	( )	(112.7)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 '05.1월부터 EU 배출권 거래시장(상당부분이 유럽기후거래소(ECX, 네덜란드를 통해 거래) 개설
- '07.3월 EU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장기 대응정책 방향」(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채택
- 영국은 '09/10회계연도 예산에서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책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지원 강화

○ **미국**

- 교토의정서에 의한 구속적 의무감축 방식보다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주요국회의를 주도
- 최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왁스만-마키법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키로 반영

○ **일본**

- 全지구적으로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목표를 선언한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발표 ('07.5.24)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개정('06)
- (중기목표) '20년까지 '05년 대비 15% 감축 및 (장기목표) '50년까지 '05년 대비 60~60% 감축하기로 발표('09.6)

(5) 사업추진절차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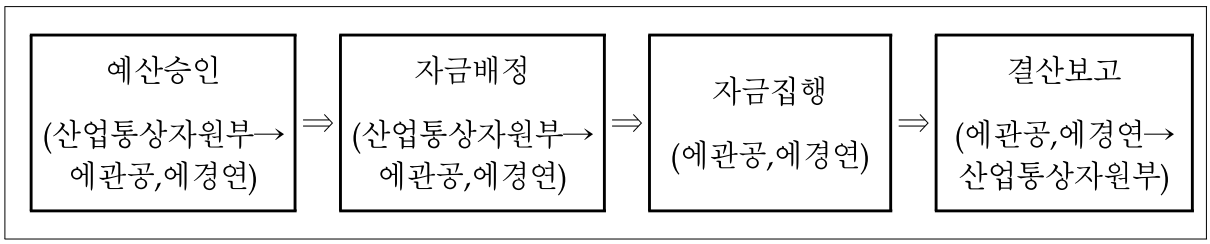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시스템 개요
○ 기후변화 동향 및 향후 계획

참고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시스템 개요

□ 최종수요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에 필수적인 온실가스 배출 활동 통계와 배출계수를 관리

○ 세분화되고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통해 감축잠재량 파악에 의한 기후변화 정책수립과 이행방안 마련 및 협상지원 체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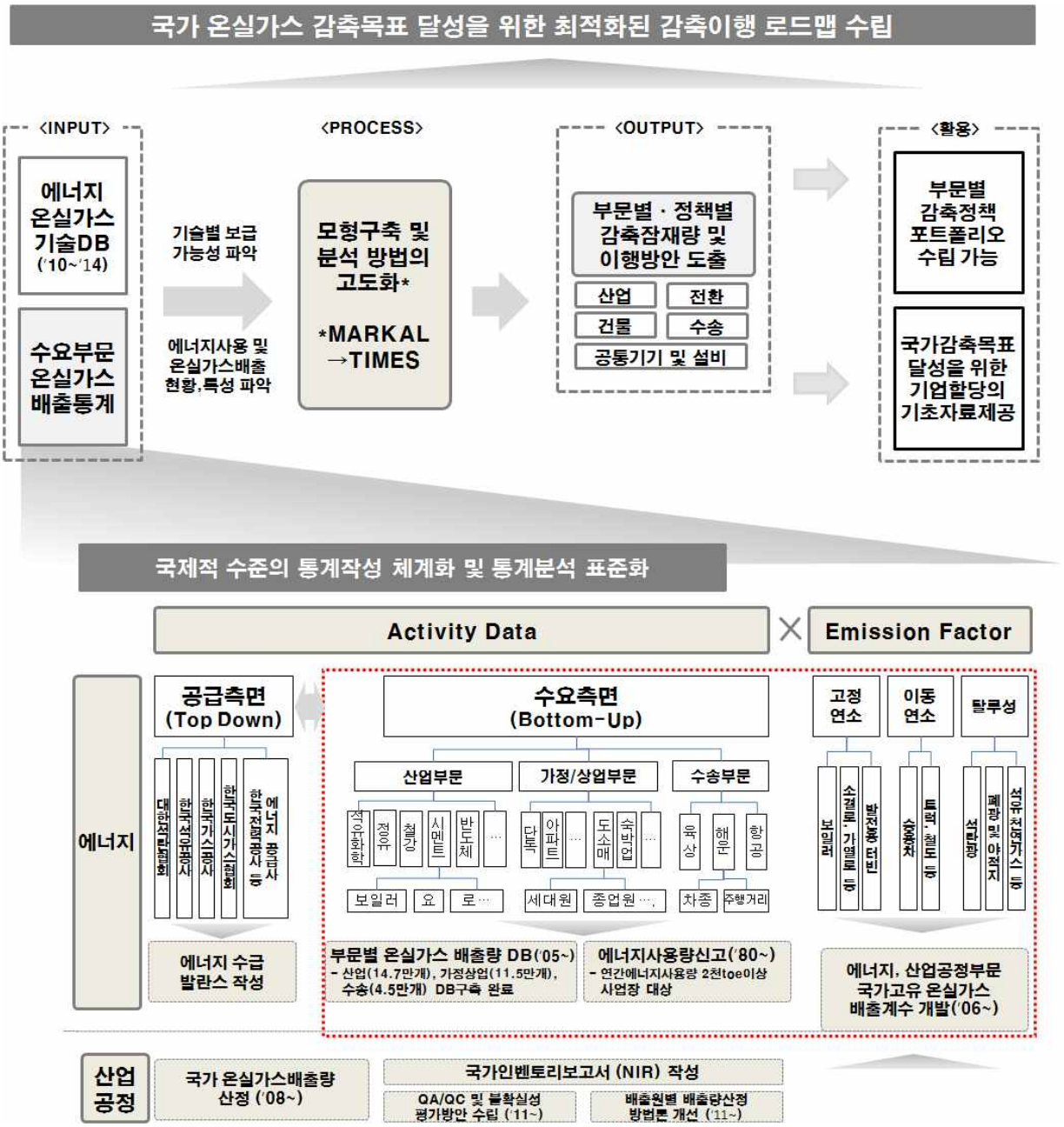

참고 기후변화 동향 및 향후 계획

□ 개 요

○ 新기후변화체제는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에 합의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단일기후체제를 의미

- 더반플랫폼은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더반)의 결정임

□ 주요 내용

○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 도하)

- 더반의 결과 이행을 위해 2015년까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채택하기로 함
- 이의 담보를 위해 2014년 중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추진예정

<도하 결과물(일명 "Doha Climate Gateway")>

① 의정서 개정을 통한 교토의정서 연장(2013-2020년)
② 장기협력행동(LCA) 작업반 종료
③ 더반플랫폼(ADP) 작업계획 수립
④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논의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⑤ GCF사무국 인준(송도) 및 장기재원 조성계획 제출 요청(COP19)
⇒ Post-2012 협상(AWG-KP, AWG-LCA)이 마무리

○ 제19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9, 바르샤바) - 新기후체제 출범 로드맵 마련

- 더반 플랫폼 작업반(ADP) 결정문 도출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감축목표 설정 (contributions) 준비를 시작/강화
    → 2015년 21차 당사국 총회 이전까지 국가별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촉구
  - (2014-2020년) pre-2020 목표/행동을 제출한 선·개도국에게 이행을 촉구
-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지침(guidance) 결정
- 산림과 적응 분야 협상 타결
  - (산림)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arsaw Framework for REDD+) 도입
  - (적응)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 Damage) 설립

□ 향후 계획

○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 페루 리마, '14.12.1-12)에서 후속 논의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세부사업명	3,449	2,750	2,600	△150	△5.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42 - 302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나승식), 온실가스감축팀장(송현주, 044-203-5370), 주무관(허성한, 044-203-537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4년까지 기투자액 480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출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여건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축실적 정부구매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중소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000백만원

- 감축의무가 없고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KVER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全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14년)1,000백만원 = 50건 × 20백만원(건당 총 지원비용)
* ('15년)1,000백만원 = 50건 × 20백만원(건당 총 지원비용)

▪ '사업 **발굴**'⇒'사업 **등록**'⇒'감축 **이행**'⇒'실적 **검증**'의 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비용을 지원

사업 발굴	⇒	사업 등록	⇒	감축 이행	⇒	실적 검증	⇒	정부 구매
인벤토리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제 3자 검증		감축활동 모니터링		제 3자 검증		감축 실적 정부 구매

① **사업 발굴 지원**
- 기술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건당 5백만원)
- 세부 설비 및 공정별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인벤토리) 구축 지원(건당 4백만원)

② **사업 등록 지원** : 사업계획서의 제 3자 검증(타당성평가) 비용 지원(건당 5백만원)

③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 모니터링 보고서 컨설팅 및 작성 지원(건당 3백만원)

④ **실적 검증 지원** : 실적 인증을 위한 검증(실적평가) 비용 지원(건당 3백만원)

②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400백만원

* ('14년)250백만원 → ('15년)400백만원

▪ 온실가스 등록사업 및 검증기관 관리운영 등('14)155→('15)255
- 온실가스 등록·인증평가위원회 운영('14)83→('15)180
-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검증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14)60→('15)60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14)12→('15)15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등록사업 참여 확대기반 마련('14)50→('15)75
- 시나리오별 KVER 활성화연구 및 관계기관 간담회, 워크숍 등

▪ 중소기업 감축실적 활용기반 강화('14)45→('15)70
- 참여안내책자 및 홍보팸플릿제작('14)10→('15)20
- 신규 감축 방법론 개발 등('14)15→('15)25
- 해외 정보교류 및 시장 조사 등('14)20→('15)25

③ 온실가스감축실적 정부구매 (1,200백만원)

* ('14년)1,500백만원 → ('15년)1,200백만원

■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구매 시행**
* 1,200백만원 = 120,000tCO$_2$('15년 예상 정부구매량) × 1만원/tCO$_2$(정부구매단가)
* 경제장관회의('14.9월) 결과인 배출권 가격 1만원/tCO$_2$ 수준으로 산정

□ 지원 필요성

○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상쇄배출권 공급을 위해서는 목표관리 대상이 아닌 30만개* 기업(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이 필수적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지역별 중소기업통계 참조('14)

○ KVER 사업을 중소기업(목표관리 비대상기업) 위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조성하였으나,

- 감축 item의 발굴 등 기본적인 기술 역량의 부족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제3자 검증 등 행정비용 등의 불편사항 완화 필요

  * 등록가능 감축예상량 최소규모(100tCO2)를 폐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6호)

○ 중소기업은 감축의무가 없고, 대응역량이 부족하므로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 item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제3자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 및 자금부담 완화

- 감축실적 정부구매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감축활동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3,449	2,750	2,600	△150	△5.5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	1,000	1,000	-	-
▪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449	250	400	150	60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2,000	1,500	1,200	△300	△20
□ 비목(합계)	3,449	2,750	2,600	△150	△5.5
▪ 민간경상보조(320-01)	3,000	2,500	2,200	△300	△12
▪ 출연금(350-01)	449	250	400	150	6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관리 비대상 30만개 기업(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 확대 필요

- 감축의무가 없고,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지원 확대

- KVER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감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기업경쟁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7.50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000백만원,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250백만원, 정부구매 : 1,500백만원
'15	26.0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000백만원,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400백만원, 정부구매 : 1,200백만원
'16	24.7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800백만원,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270백만원, 정부구매 : 1,400백만원
'17	24.7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800백만원,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270백만원, 정부구매 : 1,400백만원
'18	21.0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700백만원,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250백만원, 정부구매 : 1,1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제1항

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제1항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제1항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너지관리공단 사업) 제1호, 제12호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4-206호)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산업부 공고 제2012-153호)

○ 추진경위

- '05.03월 :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의결
- '05.10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자부고시 제 2005-88호) 제정
- '07.12월 : '07년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 정부구매 최초실시
- '08.12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지경부 공고 제2008-361호) 제정
- '09.5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경부 고시 제2009-218호) 개정
- '09.10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 개정
- '11.04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경부 고시 제2011-71호) 개정
- '11.04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1-72호) 개정
- '12.03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지경부 공고 제2012-153호) 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44	32.5	34.9	27.5	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4			44	44		
	(에관공)	( )	( )	(44)	(44)	( )	( )
'12년	32.5		500	27.5	27.5		
	(에관공)	( )	( )	(27.5)	(27.5)	( )	( )
'13년	34.5			34.5	34.5		
	(에관공)	( )	( )	(34.5)	(34.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 국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행과 탄소 비즈니스 견인을 위해 '10.4월부터 연간 6GWh사용규모(약 2만개소)인 중소 제조업체 및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장단위의 감축 프로그램인 CRC(Carbon Reduction Commitment)를 시행

* 동 제도는 중견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강제 이행 프로그램으로 '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모니터링 설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였음

- 사업장단위 참여자는 지정된 온실가스배출 크레딧을 정부로 부터 구매하게 되며, 정부는 조성재원으로 사업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거나 목표미달시 페널티(배출크레딧 구매 등) 적용

* 사업참여자의 개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율에 기초한 금융지원을 의미

□ 일 본

○ '08년부터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계획의 대책중 대기업위주의 자주행동계획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설비 투자보조 및 감축크레디트 제3자 검증을 지원하는 국내크레디트(J-CDM) 제도 운영 (경산성 및 NEDO)

* 컨설팅 비용 :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비용 전액지원

*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사업 : 감축실적 1톤당 1,500엔의 보조금 지원

- '14년부터 환경성의 J-VER과 통합하여 새롭게 J-credit 제도를 운영중이며, 동일하게 모니터링보고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시 비용 지원 중

(5) 사업추진절차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증한 감축실적을 인증**

○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인증, 정부구매 절차

1. 감축사업 등록절차

사업자→정부	▶	정 부	▶	정부→사업자
감축사업 등록신청		등록평가실시 (등록평가위원회)		등록증 발급 및 등록소요비용지원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6호)

2. 인증절차 (KCERs 발생단계)

▶ 사업자→정부	검증기관→정부	정부	정부→사업자
모니터링실시 및 보고서제출	검증실시 및 인증신청	인증평가실시 (인증평가위원회)	인증서발급 및 인증소요비용지원 (KCERs발급)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6호)

3. 정부구매 신청절차 (KCERs 구매단계)

▶ **정 부**	**사업자→정부**	**정 부**	**정부→사업자**
정부구매 대상공지	KCERs 구매 신청	가격공지 및 신청량 확인	대금지급 및 구매완료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2-153호,2012.03.30)

* KCER :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KVER을 통해 인증된 온실가스배출감축 실적

○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인프라 구축	⇒	**사업 발굴**	⇒	**사업 등록**	⇒	**감축 이행**	⇒	**실적 검증**	⇒	**정부 구매**
정보체계 (인벤토리) 구축		사업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제 3자 검증		감축활동 모니터링		제 3자 검증		감축 실적 정부 구매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지역에너지절약(계속)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에너지절약	35,409	21,690	21,105	△585	△2.7

* 사업코드 : 21-24-4-110-115-5100-5139-308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나승식), 에너지관리과장(양원창, 044-203-5380), 주무관(이일보, 538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6년 ~ 계속
총사업비	'14년까지 기 투자액 : 2,598억원 지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ㅇ 지자체 자부담 조건 (Matching Fund) - 기반구축사업 : 50%이내 국고보조 - 시설보조사업 : 50%이내 국고보조 ※ 단, 서울시는 30%이내 국고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

○ 지역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에너지절약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5년 예산액 : 21,105백만원

(백만원)

구 분	'15년 요구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833 (17개시도×49)
자본보조(시설보조사업)	20,272 (17개시도×1,192)
합 계	21,105

○ 사업경비 산출내역

-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 833백만원

・교육・조사연구(833) : 에너지절약정책과 관련한 교육, 타당성 조사연구, 지역주민홍보 등에 지원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제고

- 자본보조(시설보조사업) : 20,272백만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17,272) : 지자체에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 유도

* LED조명 보급, 폐열회수이용시설, 흡수식냉난방기, 자동제어장치 등

・융·복합 지원사업(3,000) :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기술(ET)간 연계 등 건물, 지역・구역 단위의 창의적 융복합사업을 지원하여 新시장 창출

* 3개사업 × 2,000백만원 × 국고보조율 50% = 3,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시대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자체별 지역에너지 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국고지원이 필요

○ 녹색법 시행 및 전력수급 위기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절약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탄소 에너지절약 기반을 마련

- 또한 지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홍보사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 지원 필요

○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지원은 동 사업이 유일하며 지자체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증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5,409	21,690	21,105	△585	△2.7
▪ 기반구축사업	976	851	833	△18	△2.1
▪ 시설보조사업	34,433	20,839	20,272	△568	△2.7
□ 비목	35,409	21,690	21,105	△585	△2.7
▪ 지자체경상보조(330-01)	976	851	833	△18	△2.1
▪ 지자체자본보조(330-03)	34,433	20,839	20,272	△568	△2.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에너지절약분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고유가 대응 체제 구축 및 에너지절약산업 육성에 기여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설비의 시범보급 활동을 통한 민간 확산 유도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원하여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에너지절약 추진의지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원

○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절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선정·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철저 및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17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851백만원 (17개 시도×50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20,839백만원 (17개 시도×1,225백만원)
'15	211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833백만원 (17개 시도×49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20,272백만원 (17개 시도×1,192백만원)
'16	200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600백만원 (17개 시도×35.3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19,400백만원 (17개 시도×1,141백만원)
'17	100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300백만원 (17개 시도×17.6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9,700백만원 (17개 시도×571백만원)
'18	100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300백만원 (17개 시도×17.6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9,700백만원 (17개 시도×571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

・광역자치단체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1-592호(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지역에너지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

- 녹색위 VIP 보고('11.6.8) :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LED 조명 2060 계획)
  · 대표적 녹색산업인 LED조명 보급을 확대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산업육성 추진
  * 공공기관 보급목표 : 12년 30%, 13년 40%, 14년 50%, **15년 60%**, 20년 100%

○ 추진경위

- '93년 10월 상공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방안 수립

- '94년 12월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토록 함
  ·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착수

- '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년부터 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으로 각각 분리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에너지절약	240	354	354	217	2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도 예산 전용

-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 103백만원 에너지정책홍보(5100-5131-302) 위탁사업비(210-15)로 예산 전용됨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40				240		
	(240)	( )	( )	( )	(240)	( )	( )
'12년	354		1	353	353		
	(354)	( )	(353)	(353)	(353)	( )	( )
'13년	354				354		
	(354)	( )	( )	( )	(35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13년) 등급 : 매우미흡 (37.5점)

○ '12년 감사원 감사 :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건 조치 필요

- (조치사항) 매년 초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집행잔액 반납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미반납 해당 지자체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여 반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전국의 17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기술적 타당성,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선지원 대상 순위 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범위, 예산 등을 조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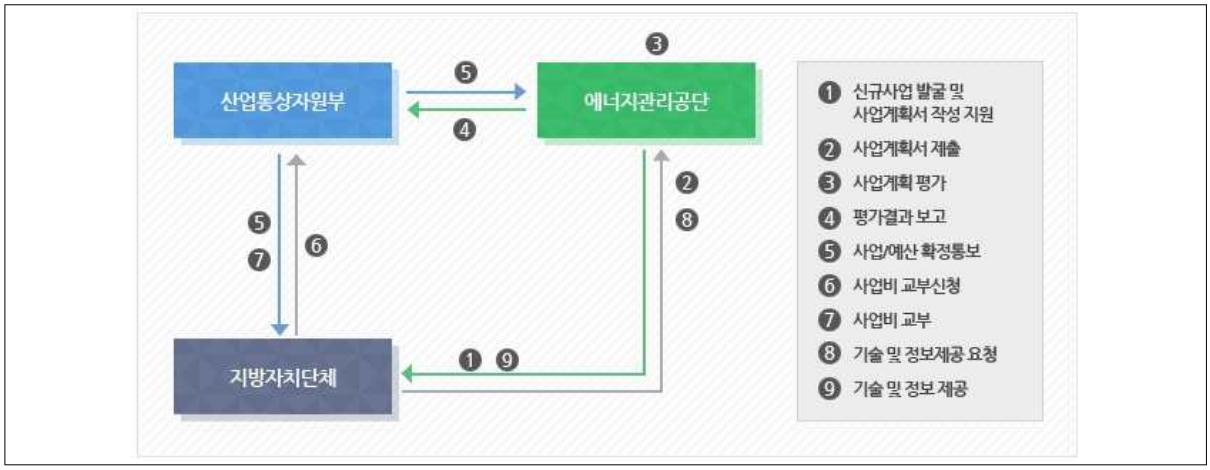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청현황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시도별 지원현황
○ 관련근거법령 조문

참고1 '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청현황

구분	기반구축				시설보조				신청종합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국비	자부담	계		국비	자부담	계		**국비**	자부담	계
강원	3	122	122	244	26	10,035	10,095	20,129	29	**10,157**	10,217	20,373
경기	2	140	140	280	27	5,948	6,335	12,284	29	**6,088**	6,475	12,564
경남	2	360	460	820	34	4,792	4,792	9,584	36	**5,152**	5,252	10,404
경북	1	80	80	160	28	8,231	8,231	16,462	29	**8,311**	8,311	16,622
광주	3	180	180	360	38	11,798	14,798	26,596	41	**11,978**	14,978	26,956
대구	2	120	120	240	24	4,459	4,473	8,932	26	**4,579**	4,593	9,172
대전	2	50	50	100	23	3,921	3,921	7,842	25	**3,971**	3,971	7,942
부산	1	45	45	90	48	7,790	7,790	15,580	49	**7,835**	7,835	15,670
서울	2	75	175	250	24	3,340	7,805	11,145	26	**3,415**	7,980	11,395
세종	2	39	39	77	1	100	100	200	3	**139**	139	277
울산	1	70	70	140	7	772	772	1,544	8	**842**	842	1,684
인천	3	471	471	942	23	4,871	4,871	9,742	26	**5,342**	5,342	10,684
전남	2	250	250	500	16	6,051	6,119	12,170	18	**6,301**	6,369	12,670
전북	3	385	385	770	11	2,461	2,461	4,921	14	**2,846**	2,846	5,691
제주	1	30	30	60	25	3,197	3,197	6,393	26	**3,227**	3,227	6,453
충남	2	135	135	270	41	9,631	9,631	19,261	43	**9,766**	9,766	19,531
충북	1	50	50	100	26	3,842	3,842	7,683	27	**3,892**	3,892	7,783
계	33	2,602	2,802	5,403	422	91,239	99,233	190,468	455	**93,841**	102,035	195,871

참고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96~'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강 원	3,854	2,023	1,786	2,589	832	2,336	2,176	984	16,580
경 기	5,218	8,735	5,167	1,658	2,370	1,176	862	1,497	26,683
경 남	2,285	3,356	1,235	2,662	1,351	2,765	1,773	1,278	16,705
경 북	2,174	3,206	3,291	1,706	2,283	2,232	3,775	2,746	21,413
광 주	3,640	920	499	3,001	3,105	6,036	2,635	1,717	21,553
대 구	4,697	966	2,030	4,105	4,992	1,237	3,228	2,754	24,009
대 전	3,530	851	725	2,653	1,698	1,090	2,736	1,392	14,675
부 산	2,417	1,549	2,111	1,500	4,243	3,547	4,506	731	20,604
서 울	1,962	5,440	5,027	743	1,087	1,815	1,983	1,630	19,687
세 종	-	-	-	-	-	-	10	130	140
울 산	1,216	620	453	119	1,642	515	655	180	5,400
인 천	2,685	1,015	3,482	1,657	1,889	1,777	1,602	543	14,650
전 남	1,442	1,707	2,146	5,475	2,747	1,973	1,978	1,925	19,393
전 북	1,729	2,692	1,164	1,388	1,127	1,701	1,909	1,242	12,952
제 주	936	2,146	400	727	1,398	1,761	1,885	453	9,706
충 남	1,592	1,767	2,085	3,769	580	2,778	1,953	667	15,191
충 북	4,637	2,480	1,872	1,675	856	2,569	1,743	1,821	17,653
합 계	44,014	39,473	33,473	35,427	32,200	35,308	35,409	21,690	276,994

참고3 관련근거법령 조문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에너지법 제7조 >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